

# 일본의 농업구조정책과 농지제도 운용실태

김 정 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 일 러 두 기

日本은 農業問題의 해결을 위해 1962년에 自立經營의 育成과 協業의 助成을 주된 內容으로 하는 「第1次 農業構造改善事業」을 發足하고, 1967년에 「構造政策의 基本方針」發表를 시발점으로 農業構造政策을 본격적으로 推進해 오고 있다.

이러한 農業構造政策은 自立經營의 育成과 協業의 助成을 위한 農地流動化가 核心的인 事業이며, 이의 推進과 關聯되는 제도로는 農地制度와 農業委員會制度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農業構造政策은 이와 關連된 農地制度와 추진주체 등과 같은 제도와 체제가 상호 잘 조화되어야 效率的으로 推進될 수 있다.

이 資料集은 日本의 農業構造政策 推進과 關聯된 農業構造政策, 農業委員會制度, 農村總合整備事業, 그리고 최근의 農地關係 입법사항 등을 把握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農業構造政策에서는 주로 農業構造政策의 必要性和 課題, 農地流動化 推進內容 및 事例, 農地銀行制度, 그리고 農地保全 등을 內容으로 하는 日本의 農業構造政策 推進要領을 중심으로 資料를 作成하였다. 農業委員會制度에 대해서는 農業委員會制度의 構造, 業務內容, 推進方法, 農業者年金業務 그리고 農業委員會의 史的 變遷 등을 주로 把握하였다. 또한 農村總合整備事業에 대해서는 同事業의 沿革, 主要內容, 效果, 그리고 推進實績 등을 주로 把握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農地關係 입법에 대해서는 1989年 6월에 立法한 「特定農地貸付에 관한 農地法 등의 特例에 관한 法律」과 1990年 6월에 입법한 「市民農園整備促進法」을 소개하였다.

이 資料集에 수록된 內容은 주로 全國農業會議所가 발간한 「構造政策 推進의 手引」(1988.10)와 「農業委員會制度의 あらまし」(1990.8)

그리고 日本農林水産省 構造改善局 整備課에서 수집한 資料를 발췌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資料集의 발간을 위해 원고정리를 한 朴恩鄕양, 許秋天양, 文永子양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이 資料集에 수록된 資料는 1990年 農地基金 보조사업인 「農村地域 土地利用의 綜合的 研究」의 일환으로 1990年 10月 14日부터 10月 20日까지 실시하였던 「日本の 土地利用과 農業構造政策調査(참여자: 副研究委員 金正夫, 副研究委員 金正鎬, 副研究委員 李正煥, 2級 專門員 朴贊男, 研究員 朴錫斗, 農林水産部 農地管理課 事務官 羅承烈)」의 調査 結果中에서 日本의 農業構造政策과 農地制度 運用實態를 整理한 것이다. 이 資料集이 日本의 農業政策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0. 12.

## 目 次

I. 農業構造政策 推進要領 .....	1
1. 序 論 .....	1
2. 農業構造政策의 必要성과 課題.....	2
가. 序 言 .....	2
나. 日本農業이 當面한 課題 .....	2
다. 深刻한 土地利用型 農業部門의 規模擴大 停滯 .....	4
라. 農地와  사람의 空洞化 現象 .....	6
마. 構造政策의 核心인 農地流動化 .....	8
바. 構造政策推進運動과 農地流動化 .....	11
3. 構造政策의 一環으로서 農地流動化推進과 各地의 事例 .....	13
가. 農地流動化의 契機 .....	13
나. 流動化事業의 實際 .....	19
다. 農地の 利用調整 .....	21
4. 農地の 保全과 效率의 利用運動：昭和 63 年度의 實施目標과 課題 .....	24
가. 序 言 .....	24
나. 今年度 重點事項 .....	24
다. 基本課題 1：農地法 등의 嚴正實施와 農地 確保 對策 ...	28
라. 基本課題 2：農地流動化의 徹底한 基盤整備와 農地銀行의 確立 .....	31
마. 農業委員會의 主體的 推進：推進體制의 強化 .....	37
5. 農地銀行 活動의 推進方向 .....	41
가. 序 言 .....	41
나. 農地銀行의 必須業務 .....	43

다. 農地銀行의 擴充과 展開方向 : 任意業務에 대하여 .....	50
6. 構造政策推進會議活動의 概要 .....	53
가. 序    言 .....	53
나. 推進會議의 體制와 構造政策推進運動의 展開 .....	53
다. 構造政策을 위한 活動計劃의 作成 .....	55
라. 中核農家 등 組織育成 事業 .....	60
마. 土地利用型 農業經營指標 推進事業 .....	60
바. 構造政策指導員活動 促進事業 .....	61
7. 農地流動化對策의 概要와 各 施策의 要點 .....	63
가.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의 概要 .....	63
나. 土地利用型 農業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 및 農地流動化 助成 金交付事業의 概要와 進行方法 .....	69
다.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의 概要 .....	81
라.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의 概要 .....	84
마. 農業專擔者確保 農地保有合理化促進 特別事業 .....	86
바. 農地 등 取得資金制度의 概要 .....	87
사. 經營規模擴大資金制度의 概要 .....	88
아. 農用地利用增進對策事業의 概要 .....	89
8. 農地流動化推進員의 經驗 .....	91
II. 農業委員會制度의 運用體系 .....	93
1. 序    論 .....	94
2. 21世紀로 向한 農業委員會活動의 推進 .....	95
가. 構造政策의 推進 .....	95
나. 農地行政의 適法한 執行 .....	96
다. 農業專擔者 育成의 推進 .....	96
라. 農政活動의 活性化 .....	96
마. 農業委員會의 體制整備 .....	97

3. 農業委員會制度的 構造 .....	98
가. 農業委員會의 役割 .....	98
나. 農業委員會의 系統組織 .....	101
4. 農業委員會의 業務와 運用方法 .....	102
가. 法令에 根據한 必須業務 .....	102
나. 法令에 根據한 任意業務 .....	122
다. 意見의 公表·建議·答申 .....	126
5. 農業者年金 業務: 農家와 關聯된 主要業務 .....	139
가. 農業者年金 加入業務와 加入促進 .....	139
나. 農業者年金 支給業務와 適格한 經營移讓 推進 .....	141
다. 離農給付金 支給業務 .....	142
라. 農地等 買入資金의 融資業務 .....	142
마. 農地等の 買入·賣渡·貸借業務 .....	143
바. 改正된 農業者年金制度 概要 .....	143
6. 農業委員會 組織의 발자취 .....	146
가. 三委員會의 統合으로 農業委員會 發足 .....	147
나. 第1次 農業委員會法 改正 .....	147
다. 第2次 農業委員會法 改正 .....	148
라. 基本法農政·構造政策 推進 .....	150
마. 農地三法에서 農委의 機能強化 .....	151
바. 農地二法에 의한 새로운 役割 .....	152
<b>III. 農村總合整備事業 .....</b>	<b>155</b>
1. 農村總合整備事業 .....	155
가. 沿 革 .....	155
나. 農村基盤總合整備事業(擴充): 集落農園型의 創設 .....	157
다. 農村總合整備모델事業(擴充): 地域振興特別對策 推進型의 創設 .....	158

2. 農村總合整備事業 概要	160
가. 農村基盤總合整備 파이롯트事業	160
나. 農村基盤總合整備事業	161
다. 農業集落排水事業	164
라. 農村總合整備모델事業	165
3. 農村總合整備事業費 推移	167
4. 農村總合整備事業 實施 地區數 推移	168
5. 農村總合整備事業 效果	170
IV . 最近의 農地關係 立法	172
1. 特定農地貸付法	172
2. 市民農園整備促進法	176
附錄 1. 農業經營確立을 위한 農地流動化의 飛躍的인 前進을	185
2. 農業經營確立을 위한 農地流動化 促進에 對한 附託	186

## 表 目 次

表Ⅰ－1	經營類型別 1戶當 平均經營規模 推移 .....	4
表Ⅰ－2	不作付地, 耕作放棄의 狀況 .....	6
表Ⅰ－3	農地流動化情報臺帳 .....	44
表Ⅰ－4	農地銀行管理카드 .....	47
表Ⅰ－5	全國構造政策推進會議 構成員 .....	53
表Ⅰ－6	都道府縣構造政策推進會議 構成員 .....	54
表Ⅰ－7	市町村構造政策推進會議 構成員 .....	55
表Ⅰ－8	農地流動化助成金交付 一覽表 .....	72
表Ⅱ－1	農業委員會와 知事의 許可權限 區分 .....	103
表Ⅱ－2	全國農業會議所에 대한 農林水産大臣 諮問, 答申・施策 에의 反映 實態 .....	129

## 圖 目 次

圖 I-1	稻作所得의 規模間隔差 推移(都府縣, 販賣農家).....	5
圖 I-2	進行되는 高齡化·兼業化 .....	7
圖 I-3	借地와 農作業受託에 의한 規模擴大 .....	9
圖 I-4	3.0 ha 以上層의 規模擴大 狀況(60年) .....	10
圖 I-5	利用權 設定面積의 推移 .....	10
圖 I-6	農地銀行을 核으로한 流動化情報와 案件의 흐름 .....	42
圖 I-7	構造政策推進會議 體系圖 .....	56
圖 I-8	經營指標 作成節次例 .....	61
圖 I-9	農用地利用增進計劃 .....	64
圖 I-10	面的集積 要件 例 .....	78
圖 I-11	붙어있는 要件 .....	79
圖 I-12	農業委員會斡旋事業의 構造 .....	82
圖 I-13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의 構造 .....	85
圖 I-14	農用地利用增進對策事業의 構造 .....	90
圖 II-1	農業委員會制度의 機構體系圖 .....	100
圖 II-2	權利移動의 許可節次(農地法 第3條) .....	104
圖 II-3	轉用·權利移動의 節次(農地法 第4條~第5條).....	105
圖 II-4	賃貸借解約의 節次(農地法 第18條~第20條) .....	108
圖 II-5	和解의 仲介節次(農地法 第43條의 2~6) .....	109
圖 II-6	標準小作料作成의 節次(農地法 第21條~第25條) ...	111
圖 II-7	農用地利用增進計劃作成의 主要節次 .....	115
圖 II-8	農業委員會의 交換分合計劃策定 節次 .....	119
圖 II-9	特定農地貸付法의 構造 .....	120

圖 II - 10	市民農園整備促進法の構造 .....	121
圖 II - 11	法令에 根據한 6가지 注意業務 .....	122
圖 II - 12	擴大되는 自主的 農業經營者 組織 .....	125
圖 II - 13	農業者年金業務 흐름 .....	140
圖 II - 14	年金支給節次 .....	141
圖 II - 15	農業委員會制度 變遷 .....	146

빈

면

# I. 農業構造政策 推進要領

## 1. 序 論

日本經濟가 國際化되면서 지금과 같이 農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狀態인가에 의문을 가진 때는 없었다. 그동안 懸案이 되었던 소고기, 오렌지에 대하여는 3년후에 自由化하는 것으로 日·美間에 決定이 되므로서, 그 여세가 쌀에도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農業에 대하여 消費者의 관심이 높아져서, 農業保護의 수준에 대하여 종래와 같은 “全農家の 모든 生活費 및 資金支援”이라는 것으로는 이제 通用되지 않는다는데 까지 이르렀다.

현재 要求되고 있는 것은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産業의 한 분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농업의 내부에 비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生業으로서 긴 歷史와 傳統을 가진 日本 農業의 方向을 變化시키는 것은 簡單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活動을 통하여 農民 個個人의 의식을 變化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農業委員會 系統組織은 昭和 59年 이후 「農地를 지키고 效率적으로 利用하는 運動」에 努力하므로서 構造政策의 推進이라는 側面에서 이러한 施策의 一端을 擔當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부터는 行政과 團體가 一體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構造政策推進運動」을 시작하였다.

本章은 構造政策推進의 기초가 되는 農用地的 利用增進과 流動化의 推進을 위하여 農業委員會나 農地流動化 推進員을 위시하여 關係者들이 노력하고 협력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만든 資料이다.

## 2. 農業構造政策의 必要性和 課題

### 가. 序 言

農業構造政策이란 過去부터 存在하고 있는 土地와 사람의 結合을 轉換하여 보다 生産性이 높은 農業構造를 樹立하는데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 日本農業이 직면하고 있는 農民의 高齡化, 兼業化 더욱이 農用地의 遊休化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土地와 사람의 結合을 轉換한다고 해도 잘 아는 바와 같이 日本農業은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의 土地에 대한 執着은 입으로 말하기 곤란한 側面이 있기 때문에 이의 推進에는 큰 隘路가 있다. 다음에서 그 意義와 進行方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日本農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整理하고자 한다.

### 나. 日本農業이 當面한 課題

昭和 61年 가을에 발표된 農政審議會報告 「21世紀로 向한 日本農業의 基本方向」에서 日本農業이 當面한 課題와 今後의 農政方向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첫째, 稻作 등 土地利用型農業部門의 經營規模 擴大가 이루어지지 않고, 生産性的 增大가 늦어지며, 農民들이 弱體化되고 있는 등 生産構造의 脆弱性을 들 수 있다. 현재 農用地利用增進法에 근거하여 利用權의 設定이 이루어지고 있다. 全國에서 利用이 設定된 面積은 約 20萬ha이며, 都府縣에서 2.5ha以上(北海道에서는 20ha以上)의 農가가 증가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規模擴大의 進展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農民에 있어서도 中核農家は 昭和 61年の 803,000戶에서 昭和 70년에는 600,000戶로 減少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둘째, 쌀을 위시하여 많은 農産物이 過剩生産의 基調에 있으며 生産調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國際化의 進展, 円高의 進行 등의 여건하에서 土地利用型의 農産物을 중심으로 内外價格差가 擴大되고 있다. 세계적인 農産物 生産 過剩과 日本의 貿易收支 大幅 黑字 등을 배경으로 市場開放의 요청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産業으로서 自立할 수 있는 農業의 確立을 위하여 農業生産의 合理化, 效率化가 강력히 要求되고 있다.

또 農村에서는 農業의 主體가 되는 농민의 高齡化 및 後繼者의 不足, 무질서한 混住化 兼業農家の 增加 등 農村의 活力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農村에 立地하고 있는 企業의 철수, 農村의 雇傭條件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지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今後의 農政은

- ① 生産성이 높은 農業構造의 確立
- ② 高齡化 社會에 對應하는 農政課題의 追求
- ③ 活力있는 農村社會의 건설
- ④ 新技術의 開發 및 普及 推進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특히

① 高能率의 機械化作業體系와 높은 土地利用方式 등을 組合하여 效率이 높은 生産시스템의 構築

② 企業家 意識과 知識을 가진 農業者의 育成, 個別農家の 規模擴大와 作業 受委託을 포함한 效率的 經營을 可能하게 하는 機能的인 生産組織 形成

③ 高齡農家 등의 農地의 利用權 등을 規模擴大를 指向하는 農家에 集積시키는 施策의 強化

④ 圃場整備 등 農業生産의 기초적 條件의 整備 등이 중요한 課題이다.

#### 다. 深刻한 土地利用型農業部門의 規模擴大 停滯

이와 같은 課題 가운데서 특히 심각한 것은 稻作을 중심으로한 土地利用型農業에 있어서 經營規模擴大의 停滯傾向이다.

<表 I - 1>은 昭和 40 年부터 60 年까지 약 20 년간의 戶當 平均經營規模를 비교한 것이다. <表 I - 1>에 의하면 畜産을 중심으로 크게 規模擴大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적 進度가 늦은 肉用牛에 있어서도 1.3 頭에서 8.7 頭로, 産卵鷄 등은 27 首에서 1,037 首로 두자리수의 飼育規模 增加가 進行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施設園藝도 7.0 a에서 13.4 a로 面積이 倍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같은 <表 I - 1>에서 水稻를 보면 昭和 40 年の 57.5 a에서 60 年에는 60.8 a로서 불과 1.1 倍 정도의 伸張에 그치고 있다. 水稻 즉 畚을 基盤으로 한 農業經營의 構造는 지난 20 年間に 거의 變化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농담하지 마라, 移秧機의 登場과 普及, 콤바인(大型트랙터)에 의한 一貫作業을 통한 收穫과 乾燥 등, 水稻作에 있어서도 大幅的인 省力化, 合理化

<表 I - 1> 經營類型別 1 戶當 平均經營規模 推移

區 分	年 度		
	40 年	60 年	60 / 40
水 稻 (a)	57.5	60.8	1.1
乳 牛 (頭)	3.4	25.6	7.5
肉 牛 (頭)	1.3	8.7	6.7
養 豚 (頭)	5.7	129.0	22.6
産卵鷄 (成鳥 암컷) (羽)	27.0	1,037.0	38.4
브로일라 (羽)	892.0	21,400.0	24.0
施設園藝 (溫室, 비닐하우스) (a)	7.0 (45年)	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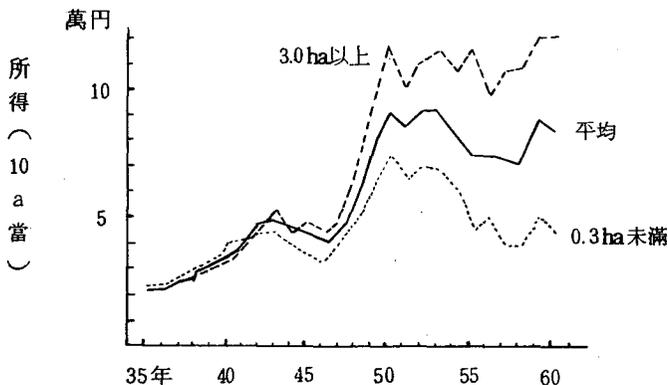
資料 : 「農林業センサス」

가 進行되었다”라고 反論이 제기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실히 勞動時間의 短縮이 이루어져서 稻作에 投入되는 勞動力은 크게 減少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쌀 農事를 餘暇로 하고, 그다음에는 兼業으로 돌리려는 兼業深化의 構造에만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戶當 經營規模의 擴大라는 基本課題를 推進시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日本農業이 當面하고 있는 최대의 課題는 水稻作 등 소위 土地利用型農業의 構造를 어떻게 變革시켜 經營規模擴大를 도모하느냐에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圖 I-1>은 稻作의 所得이 經營規模의 크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隔差가 있는가를 年度別로 본 것으로서 3ha 以上層과 0.3ha 未滿層과의 隔差는 커지기만 한다. 특히 昭和 50年代에 들어와서는 隔差의 擴大에 注意하여야 한다. 이는 所得뿐 아니라 生産費 등에도 나타나며 昭和 60年의 쌀 生産費調査에 의하면 3ha 以上層의 쌀 生産農家の 生産費는 10a 當 110,141 円이며, 이는 0.5~1.0ha 層의 農家の 70% 정도 수준이다. 바꾸어 말하면 規模가 큰 農家쪽이 같은 쌀을 보다 싸

<圖 I-1> 稻作所得의 規模間隔差 推移  
(都府縣, 販賣農家)



資料：農林水産省「米生産費統計調査」

게 供給할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

### 라. 農地와 사람의 空洞化 現象

이러한 土地利用型農業의 規模 擴大가 停滯傾向을 나타내는 것이 다음에서 언급하는 農地와 사람의 空洞化 現象이다.

#### (1) 農地の 空洞化 = 進行되는 農地の 遊休化

日本の 農地面積은 減少를 계속하여 昭和 60 年 현재 5,380 千ha에 이르고 있다. 農政審議會의 昭和 65 年 豫測은 5,500 千ha를 크게 下廻하고 있다. 더욱이 問題인 것은 農地の 遊休化가 進行되고 있는 점이다. 昭和 60 年 農林業센서스에 의하면 1 年 以上の 不作付地는 140,310 ha, 耕作放棄地는 96,807 ha로 合計 237,117 ha에 달하여 (<表 I-2> 參照) 總耕地面積의 5%에 이르고 있다. 全國農業會議所가 昭和 58 年度에 실시한 「遊休農地實態調査」에 의하면 遊休의 理由로서 “經營縮小”가 가장 많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基盤未整備”, “老齡”, “離農” 등으로 되어 있다. 土地條件 보다도

<表 I-2> 不作付地, 耕作放棄의 狀況

(單位 : ha)

區 分 年 度	1 年 以 上			耕 作 放 棄 地
	畓	田	合 計	
昭和 40 年	10,695	-	10,695	-
“ 45 年	17,498	-	17,498	-
“ 50 年	110,233	-	110,233	-
“ 55 年	105,264	79,069	184,333	91,745
“ 60 年	75,794	64,516	140,310	96,807

資料 : 「農林センサス」

(註) 不作付地는 災害나 努力不足등의 理由로서 過去 1年間 전혀 作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數年사이에 다시 耕作할 意思가 있는 農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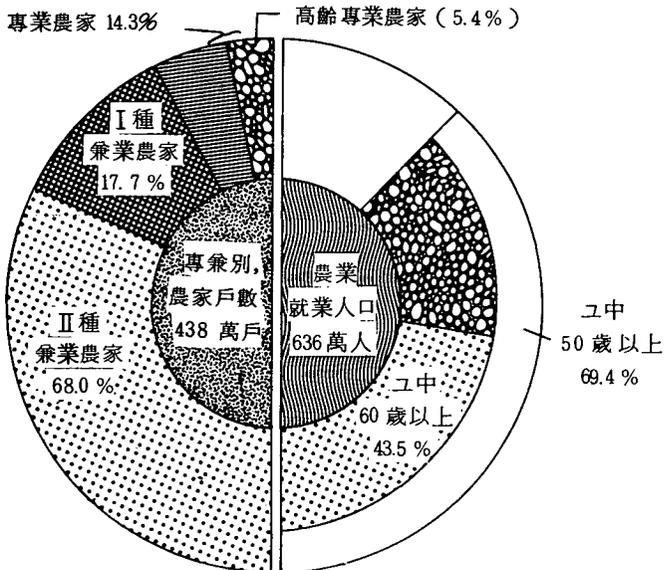
農業生産農民 = 經營主體의 不足 또는 缺落이 큰 原因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耕地利用率도 昭和 35年 133.9%였든 것이 昭和 59년에는 103.8%까지 低下되고 있다.

(2) 사람의 空洞化 = 進行되는 專擔農業者의 高齡化・兼業化

農業生産을 專擔할 農業者가 全體的으로 적어지는 동시에 老齡化・兼業化가 進行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農地의 遊休化와 밀접한 關係가 있는 問題이다.

昭和 35年당시 14,540千人이었던 農業就業人口가 昭和 60年에는 6,360千人으로 절반 이하로 減少하였으며, 더욱이 60歲이상의 比率은 43.5%, 50歲以上の 比率은 69.4%로 高齡化가 進行되고 있다 (<圖Ⅰ-2>參照). 大正年代에 出生한 사람부터 昭和 1자리수年代의 世代에 의하여 현재 日本 農業生産의 70%가 운영되고 있는 狀態이다. 13年

<圖Ⅰ-2> 進行되는 高齡化・兼業化



資料 : 「昭和 60年農業センサス」에서 作成

後인 21世紀에는 이러한 世代의 대다수가 農業生産에서 은퇴하지 않으면 안된다. 農家數도 매년 감소함과 동시에 第2種兼業農家の 比率은 70% 가까이 되어 있다. 農地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脫農化” 경향이 한층 더 강하여 졌다고 할 수 있다.

#### 마. 構造政策의 核心인 農地流動化

以上과 같이 日本農業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構造政策을 강력히 추진하여 日本農業의 體質強化를 圖謀해야 한다. 특히 土地利用型 農業의 經營規模擴大를 圖謀하는 것이 이의 核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다. 이를 위해 가장 有效한 手段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農地를 보다 잘 利用하기 위한 流動化라는 手法이다.

農地의 效率的인 利用과 耕地利用率을 높이기 위하여는 農地를 效率的으로 利用하는 農業者에 農地의 利用을 맡기는 것이다. 兼業化나 老齡化 등으로 인하여 耕作할 수 없는 農地를 規模擴大를 希望하는 專業的인 農業者가 耕作을 할 수 있도록 賃貸하는 것이다. 構造政策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러한 農地의 賃貸借 = 農地 流動化는 回避할 수 없는 課題라고 할 수 있다.

日本政府는 農地流動化를 추진하여 土地利用型農業의 經營規模擴大를 추진하기 위하여 昭和 55 년에 農用地利用增進法을 制定하여 意欲的인 農業者의 農地 利用集積을 促進하여 왔다. 農用地利用增進法이 制定되기 전인 昭和 54 년부터는 地域農政特別對策의 일환으로서 農用地高度利用促進事業을 시작하여 農地流動化推進員에 의하여 선발된 農地의 賃貸人에 대한 獎勵金の 交付등 流動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活動에 힘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結果로 農用地利用增進法에 근거한 利用權 設定面積은 全國的으로 229,000 ha (昭和 63 年 6 月現在)로서 設定率은 4.3%에 달하

였다. 利用權 設定率이 10%를 초과한 市町村은 7.8%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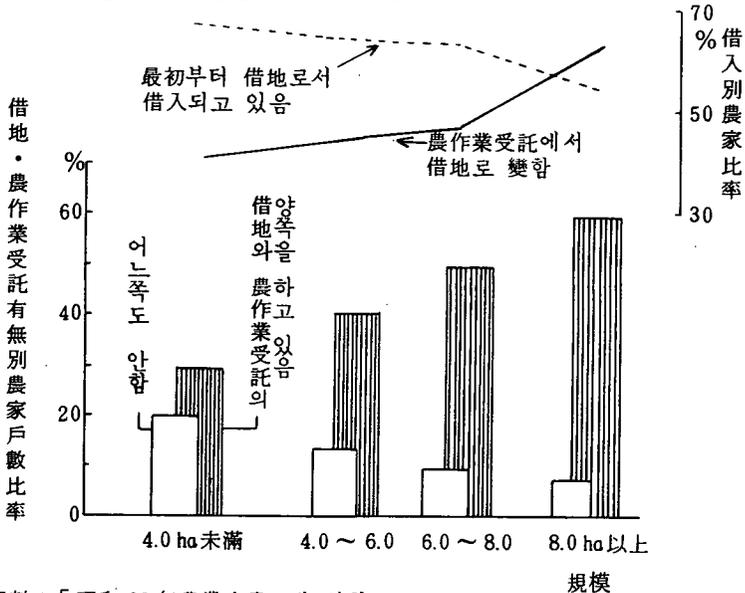
또한 利用權設定 등 賃借地의 經營規模擴大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 <圖 I-3>으로서, 規模가 큰 階層일 수록 農地의 借入과 農作業 受託의 양쪽을 행하는 農家가 많아졌으며, 農地의 流動化가 經營의 規模擴大에 있어서 不可缺한 것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經營의 安定을 위하여 農作業受託에서 借地로 履行되는 傾向이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農地의 流動化에 의한 規模擴大의 狀況은 地域的으로 偏重되어 있음을 <圖 I-4>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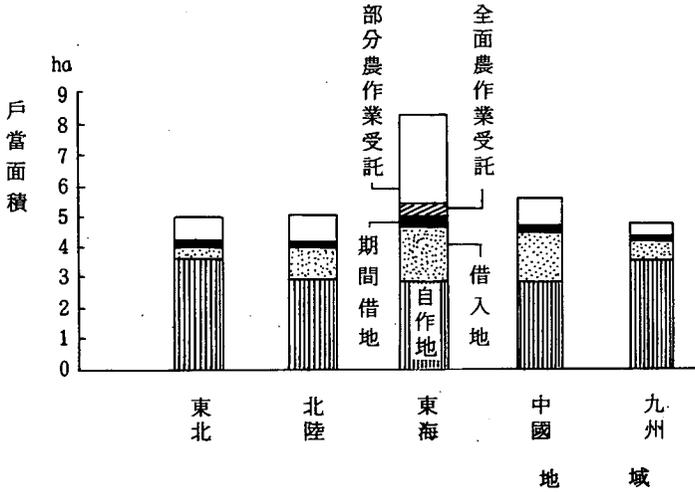
3.0 ha以上階層의 經營狀況을 보면 東北地方과 같이 借地率이 10%미만의 地域이 있는가 하면, 東海와 같이 作業受託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地域도 있다. 더욱이 <圖 I-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수년은 利用權 設定面積의 伸張이 조금 鈍化된 傾向을 보

<圖 I-3> 借地와 農作業受託에 의한 規模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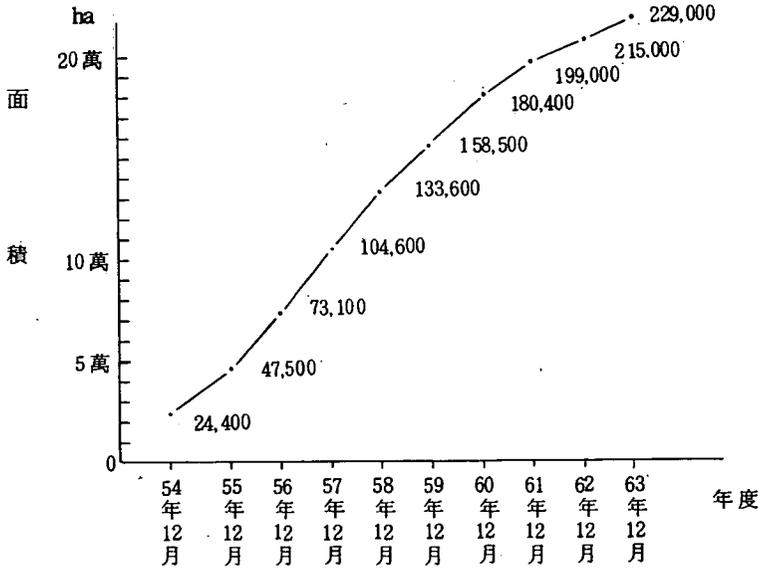


資料 : 「昭和 62 年 農業白書」에 의함

<圖 I - 4> 3.0 ha 以上層の規模擴大 狀況 (60年)



<圖 I - 5> 利用權 設定面積の 推移



이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한층 더 浮揚시키는 方向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바. 構造政策推進運動과 農地流動化

農業委員會 系統에서는 昭和 55 年の 農地三法 制定 이후, 農地流動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특히 昭和 59 年부터는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 運動」을 전개한지 금년이 5 年째이다. 이와같은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 昭和 61 年부터는 行政과 團體가 一體로 되어 農地의 流動化를 中心으로한 構造政策을 運動으로 推進시키기 위하여 「構造政策推進運動」이 전개되고 있다. 運動의 시작과 동시에 全國과 都道府縣에 構造政策推進會議가 設置되었으며, 더욱이 昭和 63 年에는 市町村段階에도 構造政策推進會議를 설치하게 되었다.

構造政策推進會議에 의한 運動은 開始後 3 年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都道府縣構造政策推進會議에 의한 「構造政策推進指針」의 策定을 끝내고 市町村段階에 있어서는 「指針」에 근거한 「活動計劃」이 作成되어, 이에 근거한 實踐運動이 행하여지고 있다.

構造政策推進指針 가운데는 畜農業確立運動과 提携를 圖謀하는 뜻에서 畜의 流動化 目標面積(目標年度는 原則으로 昭和 67 年)을 設定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개개 市町村의 실정에 맞추어 每年度마다 課題를 設定하여 實踐活動을 전개하는 構造政策을 위한 活動計劃은 당연히 當該 年度內에 達成해야 하는 目標流動化 面積을 明記하도록 되어 있다. 農業委員, 農地流動化推進員 등은 이 目標達成을 향해 關係者와 같이 相互 協調하고 努力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計劃」作成에 있어서는 農業委員, 農地流動化推進員 및 關係者들이 日常的으로 개발하고 찾아낸 活動의 成果를 근거로 하여 實現可能하게 하고, 또한 農地流動化를 더욱더 推進이 可能하도록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이 重要하다.

構造政策推進會議의 運動은 今年度에 市町村 段階에서도 「推進會議」가 設置되는 것과 동시에 核心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民을 市町村마다 組織하는 「中核農家等組織育成事業」, 稻作 등 土地利用型 農業의 目標가 되는 經營指標를 設定하는 「土地利用型農業經營指標推進事業」; 構造政策推進의 基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地域指導者의 發掘等 임무를 擔當하는 「構造政策指導員活動促進事業」의 3 가지 活動을 새로이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 大幅的인 擴充을 試圖하였다.

農地流動化의 推進에 있어 市町村構造政策推進會議의 發足은 큰 도움이 된다. 市町村推進會議는 市町村部局을 위시하여 農業委員會, 農協, 土地改良區 등의 任職員, 地域農業集團의 代表, 農地流動化推進員의 代表, 構造政策指導員 등으로 構成되어 각각의 課題에 적응하는데 협조하고 노력(活動計劃에 근거한 實踐活動)한다. 그러나 종래부터 農地流動化의 推進을 통하여 核心的인 農民의 經營規模擴大에 實績을 쌓아온 農業委員會 및 農地流動化推進員(農業委員)은 中核農家等組織育成事業의 中心에 적극적으로 關係하여 協조하는 것이 重要하다.

또한 市町村推進會議의 운영에 대해서도 事務局 등의 體制整備 狀況에 따라 農業委員會가 그 事務局을 擔當하는 등 積極적인 對應이 期待된다.

### 3. 構造政策의 一環으로서 農地流動化 推進과 各地의 事例

前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農地の 流動化를 重點적인 내용으로 하는 農業構造改善政策의 推進이 急先務로 되어 있다.

그러나 構造政策의 一環으로서 農地流動化를 무리없이 더욱 效果的으로 推進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 이것은 물론 “이렇게 하면 한번에 效果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方法은 없으며 日常的으로 推進方法을 開發하고 찾아내는 活動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러한 農地流動화와 관련된 협조와 努力의 實例를 中心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農業의 現場에서 農地の 流動化가 어떻게 展開되고 있는가와 그의 契機, 開發의 實際, 農地利用調整의 3가지 觀點에서 여러 地方의 事例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農地流動化의 契機

全國의 農業委員, 農地流動化推進員 그리고 農業委員會등 事務局의 關係者들은 무엇때문에 農地の 流動化를 推進하는 것일까? 또한 農業委員이나 農地流動化推進員 등 관계자들은 왜 流動化 推進要領을 알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農業委員 또는 農地流動化推進員이 되었으므로, 또는 流動化에 관한 각종 사업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등등 그 契機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流動化 推進에 협조하고 노력하게 된 關聯者들이 한번더 農地 流動化의 必要性을 고찰하기 위해 流動化 推進要領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農地の 流動化는 目的이 아니라 手段이라는 것을 다시 認識하여야 한다. 第1章 第8節의 「農地流動化推進員의 經驗」에서 岩手縣滝澤村의 三上勇次郎氏가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을이

發展할 것인가 또한 農業이 發展할 것인가 하는 地域振興의 觀點이 重要하다. 全國段階에서 構造政策의 推進이라는 큰 政策目標은 地域에 있어서는 農業의 構造改善을 통해서 만이 地域振興이라는 것과 가까운 課題가 될 수 있다. 이 課題解決의 重要한 推進 역할을 이들 農業委員, 農地流動化推進員 등 關係者들이 擔當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러한 생각으로 流動化의 促進과 開發을 위하여 現場에 들어가 부딪치는 것은 어떻게 하여 地域 사람들이 流動化를 促進하려는 의욕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重大한 個人的 財産인 農地를 어떻게 하면 地域振興을 위하여 利用할 수 있는가, 移動시킬 수 있는가, 賃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國家의 政策이기 때문에, 또는 町의 方針이라는 등의 機械적이고 公式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流動化를 시도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相對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역시 地域振興의 觀點과 이를 推進하므로써 地域의 여러 사람들이 利益을 얻는 점, 즉 사람들에게 農地를 賃貸하는 것이 利益이 많다는 것 등을 강조하는 것이 流動化의 중요한 점이다. 다시 말하면 地域農家の 關心을 끈다든가, 의식을 啓發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誘引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슬로건 또는 達成目標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流動化의 契機 즉 사람에게 무엇인가 行動하게 하는 “動機”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動機”라고 말하지만 그 方法은 여러가지이다. 地域의 振興을 圖謀하기 위하여 先進地域에서는 여러가지 創意 公부를 心的으로 集中하여 왔다. 그것은 크게 分類하면 다음의 4가지로 整理할 수 있다.

- ① 地域의 農家 意見 探知
- ② 地域農業의 未來像 構想
- ③ 地域農業의 現狀 認識 深化

#### ④ 達成目標(슬로건)의 設定

以下에서 위의 4 가지 分類에 따라 現地の 협조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1) 地域의 農家 意見 探知

農家の 意見을 把握하기 위한 것은 여러가지 實例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지고 있는 것은 農家の 意見 調査이다. 地域의 農家가 現在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行動을 하려고 하는가를 앙케이트用紙(設問紙) 등을 配付하여 把握하는 것이다.

##### (가) 長野県眞田町 農業委員會

長野県眞田町 農業委員會에서는 農地の 賃貸借에 관한 全家口 意見調査를 실시하여 農地流動化率 15.5%라는 높은 實績을 올리고 있다.

##### (나) 栃木県宇都宮市 農業委員會

栃木県宇都宮市 農業委員會에서는 年1回 全國家를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여 農地の 賃貸人和 賃借人을 把握하여 그것을 農地臺帳, 幹旋臺帳과 照會하여 經營規模 擴大가 바람직한 앞으로 농업을 담당할 農民候補者를 선정한 다음에 그 名單을 地區別로 分類하여 地區別로 선출되어 있는 流動化推進員에게 配付하고 있다. 流動化推進員은 그 名單을 기초로 하여 流動化事業을 行한다.

제멋대로 流動化를 시도하더라도 利用權의 流動化和 連繫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헛 수고에 그칠 때가 많을 것이다. 流動化를 試圖하기 위해서는 合理的인 手法이 必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地域의 農家 意見을 把握하기 위하여 設問調査가 突破口가 된다. 이러한 方法으로 作成된 名單은 소위 顧客(단골) 名單이라고도 할 수 있다. 名單에 掲載된 사람을 찾아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農地流動化를 실시하는 지름길이다.

※ 要點① : 顧客名單의 作成을 위해 集落으로 가라!

流動化事業의 目標( 賃貸人 및 賃借人 候補者 )를 明白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設問調査 등으로 候補者의 名單을 作成하자. 이것이 소위 顧客名單( 단골 )이다. 이것을 가지고 集落으로 가자.

## (2) 地域農業의 未來像 構想

이것은 현재 어떤 資料를 根據로 하여 10年後 또는 15年後의 集落의 狀態를 豫測하는 것이다. 현재는 農地를 賃貸할 必要가 없더라도 將來에 後繼者의 確保 如何, 高齡化의 정도에 따라 언제 農地를 放賣하게 될 지 모른다. 그때에 가서 集落에 적절한 賃借人 또는 賣受人 등이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부터 農地를 받을 사람과 集落 農業을 擔當할 農民을 明白히 하여 育成하지 않으면 時期를 잃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對策을 講究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의 狀態를 變化시키지 아니한 경우를 본보기로 하여 地域 사람들의 意識을 啓發할 必要가 있다.

### (가) 福島縣 双葉町

福島縣 双葉町에서는 農地가 어떠한 年齡層·性別의 사람들에 의하여 耕作되고 있는가를 筆地마다 자세히 調査하여 集落地圖에 기재하여 이것을 根據로 15年後의 土地利用 狀況을 豫測하는 作業을 하였다. 예를들어 현재 60歲 以上の 사람들에 의하여 만이 耕作되고 있는 農地는 15年後에는 그 농가에서 農業을 責任지고 나갈 專擔者가 없어지기 때문에 15年後의 豫測地圖에는 그 部分은 專擔者가 없는 것으로 表示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完成된 15年後의 地圖는 상당한 部分이 專擔者가 없는 것으로 表示되어 있으며 專擔者 問題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双葉町에서는 이렇게 作成한 地圖를 町內의 모든 集落單位

로 만들어 農家의 意識啓發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나) 鳥取県日南町 農業委員會

鳥取県日南町 農業委員會에서는 어느 集落의 農地와 專擔者의 現況을 農地臺帳에서 調査하여 10年後를 豫測하여 보았다. 後繼者가 없는 60歲 以上の 高齡農家가 10年後에도 農家로 存續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鳥取県日南町 農業委員會에서는 이러한 資料를 農地流動化 推進員에게 提示하여 이제부터는 正確히 틀림없이 農業을 專擔할 수 있는 農家에게 農地를 集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므로서 農地의 流動化 實績을 크게 올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要點② : 언제까지도 繼續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集落의 現在 狀態!

農地流動化의 열기를 양성하기 위하여 10 ~ 15年後의 集落의 모양을 그려 보자. 危機意識을 갖도록 「드디어 누구누구도 다 없어졌다」라는 말로서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認識하도록 하자.

(3) 地域農業의 現狀 認識 深化

이는 앞의 “地域農業의 未來像 構想”과 類似한 것으로서 극히 身邊 가까이 있는 現在 集落이 當面한 現狀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 問題點을 明白히 하고 이를 해결하는 手法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地域의 土地利用 狀況을 地圖에 그려보는 方法이다. 土地의 遊休化 狀況과 土地利用의 分散度を 地圖에 표시하여 視覺化하므로서 농가에 대한 큰 啓發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가) 京都府福知山市・大江町

京都府福知山市・大江町에서는 河川敷地의 遊休桑田이 눈에 띄게 잘 보여서 이를 調査하여 遊休桑田의 地圖를 作成하여 農家의 效率的 農地

利用에 대한 意識을 높이고 桑田의 他目的에의 轉換을 促進하고 있다.

(나) 新潟縣田上町 農業委員會

新潟縣田上町 農業委員會에서는 농지를 所有權·利用權으로 나누어 筆地마다 色彩로 나누어 集落 耕地圖를 作成하여 核心的인 農業 專擔者에게로 農地를 集積하여 效果를 높이고 있다. 農地의 集積程度와 分散度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所有權·利用權의 交換도 부드럽게 推進하게 되었다.

※ 要點③ : 百聞이 不如一見이다!

말로써 어려우면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자. 集落地圖는 集落이 안고 있는 問題點을 한눈에 보여 준다.

(4) 達成目標(슬로간)의 設定

이와같은 集落의 現狀, 未來像,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의 意見이 判明되면 그것을 解決하기 위하여 각종의 目標를 設定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農地의 流動化는 그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目標를 樹立할 때는 구체적이면서 사람의 關心을 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알기쉽게 共通의 關心事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目標는 슬로간과 같은 것으로 하여 그 슬로간 아래에 사람들이 結集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 京都府夜久野町

京都府夜久野町에서는 “1集落(營農集團 = 20 ha) 1億圓 構想”이란 슬로간을 내걸고 生産意慾의 高揚에 노력하고 있다. 이 슬로간 下에서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이 推進되어 利用權의 設定도 推進되었다.

(나) 鹿兒島縣菱刈町

鹿兒島縣菱刈町에서는 “農業 100人會”라고 하는 農家의 登錄制度를 만들어 核心的인 農業 專擔者를 明白히 하여, 이들에게 農地의 集積을

하며, 農家의 意慾啓發에 成果를 올리고 있다.

※ 要點④ : 사람들을 그런 感情으로 만들기 위해 命名이 重要하다!

알기쉬운 슬로건(目標) 設定으로 運動的인 努力을 합시다.

## 나. 流動化事業의 實際

以上은 農地流動化의 重要性을 地域의 사람들에게 認識시키기 위하여 契機가 되는 것이었다. 다음에는 이러한 流動化事業을 始作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여러 地域에서 다양한 努力을 볼 수 있다. 流動化事業은 農地를 個別的으로 農業 專擔者에게 分配할 것인가 아니면 集落에서 수차 議論하여 土地利用의 集積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2가지 方向으로 大別할 수 있다.

個別 農業 專擔者에게 分配할 경우에도 規模擴大의 前提가 되는 農地의 賃貸借를 廣範圍하게 전개하는데 重點을 둔 형태와, 集積하여야 할 農業 專擔者를 明確히 하여 規模擴大를 圖謀하는 형태의 2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 (1) 個別 流動化

#### (가) 廣範圍 流動化 形態

##### 1) 茨城県八千代町・千葉県市原市 農業委員會

茨城県八千代町・千葉県市原市 農業委員會에서는 利用權의 流動化에 面積의 할당을 실시하여 推進員 手當도 活動實績에 따라 支給하고 있다 더욱이 農業委員의 自宅를 農地銀行의 支店으로 하여 「農地銀行支所」의 看板을 걸어 두고 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利用權의 設定面積이 擴大되고 있다.

## 2) 山梨縣八代町 農業委員會

山梨縣八代町 農業委員會에서는 農業委員이 各 集落의 農業振興會의 會長으로서 勤務하는 것이 慣例化되어 있고 또한 農地銀行의 支所로 되어 있어 各 集落에서 要求하는 貸貸借 條件이 그 方向의 目的에 包含하여 一任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 (나) 農業 專擔者를 明確히 하여 流動化 하는 形態

#### 1) 福島縣西會津町 農業委員會

福島縣西會津町 農業委員會에서는 町 稻作經營者會議를 組織하여 그 會員들이 중심이 되어 農地를 賃借하여 規模擴大를 圖謀하고 있다. 昭和 57 年이후 이렇게 하여 利用權이 設定된 圃場을 集積하기 위하여 會員과 賃貸農家가 서로 만나 의논하며, 利用權을 再設定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얼굴을 맞대고 앉아 調整한다.

#### 2) 千葉縣佐倉市角來工區 農業組合

千葉縣佐倉市角來工區 農業組合에서는 土地改良事業에 의한 大型圃場化를 契機로 地權者 54 人의 農地를 2 人의 專業農家에 作業을 集中시키기 위하여 農事組合法人을 만들어 그 法人에 利用權의 設定을 集中시켰다. 이것은 土地改良事業이 인연이 되었지만 大規模化에 의하여 賃借人에도 地代 負擔力이 생기게 되고 또한 賃貸人에게는 農事 짓는 것 보다 賃貸하는 것이 좋은 條件이 되었다.

#### 3) 愛知縣西尾市·安城市

愛知縣西尾市·安城市에서는 農業 專擔者를 明確히 하기 위한 手法로 “耕脈” 調査라는 것을 행하였다. 이것은 集落의 全員에 대하여 農地의 賃貸借는 물론 部分作業委託까지 모든 耕作 關係를 調査한 것이다. 그 結果 특정 少數의 農業 專擔者에게 農地가 賃貸되었고, 또 作業도 集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農業 專擔者에게 集中되어 있는 作業委託을 利用權으로 移行시키거나, 以後의 利用權 設定을 重點적으로 행하게 되었다.

더욱이 安城市에서는 利用權 設定을 받는 農民을 事前에 特別히 정하는 認定制度를 실시하여 農業 專擔者를 明確히 하여 規模擴大가 推進되고 있다.

## (2) 集落의 會議로 利用權 集積

### (가) 岩手県川井村 去石農用水利組合

岩手県川井村去石農用水利組合에서는 「農地는 集落에서 가장 高度로 利用한다」라고 하는 觀點에서 集落의 農家 25 戶中 7 戶에 利用權을 設定하여 아주 작은 30 a의 零細經營이었던 農家가 昭和 55 年 이후 延 3 回の 利用權 設定으로 285 a의 經營規模로 成長하였다.

### (나) 福井県鯖江市上氏家 集落農業生産組合

福井県鯖江市上氏家 集落農業生産組合에서는 集落内の 農用地 36 ha를 하나의 圃場으로 간주하여 利用權 設定面積 9.4 ha를 全部 中核農家 1 戶에 集積시키고 있다. 더욱이 基幹作業은 中核의 農家 7 戶에다 受託시키고 있다.

### (다) 福岡県玄海町牟田尻 土地利用組合

福岡県玄海町牟田尻 土地利用組合에서는 12 戶의 安定兼業農家가 全 所有農地 (8.2 ha)에 利用權을 設定하여 中核農家 11 戶의 規模擴大에 寄與하고 있다. 同組合에서는 상의하는 가운데 農業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를 選擇하여 農業을 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全部 利用權을 設定하도록 推進하였다. 그 결과로 農家 1 戶當 經營面積은 昭和 55 年 이후 倍增하였다.

## 다. 農地의 利用調整

農地의 流動化는 앞에서 여러번 살펴 본 바와 같이 經營의 規模擴大와 連繫되는 地域農業 振興의 方法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농지의 流動化만을 하는 것을 좋다는 것이 아니고 地域農業 振興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農地 流動化의 結果 오히려 圃場의 分散이 현저하게

나타나 作業效率이 下落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一定의 利用權 設定 등이 推進되면 이번에는 圃場의 集團化, 農業 專擔者에로의 集積 등을 겨냥한 質이 높은 流動化를 目標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質이 높은 流動化를 擔當하는 조직이 農業委員會의 農地銀行이다. 農地の 流動化는 본래 賃借人을 特別히 정하지 않고 農業委員會와 公的인 機關에서 留保하여 가장 적당한 農業 專擔者에게로 農地를 誘導하여야 만이 그 본래의 기능을 發揮한다.

다음章에서도 論議하겠지만 農業委員會의 農地銀行 機能은 지난 1~2年 사이에 各別히 擴充되어 왔다. 農業委員會 系統組織이 「農地를 지키고 效率的으로 利用하는 運動」의 中心課題의 하나로서도 「農地銀行 確立運動」에 상응한 위치에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서 言及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先驅的으로 努力을 보인 例를 몇개 들어 보기로 한다.

#### (1) 秋田縣仙北町 農業委員會

秋田縣仙北町 農業委員會에서는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의 原案을 作成하여 이를 決定하기 전에 役場, 議會, 農協 등 관계기관과 團體의 代表者로 構成되는 農用地利用增進協議會에서 各要件에 상응하는 農業 專擔者에게 設定되고 있는가를 農地臺帳의 내용을 圖示한 地圖에 의하여 確認하고 아울러 調整하고 있다. 보다 조건에 잘 맞는 農業 專擔者가 있는 경우에는 設定을 바꾸기도 한다.

#### (2) 鹿兒島縣穎娃町 農業委員會

鹿兒島縣穎娃町 農業委員會에서는 管內의 大川地區에서 圃場整備를 終了하였다는 것을 契機로 하여 農地の 相互 賃貸(相對貸)를 금지하고, 모든 農地銀行에 신고하여 적절한 農業 專擔者에 연결 시키고 있다.

(3) 山梨県八代町 農業委員會

山梨県八代町 農業委員會에서는 農業委員이 集落마다 農地銀行支店으로 되고, 集落에서 올라오는 案件을 적절한 農業專擔者에게 나누어 주는 調整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相對方을 지정하지 않고 案件을 農地銀行에 持込하면, 農地銀行에서는 持込으로 맡겨진 案件을 農業 專擔者에게 나누어 주는 組織을 전국적으로 計劃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

## 4. 農地の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 : 昭和 63 年度の 實施目標와 課題

### 가. 序 言

日本農業은 현재 쇠고기, 오렌지의 輸入 自由化에 대한 對應으로 代表되는 것과 같이, 世界的 수준으로 그 體質強化가 要求되고 있다. 國內에서는 米價를 낮추기 위하여 더욱 費用節減이 要求되고 있다. 한편, 經濟가 國際化되는 가운데 農産物의 輸入自由化 뿐만 아니라, 內需擴大가 經濟政策의 가장 重要한 課題로 부상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規制緩和가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農地法等 農政의 根幹을 이루는 制度에 대하여도 다시 평가하여 보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農業·農業委員會系統組織에 있어서 현재의 情勢는 豫測을 不許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事態를 打開하기 위하여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은 構造政策을 더욱 推進하고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의 本來業務인 農地의 管理主體로서의 機能에 추가하여 農業者의 利益을 代表하는 構造政策推進의 지도자로서의 役割도 充分히 發揮할 수 있을 것을 각 분야에서 期待하고 있다.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은 昭和 59 年 이후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을 展開하고 있으며, 農業의 現場으로부터 농지를 수호하고, 농지의 流動화 推進과 아울러 農地銀行 活動을 실시하므로써 構造政策의 推進을 擔當하고 있다. 이 運動도 今年으로 5 年째를 맞는데 그 동안 많은 成果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今年에도 具體的인 成果를 올리기 위하여 다음의 點을 重點目標로 하여 運動에 努力하고 있다.

### 나. 今年度 重點事項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은 地域에 있어서 農業의 構造改

善을 基本的인 課題로 하여 推進하는 運動이다. 그 가운데서도 農地의 貸借 및 利用權設定의 철저한 水準向上이 있는데 이 경우 基本이 되는 農地銀行 確立에 事業推進의 重點을 두고 있다.

今年度の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과 관계가 있는 施策으로서 構造政策推進會議 運動이 擴充되었으며 또, 畚作農業確立運動과의 連繫가 前年度보다 증가되어 要求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今年度運動을 推進하는데 있어 꼭 留意하여야 할 重點事項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構造政策推進運動과의 連繫

昭和 61 年度부터 行政과 關係機關·團體가 一體가 되어 構造政策을 推進하는 「構造政策推進會議」를 發足시켜, 그 事務局에 全國農業會議所나 都道府県農業會議가 相應한 자리에 位置한 것은 系統組織의 構造改善政策 推進努力의 큰 成果의 하나이다. 더욱이 今年度は 市町村 段階에서도 構造政策會議가 設立되므로서 全國 - 都道府県 - 市町村의 三段階로 構造政策推進運動을 展開하게 되었다. 이 運動의 成果를 올리기 위해서는 農業委員會系統組織에 의한 積極的인 推進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構造政策推進運動을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서는 地域의 資源인 農地를 守護하고, 보다 잘 使用하는 方法(農業專擔者에게 集積 등)을 摸索하는 努力이 반드시 必要하다. 이것은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의 目標와 同一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의 運動으로서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을 推進함과 同時에, 市町村에서 推進하는 「構造政策推進運動」에서도 成果를 올리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構造政策推進會議는 市町村에 設立되지만, 그 事務局 機能은 系統體制가 整備된 農業委員會에서 積極的으로 責任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 특히 構造政策推進會議에서 實施하기로 되어 있는 「中核農家等組織育

成事業」은 農業委員會系統에서 推進하고 있는 農業專擔者 對策과 關聯되므로 農業委員會에 의한 確實한 實施가 必要하다.

中核農家等組織育成事業은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이 從來부터 都道府縣段階에서부터 推進하여 온 自立經營育成特別事業, 市町村段階에서의 地域農業自立經營化促進事業, 先進的 農業經營費用節減指標確立事業 등의 成果를 근거로 하여 構造政策의 重點化를 위하여 農業專擔者 農家の 組織化를 도모하는 것이다. 今年度は 이 組織化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都道府縣農業會議가 農業委員會의 協力을 얻어 全國 3,060 市町村에서 農業을 專擔할 意欲과 能力을 가진 農業者의 意向과 組織化의 現狀을 調査하기로 되어 있다.

## (2) 畚作農業確立對策과의 提携

昨年度부터 「畚作農業確立對策」이 實施되어 새로운 畚作農業의 確立을 目標로 하여 具體的인 推進을 위한 努力을 展開하고 있다. 同對策은 쌀의 需給均衡確保를 위하여 轉作物의 定着과 稻作의 生産性向上을 目標로 하고 있다. 이러한 目標를 실현하기 위하여 栽培筆地移動(부록크 로테손), 交換耕作 또는 賃貸借權의 設定등 地域의 實情에 맞는 農지의 利用調整, 農業專擔者에게 農地の 集積등이 不可缺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農地の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이 目標로 하는 것과 행동 노선을 하나로 하는 것인 同時에 畚作農業確立對策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구조정책면은 成果를 거둘 수 없다.

農地の 利用調整을 軸으로 하여 「農地の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을 推進하고 있는 農業委員會系統組織으로서는 「構造政策推進運動」과 「畚作農業確立對策」 등 여러가지의 局面에서 主體性을 發揮하는 것이 各種 運動의 成果를 確保하는데 있어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3) 構造政策 推進의 象徴으로서의 努力：農地流動化 要請의 實現을  
위하여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은 他機關·團體보다 앞장서서 構造政策의 推進에 努力하여 왔다. 그 具體的인 노력은 昭和 59年 以後의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온 이 運動을 構造政策 推進의 中心的 運動으로 하기 위해서는 全農業委員會가 한 몸이 되어 이를 推進하는 것이 重要하다.

특히 全國農業會議所는 今年 5月, 「農業經營 確立을 위한 農地流動化의 飛躍的인 前進을」, 「農業經營 確立을 위한 農地流動化 促進에 대한 부탁」( 부록 1 및 부록 2 參照 )을 全國의 農業委員會 會長, 市町村長 앞으로 보냈다. 이러한 요청은 內外의 情勢가 農業構造의 加速的인 變革을 要求하고 있는 점을 強調하여 系統組織의 努力에 더욱 關心과 期待를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農地銀行의 體制 確立등을 통하여 農地流動化의 飛躍的인 發展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農地流動化 目標의 再確認과 그것을 實現하는 活動의 總點檢 등 具體的인 努力을 할 것을 促進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보답하는 뜻에서 이 運動을 더욱 推進할 것이 必要하다.

(4) 農業委員會 本來業務와 運動

農業委員會는 本來, 「農業委員會等에 關한 法律」에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이 農業者의 利益을 代表하는 組織으로서 農地管理主體( 必須業務：第 6條 第 1項 )가 되고, 또한 各種 農業振興業務( 任意業務：第 6條 第 2項 ), 建議·意見의 公表( 第 6條 第 3項 )를 하도록 되어 있다.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은 이 農業委員會의 本來業務와 서로 關聯시켜 推進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無斷轉用의 防止등 農地를 保全하는 것과 關係되는 것은, 農地法等法令業務를 嚴正하게 執行하는

데 있어서 大前提가 된다. 또한 農地銀行을 통한 農地流通化의 推進과 農業專擔者에로의 集積은 農用地利用增進法 第9條에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또 農業委員會法 第6條 第2項 業務라는 것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더욱이, 農業委員會의 이러한 活動을 弘報하여 보다 더 推進體制를 整備하기 위하여서는 意見의 公表 및 建議活動等 第6條 第3項 業務에 積極的인 努力을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은 運動으로서 獨立的으로 構成된 것이 아니고, 本來業務의 成果를 確保하는 觀點에서 推進하는 것이다. 따라서 「農地의 保全과 效率的 利用運動」의 推進은 全農業委員事務局이 一體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地域을 끌어 들여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다.

#### 다. 基本課題 1 : 農地法等の 嚴正實施와 農地確保對策

##### (1) 地域에 있어 農地法의 意義·役割 明確化

構造政策의 推進에 있어서는, 地域에 있어서 優良農地의 確保가 大前提가 된다. 따라서 農地法의 適正한 運用을 통하여 農業委員會의 農地管理가 더욱 더 重要하게 되어 왔다. 農地를 「멍치지 않고 耕作한다」라는 合意를 形成함과 동시에 그 土臺가 되는 農地法이 啓蒙을 빠뜨릴 수가 없다. 具體的으로는 農業委員會가 農地를 수호한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2) 農地의 權利移動에 대한 推進努力

近年에 經營規模 擴大의 進展과 代替地取得에 의해 農地移動이 廣域化하고 있다. 市町村의 區域을 넘어서 市町村區域밖의 農地取得(出入耕作)이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것이 農地의 資産의 保存 또는 그에 기반을 둔 遊休化와 연계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根絶하기 위하여 農地取得時 즉 入口에서부터 農地를 지

키는 觀點에서 照會와 檢사가 없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農地法 第3條 第2項에 규정된 農地取得 要件의 嚴正運用이 매우 重要하지만, 隣接近 隣市町村間에 있어서의 運用에 큰 隔差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農地移動의 廣域化에 對應하기 위하여 農業委員會間의 유대를 緊密히 하고 實態에 符合되는 運用을 행하고 있다.

또 出入耕作이 頻繁하게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實態가 반드시 正確하게 把握되지 않고 있다. 出入耕作農地는 荒廢化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의 把握이 重要하다. 이를 把握하기 위해서는 出入耕作의 相互通知體制 整備, 또는 出入耕作台帳의 作成(農地基本台帳의 整備) 등의 推進이 매우 重要하다.

### (3) 無斷轉用防止 對策의 繼續的인 推進

農地法에 대한 認識不足과 違法人줄 알면서 惡質的인 農地의 無斷轉用은 農業委員會系統組織에 의한 各種 啓蒙活動에도 不拘하고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制度의 啓蒙을 위시하여 不法轉用者에 대해 의연한 措置를 하여 農地의 無斷轉用을 根絶하는 運動을 今年度에도 繼續的으로 推進할 것이다. 특히, 無斷轉用摘發後의 措置에 대하여 決定的인 方法은 없지만 반복적인 說得과 指導를 함과 同時에 行政機關과의 유대를 긴밀히 하여 推進하는 것이 重要하다.

「農地無斷轉用防止對策強化月間」을 정하여 重點的으로 추진하며 이 運動의 展開는 다음에서 揭示하는 것과 같은 具體的인 計劃을 樹立하여 짜임새있는 推進을 위한 努力이 必要하다.

먼저 農地의 轉用에는 許可가 必要하다는 것을 周知시켜 徹底히 하기 위하여, 轉用者의 協力を 얻어 「轉用許可濟標示板」의 設置를 한다. 다음으로 農地 巡察을 장려하여 無斷轉用을 早期發見함과 동시에

地域 사람들에게 農地를 지키는 農業委員會의 活動을 浸透시킴으로써 地域 全體가 農地를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農地의 轉用, 貸借에 대하여도 定期相談日을 設定한다든지, 移動農業委員會를 開設하여, 農業者의 相談에 응하는 동시에 農地法等의 理解를 促進시키는 것이 效果的이다. 轉用等に 수반되는 紛爭을 未然에 防止하는데는 都道府農會議에 設立되어 있는 「農用地有效利用相談센터」와 提携하여 農地相談을 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그밖에 昭和 60 年度부터 實施되고 있는 「農地無斷轉用防止特別事業」 實施委員會를 都道府農段階에 있어서의 모델委員會으로서 추진하여 보급하고, 또한 事業의 效果를 廣範圍하게 넓히기 위하여 今年度は 3 年以上 實施한 市町村에 대해 指定을 전환하여 한층 더 浸透를 도모하도록 한다.

#### (4) 農業振興整備計劃에 대한 農業委員會의 意見 反映

地域資源으로서 農地를 보전하는 데는, 農業委員會가 農地法에 근거하여 農地의 一筆管理와 함께 農振法에 의한 Zoning 規制를 嚴正히 實施하는 것이 重要하다. 市町村의 農振整備計劃의 策定, 變更에 있어서는 農業委員會가 農振法 施行規則 第 3 條의 2 에 근거하여 意見を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경우의 判斷은 地域의 農業用지를 確保하고 擴大하는 觀點에서 행한다. 그러나 이 制度는 아직 충분히 活用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의 徹底한 運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 (5) 遊休農地對策

地域의 優良農地를 確保하는 것이 構造政策 推進의 基礎가 되므로 遊休農地의 解消에 努力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調査를 하거나 遊休荒廢農地地圖 등의 作成을 통하여 遊休農地의 實態把握에 노력한다.

遊休農地 解消에 있어서는 農地利用 改善團體·地域農業集團 등 集落과의 連帶를 強化하여 農業生産의 現場에서 그 解消에 노력한다. 具

體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農用地利用改善團體 및 地域農業集團이 荒廢地의 復元 등 簡單한 基盤整備를 實施하여 이를 農業專擔者 등에게 農地利用을 集積하여 간다는 農用地利用增進對策事業의 導入 및 新規就農斡旋事業의 活用 등에 의하여 耕作者가 없어진 農地를 地域의 外部로부터 새로운 사람을 迎入하여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어느쪽이든간에 遊休農地對策에는 農業委員會가 主體性을 發揮하면서 努力하며 推進하는 것이 重要하다.

## 라. 基本課題 2 : 農地流動化의 徹底한 基盤整備와 農地銀行의 確立

土地利用型 農業의 生産性 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地域의 中核的인 農業專擔者에게 어느 정도 優良한 農地를 集積하여 經營規模를 擴大하는가 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기 위하여 農地流動化의 徹底한 推進과 農業專擔者의 適切한 誘導가 必要하다. 이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農地流動化의 徹底한 基盤整備

#### (가) 農地流動化 目標設定

農地流動化의 徹底한 基盤整備를 위하여 集落段階에서부터 流動化 目標面積을 계산하고 市町村段階에서는 流動化 目標面積을 設定하므로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農業委員會마다 流動化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또 都道府県, 全國段階에 이르기까지 設定하여 이를 實現하는데 있다. 都道府県段階에서는 市町村에서부터 계산되어온 목표면적의 統計가 構造政策推進指針에 明記된 流動化 目標面積과 맞도록 市町村에 대하여 強力한 指導를 한다.

#### (나) 「農用地流動化促進強調月間」의 推進

全國, 都道府県, 市町村의 各構造政策推進會議가 設定하는 「農用地利用增進運動月間」의 期間, 農業委員會系統組織에서는 이와 提携를 취

하면서 利用權의 발굴 등 權利設定을 中心으로 從來와 같은 農地流動化促進強調月間을 設定하여 推進한다.

(다) 低利用權設定率(3%未滿) 市町村의 解消

農地流動化의 徹底的한 整備를 도모하기 위하여 利用權設定率이 낮은 市町村의 解消를 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今年度에도 利用權設定率 3%未滿 市町村의 解消를 重點적으로 推進하는 것이다.

(라) 暗小作의 解消

利用權設定率이 全國적으로 4%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現在에도 制度外 賃貸借(暗小作)가 相當數 있다고 볼 수 있다.

昭和 62 年の 「農業調査」에 의하면 水稻作賃借地中에서 「農業委員會의 手續을 밟고 있는 者」는 面積으로 42%, 農家數로는 8%에 지나지 않았다. 「農家間的 相對契約에 의한 사람」은 面積으로 51%, 農家數로 58%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推進努力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意味에서는 농지의 임대차 시장은 아직까지도 무진장하여 이를 積極적으로 推進한다면 한층 더 流動化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는 制度의 啓蒙을 중심으로 推進할 필요가 있다.

또한 長期全面農作業受委託 등을 利用權設定으로 바꾸는 것도 重要하다. 今年度부터 農地銀行活動事業 가운데 새로 設立된 農作業受委託等 登錄促進活動을 活用하여 推進하고자 한다.

(마) 集落에 着眼한 開發

최근 市町村段階에서 利用權設定率이 10%를 초과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市町村에서는 集落農用地的 5割 정도가 農業專擔者에게 集積되어 있는 事例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集落에 착안한 利用權의 開拓이 重要하고, 또 效率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土地利用型 農業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에 있어 面的利用集積促進活動事業에서 重點地區를 設定하여 集落段階의 開拓強化를 도모하는 것

으로 한다.

(비) 基盤整備事業과의 提携

基盤整備事業 등을 進行中이거나 또는 종료한 地域은 一般的으로 農地의 流動化와 面的集積하는데 가장 좋은 時期이다. 土地改良事業에서 從來부터 事業實施以前의 所有地에 換地를 實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圃場의 面整備는 實現하여도 所有權을 기준으로 할 경우 圃場이 分散되어 있다.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地元の 土地改良區等과 提携를 하면서 換地를 한다면 所有權을 기준으로 한 面的集積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利用權設定을 進行하여 農業專擔者에게 농지를 集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事業實施地區에 대해 重點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사) 利用權 基準의 交換分合 推進

農地流動化의 進行에 의하여 集落에 있어서는 農業專擔者에게 農地의 集積이 5割을 초과하는 規模擴大로 連繫되는 反面, 利用權設定農地는 分散되는데 農地의 分散이 激化되는 地域도 적지 않다. 이러한 狀況을 解決하기 위하여 농지의 面的集積, 集團化가 不可缺하다.

農地의 面的集積을 위하여 農業委員會系統組織에서는 農地銀行活動을 통하여 努力하고 있다. 또, 農業委員會가 事業實施主體로 되는 小規模 事業인 交換分合은 從來 所有權 基準에서 實施되어 왔지만 使用收益權의 交換도 事業의 對象이 된다는 데 착안하여 利用權의 交換分合을 檢討하고 있다.

(아) 標準小作料의 定着推進

農地流動化促進을 위하여서는 地代가 適正水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農業委員會에서는 3년에 한 번 標準小作料를 定하는 同時에 이의 定着, 普及에 努力하고 있지만 實勢小作料와 標準小作料의 乖離는 크다. 그리고 2年 連續된 米價引下로 인하여 實勢小作料가 비싸졌다. 이와같은 시기일수록 標準小作料의 定着을 통하여 耕作者의

經營安定을 도모해야 한다. 농지유동화의 推進에 있어서는 標準小作料의 普及定着이 重要하므로 農地銀行事業中에 있는 標準小作料水準形成 指導費를 활용하는 것이 重要하다.

## (2) 農地銀行確立의 徹底한 推進

農地流動化의 基盤整備는 流動化의 徹底한 推進과 함께 그것을 管理하고 活用하는 農地管理시스템의 確立이 前提로 되지만, 農業委員會系統에서는 農地銀行의 확립을 통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農業專擔者 농지의 面的集積을 實現하기 위하여 農業委員會·農地銀行에 의한 農지의 一元的 관리가 필요하다.

작년에 農地銀行에서 農地流動化情報台帳을 정비하여 農地情報를 蓄積한다든지, 農用地利用調整會議를 設置하여 流動化의 方向決定에 參與한다든지, 農地移動適正化 斡旋事業이 농지은행활동사업의 하나가 되는 등 農業委員會에 의한 농지유동화와 農地管理의 수법이 農地銀行의 體制整備를 통하여 圖謀되어 왔다. 今年度는 이를 한층 더 정착시킬 것을 目標로 하여 명실공히 農地銀行을 確立하기 위해 이러한 점에 의하여 推進하는 것이 重要하다.

### (가) 農地銀行設置規程 등의 完備

機關으로서의 農地銀行 確立을 위하여서는 그 設置의 根據가 되는 設置規程을 정비하여 業務內容을 명백히 하는 業務指針書 등을 完備하여야 한다. 未整備된 農業委員會에서는 시급히 作成하도록 한다.

### (나) 農用地利用調整會議의 實效있는 推進

昨年度에 農地銀行에는 農業者의 代表者, 關係機關과 團體의 擔當者들로 구성된 農用地利用調整會議가 設置되었다. 그러나, 農用地利用增進計劃 決定前의 農地情報의 一元管理와 流通化施策의 配分이라는 本來의 運營을 하고 있는 例는 아직 少數이다. 따라서, 本來의 趣旨에 따라 運營을 해야 한다.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推進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構成者〕

地域農業集團等の 代表, 其他 農家の 代表, 農業委員, 農地流動化推進員의 代表, 面的利用集積指導員, 構造政策指導員, 市町村 및 農業委員會의 擔當職員, 農協의 營農指導員, 土地改良區職員, 農業改良普及員 其他 他關係機關·團體의 實務者이다. 農用地利用調整會議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實務機關이다. 따라서 構成者는 各種 機關의 代表者가 아니고, 實務者로 構成되어야 한다.

〔農用地利用調整方針의 決定〕

農地の 利用權, 所有權을 인계받은 農業專擔者의 登錄 및 優先順位, 地域의 特性에 맞는 農業專擔者의 經營規模擴大에 따른 方向提示, 農地流動化方案의 活用(區分)方針, 農地の 效率的 利用의 推進方案 등, 農用地利用調整에 관한 基本方針을 決定한다.

〔農地流動化에 관한 企劃立案〕

利用權의 開拓 등 再設定을 進行하기 위한 方案 및 計劃에 대하여 企劃立案을 행한다.

〔農地流動化의 方向提示(誘導效果의 發揮)〕

中核的 農業專擔農家에의 面的集積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을 策定하기에 앞서 미리 農用地利用調整會議를 開催하여 農用地利用調整方針에 기초를 둔,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規模擴大를 위하여 方向提示(誘導方案을 포함) 및 農用地의 流動化方案의 區分 등에 대하여 協議를 한다.

이 경우, 農用地利用調整會議에서는 今年度부터 市町村構造政策推進會議가 策定하기로 한 活動計劃에 따라 農地流動化情報台帳을 活用하고,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經營規模擴大, 面的利用集積 등에 의한 農用地 등의 效率的 利用을 더욱 促進한다는 觀點에 서서 流動化情報의 案件마다 바람직한 利用權 등을 받는쪽 과 活用하여야 하는 農地流動化

方案 등에 대하여 檢討・協議한다. 關係機關은 이 結果에 따라, 流動化를 위한 活動을 하게 된다.

[ 農地의 權利移動案件의 連絡 등 ]

農地銀行에서 集積・整理한 農地流動化情報中에서 事情에 의하여 農用地利用調整會議의 檢討를 거치지 않고 農地法 第3條에 의한 權利移動・設定案件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그 內容을 利用調整會議에 報告함으로써 構成員에 農地移動에 관한 情報를 널리 알리도록 한다.

[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 등의 活用 ]

農地委員會가 행하는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의 경우는 同事業이 農地銀行活動 가운데서 하나의 사업으로 昨年度부터 자리를 잡아 定着함에 따라, 農用地利用調整會議가 정하는 農用地利用調整方針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活用함과 동시에 農業專擔者의 規模擴大에 이바지하는 農地의 集積을 效果的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農地保有合理化事業을 積極的으로 活用한다.

(다) 農地流動化情報台帳 등의 整備

農地銀行에서 整備하기로 되어있는 農地流動化情報台帳을 위시하여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名簿, 農地銀行管理카드, 利用權終期管理台帳, 面的利用集積圖 등을 정비하여 權利關係 등이 틀리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그 記載內容을 필요에 따라 點檢・補正하여 農家로부터 農地의 貸貸借・賣買・交換에 관한 相談 및 流動化의 企劃立案 등에 活用한다.

(라) 農作業受委託에의 積極的 對應

農作業受委託登錄促進活動이 今年부터 農地銀行活動 가운데 포함되었다. 이것은 農作業受委託을 利用權設定 등에의 端緒가 되는 것으로 이를 推進할 경우에 農作業受委託의 把握 및 受託者의 登錄을 積極的으로 하여 農作業受委託의 利用權設定 등의 履行意向, 農業專擔者의 經營規模擴大, 農用地의 面的인 集積에까지 결부시키고 있다.

#### (甲) 面的利用集積指導員의 位置 確立

今年度부터 面的利用集積促進活動이 2,900 個 市町村에서 實施된다. 이때 各市町村에 두게 되는 面的利用集積指導員을 農地銀行의 管理者로서 자리 잡게 하여 流動化의 企劃, 面的利用集積促進檢討會의 開催, 重點地區의 指導, 農業會議·農業公社와의 提携에 萬全을 기하는데 있다

#### (乙) 面的利用集積促進活動과 交換分合事業과의 提携

農地銀行의 目標인 農業專擔者에게 농지의 面的集積을 실현하기 위한 方法으로써 利用權 基準으로 交換分合의 推進을 檢討하는 것으로 하였다.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은 市町村體系의 事業이므로, 農業委員會가 充分히 對應하지 못하는 部分을 農業委員會가 事業主體인 交換分合事業으로써 補完할 수 있도록 從來 所有權 基準으로 실시되어 온 同事業을 利用權 基準으로 맞추는 것이 目的이다.

#### (丙) 支所의 設置

農用地利用改善團體 등 集落組織 또는 農業委員, 流動化推進員을 農地銀行의 支所に 配置하여 集落과 結付된 機能을 充實히 遂行할 必要가 있다.

### 다. 農業委員會의 主體의 推進 : 推進體制의 強化

以上の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뒷받침 할 推進體制의 強化가 必要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의 정비도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運動의 推進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留意하여야 한다.

#### (1) 事務委任의 推進과 實施主體로서 農業委員會의 明確化

農地流動化를 進行하는 事業計劃의 中心인 事業인 農用地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은 今年度부터 農地流動化造成金交付事業과 土地利用型農業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의 2개 사업으로 構成이 바뀌어졌다.

이 가운데 農地流動化造成金事業은 事業實施主體가 農地保有合理化法人(道府縣農業公社)으로 되었으며, 造成金の 交付를 除外한 업무는 市町村 등에서 業務委託을 행하는 등 同事業의 圓滑한 推進을 기하고 있다. 여기서 農業委員會의 역할은 受託業務의 執行을 擔當하는 등과 같은 積極的인 事業의 推進이 기대된다.

本事業을 農業委員會의 業務로서 개발하여 정착시키는 것은 農業委員會에 의한 농지의 일원적인 관리를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農業委員會에 의한 본사업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土地利用型農業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에 대하여서는 從前의 사업과 같이 실시주체는 市町村이며, 執行은 市町村 및 農業委員會로 되어 있다. 그러나, 農業委員會가 主體的이고 效果의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本事業에 대해 地方自治法 第 180 條의 2의 規程에 근거하여 事務委任을 받아두는 것이 適當하다. 이 경우, 事務委任을 받는 事務의 種類 및 內容과 範圍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 두는 동시에, 그 증거가 되는 豫算 및 人員의 확보 등에 대하여도 市町村部局과 충분히 협의하여둘 필요가 있다.

더욱이 農業委員會의 主體的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利用權設定等促進事業(단, 利用增進計劃의 作成과 公고를 除外)에 대하여 事務委任을 받아들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말한 農地流動化의 細部計劃事業의 事務委任에 앞서, 市町村部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추가해 둔다.

## (2) 農地資料의 整備

農地에 대하여 各種 事業을 推進할 때의 기초는 精確한 農地資料이다. 農業委員會系統組織에서는 農地基本台帳의 整備를 통하여 그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膨大해 가는 農地資料의 정비에는 從來

의 台帳方式으로서는 신속하게 對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台帳의 電算化를 系統을 통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산화에 의한 간단한 정보의 관리에서부터 자료의 加工을 통한 구조정책에의 활용을 실현할 필요도 있다. 한편으로 아직도 台帳의 整備가 이루어지지 않은 委員會도 있으므로, 電算化에 맞추어 이를 整備하도록 하고 있다.

農地情報의 增加, 出入作의 頻繁化에 의하여 市町村段階에서는 農地資料의 管理를 完結하기 힘든 狀況도 發生되고 있다. 그래서 都道府県 農業會議段階에서 一定한 分野의 農地資料 管理에 關여하는 것이 廣域化되고 있는 農地移動에 對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며, 農業會議의 農地事務를 確立하고, 農業委員會의 農地業務를 代行하게 되므로써 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農地資料活用·管理 構造開發에 앞으로는 關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3) 農用地效率의 利用相談센터의 運營 強化

都道府県 農業會議가 農地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今後의 構造政策展開에 있어서 組織強化의 觀點에서도 중요하다. 相談日을 정하여 各種情報를 活用하여 啓蒙을 하는 등 活動의 活性化를 圖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農業委員會에 의한 相談機能의 活用이 必須要件이다. 앞으로는 前述한 県段階에서 農地資料의 정비와 보조를 맞추어 県段階에서 農地管理센터의 機能 및 體制를 정비하는 것이다.

### (4) 農業委員會 本來業務와 運動의 一體的 實施

農業委員會의 業務는 法律에 明記되어 있지만 個個의 運動推進과 法律上的 位置를 명확히 하고, 運動의 성과가 系統業務의 成果와 일치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法律上的 업무와 運動을 對應시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6條 1項(必須業務)

① 農地法(農地法 3, 4, 5條 審査의 嚴正實施 → 農地를 지키는 觀點)

② 農用地利用增進法(利用增進計劃의 決定 → 農業專擔者 育成의 觀點)

③ 土地改良法(交換分合의 推進, 實施 → 面的集積의 觀點)

(나) 6條 2項(任意業務)

① 1號(農地等の 利用關係 斡旋 및 爭議 防止)

② 2號(農地等の 交換分合 斡旋 기타 農地事情 改善)  
→ 各種 開發活動과 調整活動(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 利用權의 開發, 交換分合의 實施, 農地利用調整會議에서의 調整)

③ 3號(農業 및 農村에 관한 振興計劃의 樹立) → 流動化 面積의 目標과 年間 開發計劃의 樹立, 構造政策活動計劃 樹立에의 關與

④ 4號(農業經營의 合理化) → 中核農家育成政策에 있어 農業專擔者의 組織化 事業推進을 위한 各種 研修會(年金, 稅金도 포함)

⑤ 5號(農業에 관한 調査) → 中核農家等 育成事業에 있어 調査

⑥ 6號(啓蒙 宣傳) → 各種 施策의 PR(流動化와 關聯하여 全國農業新聞, 全農圖書의 普及, 農委消息의 發行)

(다) 6條 3項(意見의 公表·建議) → 構造政策과 關聯된 建議

## 5. 農地銀行 活動의 推進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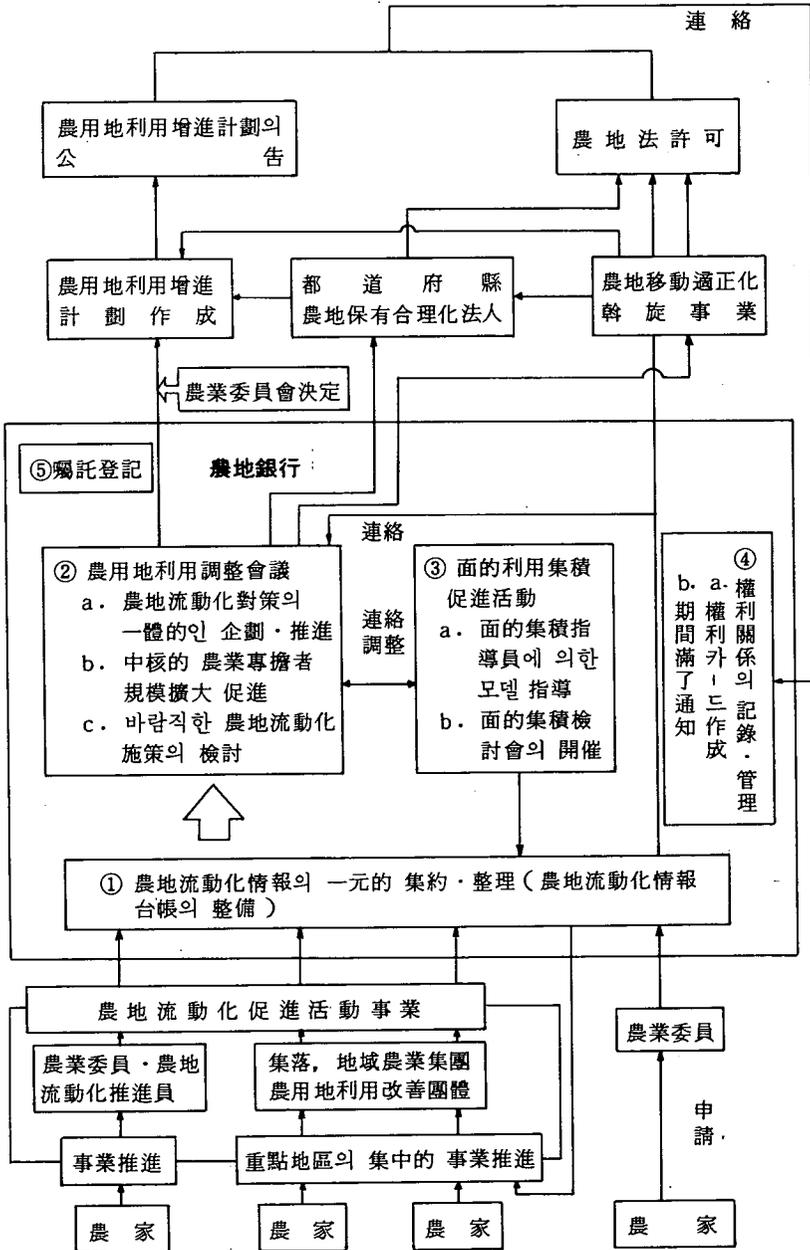
### 가. 序 言

今年度부터 土地利用型農業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속에 位置하여 定着하게 된 農地銀行活動은 日本 農業의 構造改善을 加速적으로 推進하기 위한 事業活動의 核心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銀行”이라고 이름을 붙인데서 알다시피, 農家に 있어 身近한 存在, 특히 農地의 貸借 등에 대하여 일반은행과도 같이 安全을 保證하는 機關으로 되어있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農地銀行活動事業은 “農業委員會가 執行”하는 것은 實施要領에도 명백히 되어 있으며 農地三法에 의한 農地流動化施策展開 이후 農業委員會에 의한 推進實績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동시에, 今後의 推進에 있어서도 農業委員會의 주체적인 推進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農地銀行活動事業은 發足된 이후 今年으로 7年째가 된다. 現段階에서는 특별히 利用權設定面積 등의 量的인 擴大와 再設定對策, 여기에 農業專擔農家の 提示(利用調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流動化推進員에 의한 業務開發活動을 強化하여 農地를 내어놓는 者와 받는 者의 情報를 豊富하게 하여, 農地利用調整會議에 의한 流動化方策의 檢討와 方向提示를 강화함과 동시에, 農地保有合理化法人(縣公社)과 提携하여 權利풀(Pool), 再配分機能과 기틀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農地銀行活動事業은 昨年度에 農地流動化情報台帳의 整備 및 農地利用調整會議의 設置 등 大幅的인 擴充을 도모하였다. 今年度は 이에 추가하여 農作業受委託登錄等 促進活動이 새로이 發足되는 등 機能이 더욱 強化되었다. 이는 市町村에 設置된 行政委員會로서 農地流動化를 수행하는 役割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證據이기도 하다.

<圖 I - 6> 農地銀行을 核으로한 流動化情報와 案件의 흐름



그래서 本節에서는 農地銀行으로써 最少限으로 必要한 業務(必須業務)를 說明함과 동시에 將來의 業務展開方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나. 農地銀行의 必須業務

##### (1) 農地流動化情報台帳의 整備

農地를 팔고 싶다·빌려주고 싶다·사고 싶다·빌리고 싶다·交換하고 싶다 등 農家로부터의 申請이나 農地流動化推進員에 의한 業務推進 등과 같이 提案된 農地流動化에 관한 情報를 <表 I - 3>의 樣式第 1 號와 같은 카아드에 기입하여 台帳으로써 整備한다. 第 1 號樣式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農地의 引繼者에 관한 情報이면 그 사람의 姓名·住所·利用權의 設定 등을 希望하는 農地의 所在地·面積은 물론, 作付作目, 圃場條件, 希望하는 引受者의 姓名이나 小作料(賈值)까지도 記載하도록 되어 있으며, 流動化를 希望하는 農家와 農地의 情報가 이들의 意向을 포함하여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台帳을 調整함에 따라 市町村內의 農地流動化에 관한 情報가 農地銀行에 一元的으로 集約·整理되는 것이다.

##### (2) 農用地利用調整會議의 設置

農用地利用調整會議는 글자 그대로 農地銀行의 中核이 되는 任務를 달성하는 것이다. 農用地利用調整會議에서 農地流動化情報台帳에 蒐集된 情報를 기준하여 中核의 農業專擔者의 經營規模擴大에 대한 方案의 檢討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서 이의 概要를 살펴보자.

##### (가) 構成員

農用地利用調整會議의 構成員은 地域農業集團의 代表農家, 農地流動化推進員, 農業委員의 代表, 市町村 및 農業委員會의 擔當職員, 農業改良普及員, 기타 關係機關·團體의 實務擔當者, 그리고 今年度부터 새로

<表 I-3 >

農地流動化情報台帳

(樣式第 1 號)

引繼者 情報關係

擔當流動化推進員姓名					
利用權等の 引繼者姓名 ( )		住所 ( )		TEL ( )	
利用權의 設定等を 希望하는 農地等の 所在	面積	作付作目	圃場條件	希望하는 小作料 (賣價)	希望하는 引受者姓名
	㎡	1 稻 2 田作( ) 3 不作付	1 整 備 2 未整備	円/10a	
		1 稻 2 田作( ) 3 不作付	1 整 備 2 未整備		
		1 稻 2 田作( ) 3 不作付	1 整 備 2 未整備		
		1 稻 2 田作( ) 3 不作付	1 整 備 2 未整備		
		1 稻 2 田作( ) 3 不作付	1 整 備 2 未整備		
相續稅納稅猶豫農地の	有 無 有 無	利用權의 設定 1 希望안한다 等에 대하여 2 希望한다		기타의 記 事 項	
贈與稅納稅猶豫農地の	有 無 有 無	公的機關의 介入 ① 農業委員會 ② 公社			
農年特定處分對象農地等の	有 無 有 無	을 希望하는가 ③ 農協 ④ 기타			

引受者 情報關係

擔當流動化推進員姓名			
利用權等の 引受者姓名 ( )		住所 ( )	TEL ( )
引受者の 生年月日	M T S 年 月 日生 ( 歲 )	(利用權의 設定等を 引受받는  경우의 希望條件) 1 支拂可能小作料 (賣價)의 水準  2 希望하는 圃場條件, 自宅에서 의 距離等  3 其他	
農業後繼者の 有無	1 有...農業後繼者の 年齡 ( 歲 ) 2 無		
經營의 主要作目			
經營 面積	所有地(番) a (田) a 借入地(番) a (田) a		
各 制度 의 適用 狀況	1 農業者年金의 加入者이다 2 中核의 農業專擔者基準에 適合한 者이다 3 斡旋讓受等 候補者이다 4 縣公社가 定하는 目標經營 面積을 초과하는 者이다		
生産組織等에의 加入狀況과 加入 하고 있을 경우 役職名	1 加入組織 ( ) 2 役職名 ( )		

이 設置되는 構造政策指導員도 計劃에 參加한다.

#### (나) 會議內容

農地流動化情報台帳에 의하여 集約·整理된 情報, 또한 今年度부터 整備되는 農作業受委託登錄台帳(단, 昭和 63 年度는 全國 100 個 市町村만이 作成)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案件마다 權利 등을 인수받는 者의 選出(候補者의 羅列 등) 및 引受者로서 適當한가 아닌가 判定,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되는 農地流動化施策의 選定 등에 대하여 協議한다. 이때 그 地域 農地の 需給事情,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規模擴大狀況, 要求小作料와 支拂可能小作料의 關係 등을 충분히 考慮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農作業受委託을 利用權設定으로 誘導할 때의 方針 등에 대하여서도 利用調整會議에서 檢討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다) 開催時期

市町村 및 農業委員會, 県公社 등 각 流動化施策實施機關은 農用地 利用調整會議에서 協議·檢討를 거쳐 事業을 實施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므로 利用權設定等促進事業을 實施할 경우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을 作成하기에 앞서 이 會議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 原則은 적용된다. 所有權移轉의 案件 등은 事務處理를 급하게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農用地利用調整會議에서 檢討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農業委員會가 事業을 실시하고 處理後에 利用調整會議에 報告하는 식의 방법을 취한다.

#### (라) 農用地利用調整方針의 決定

各 農地流動化施策의 실시와 農用地利用調整會議를 圓滑하게 運營하기 위하여서도 農用地利用調整會議에서 사전에 農用地의 利用調整에 관한 基本方針을 農地銀行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方針에 포함된 내용은 引受者가 될 사람(農業者 또는 農業生産法人)의 把握과 優先順位, 地域에 따라 특성에 相應하는 規模擴大의 方向, 流動化施策의 適用方針, 農用地의 效率的利用의 推進方案, 出入耕

作 및 農作業受委託의 取扱 등이다. 1년에 몇회 開催하는 同會議 속에 最低 1회는 이 調整方針의 檢討를 하도록 한다.

### (3) 農地銀行管理카아드 등의 作成

利用權의 設定을 행한 사람과 引受者, 設定을 행한 土地, 그 權利의 種類와 內容, 存續期間, 賃借金額 등 必要한 事項을 記入한 「管理카아드」(〈表I-4〉의 樣式第2號)를 義務의으로 作成하도록 되어 있다. 必要한 경우 카아드 寫本을 賃貸人과 賃借人에게 送付한다.

또한 利用權의 滿了期日을 관리하기 위하여 滿了期別로 「利用權終期(更新) 管理台帳」을 整備한다. 더욱이 利用權設定時에는 되도록이면 滿了時期를 統一하도록 誘導함과 동시에, 다음에 再設定對策을 進行하는데에도 이것이 중요하다.

### (4) 面的利用集積促進活動의 實施

農地流動化에 대하여 豊富한 經驗과 識見을 가진 流動化推進員 가운데서 選出되는 「面的利用集의 指導員」의 活動如何가 農地銀行活動擴充의 관鍵을 가지고 있다. 面的利用集積指導員은 自身이 中核의 農業專擔者에의 集積度가 높은 利用權 등의 設定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외의 流動化推進員에 대하여 流動化의 推進方法 및 面的集積의 手法 등에 대하여 指導하고 助言하는 책임을 完遂하였다. 이러한 面的利用集積指導員의 指導下에 利用權의 新規開發과 再設定을 더욱 效率的이고 積極的으로 推進한다.

더욱이 本活動에 있어서는 이러한 集中的인 추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市町村內에 특정의 중점지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地域의 條件 등 基盤整備의 추진상황, 農地流動化에 대한 열의가 가득한 狀況에서는 重點地區를 設定하여서 추진하는 것도 農地流動化를 進전시키는 有力한 手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本活動에서는 面的利用集積圖 및 中核農家台帳을 作成하는 것

<表 I-4 >

農地銀行管理카드

(樣式第2號)

[ 表面 ]

코드番號													
[ 利用權을 設定한 者 ]				利用權設定에 대한 事前 檢討事項 (○印로서 체크함)									
農家台帳番號	姓名	年齡	住所(電話)	離農(意向)의 有無		農年加入의 有無	經營移讓年金受給의 有無	納稅猶豫의 有無					
			TEL( )-	1. 離農 2. 가까운 將來離農 3. 繼續		有 · 無	有 · 無	有 · 無					
農地番號	利用權을 設定한 土地				利用權의 設定을 받은者		設定한 利用權의 內容					獎勵金交付의 有無 (交付되었을 경우는 ○표)	
	所在 大字 字	地番	現況地目	面積	姓名	住所	利用權의 種類	土地의 利用目的 (內容)	公告年月日 (許可)	契約 年度	終期年月日		小作料金額
1				m <sup>2</sup>									
2													
3													
4													
5													

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重點地區를 中心으로 進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5)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의 實施

農業委員會 固有의 事業인 農地流動化 또는 保有合理化의 手法이라 할 수 있는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이 農地銀行活動에 挿入되어 農地銀行에 의해 農地의 一元的인 管理와 分離되지 않는 一體의 事業推進을 期待하고 있다.

특히 今年度부터는 農地等取得資金貸付의 上限線이 農業專擔者가 取得할 경우 5,000 萬円으로 인상되므로서 利用增進事業과의 隔差가 없어지는 등 대단히 많은 利點이 擴大되고 있다.

#### (6) 囑託登記의 實施

農用地利用增進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을 행하는 案件에 대하여는 市町村이 登記의 囑託을 행하지만 農業委員會는 市町村으로부터 事務委任을 받아 登記事務의 處理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市町村이 手數料 또는 實費를 徵收할 경우에는 農用地利用增進事業에 의하여 행하는 囑託事務도 手數料 또는 實費에 따라 행하는 事務를 명확히 區分하여야 한다.

#### (7) 權利移動에 따른 年金·稅金의 검토

農家가 안심하고 농지를 貸借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貸借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農業者 年金의 特定處分對象農地인가 아닌가, 相續稅·贈與稅納稅猶豫의 特例對象農地인가 아닌가 등에 대하여는 農業委員會·農地銀行에서 사전에 檢査하여 둘 필요가 있다.

모처럼 利用權을 設定하여 流動化造成金을 받았음에도 뒤에 가서 經營移讓年金의 支給을 中止하거나 相續稅를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농가도 걱정이 된다.

### (8) 再設定(更新)對策의 徹底

賃借農家의 경작을 安定시키기 위하여는 利用權을 再設定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再設定對策에 萬全을 기하는 것이 農地銀行이 當面한 가장 重要한 課題라고 말할 수 있다.

農地銀行에서는 첫째, 「利用權終期(更新) 管理台帳」에 의하여 期間滿了 6個月 前에, 期間滿了預告通知(再設定意向의 把握을 포함)를 賃貸人, 賃借人의 雙方에 보낸다.

通知書로서 預告한 것만으로는 手續을 잊기도 하므로 流動化促進員이 滿了 2개월전까지는 通知書의 寫本과 「利用權設定等申請書」를 持參하여 再設定(更新)手續을 하도록 指導한다.

그리고 이러한 流動化推進員이 個別的으로 대책을 進행함과 더불어, 地域農業集團活動을 기초로 하여 再設定에도 힘을 쓴다. 期間滿了를 앞둔 賃貸人, 賃借人 雙方을 地域單位로 한곳에 集合시켜 相談會를 열어 再設定時에는 農業專業農家에게 面的集積을 연결시켜 流動化造成金이 交付될 수 있도록 誘導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會晤를 面的利用集積促進活動中の 面的利用集積促進檢討會로서 開催할 수 있다.

### (9) 農作業受委託登錄 등의 實施

農作業受委託登錄等促進活動을 하게 될 경우에는 農作業受委託를 利用權設定 등의 端緒가 되는 것으로 하여 이의 把握 및 委託者·受託者의 登錄을 積極的으로 추진하여, 農作業受委託의 利用權設定 등으로 移行하거나, 農業專擔者의 經營規模擴大와 農用地의 面的인 集積으로 결부시켜 간다.

### (10) 農地銀行의 組織體制 造成

農地銀行의 組織은 基本的으로는 農業委員會와 分離할 수 없는 一體이다. 農地銀行의 代表者는 農業委員會長이며 事務局은 農業委員會이다.

農地銀行을 개설하면 「○○町(市, 村)農地銀行」이라는 看板을 揭示한다.

農地銀行의 外務員은 農地流動化推進員이 된다.

더욱이 集落 및 地域農業集團, 農用地利用改善團體, 土地利用組合 등 自己가 擔當하고 있는 土地利用調整機能을 이용하여 많은 活用을 하기 위해 이러한 地緣的인 組織·集團을 農地銀行의 「支店(支部)」으로써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 支店長(支部長)이 되는 것은 農業委員 또는 農地流動化推進員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본 農地銀行의 組織 및 活動에 대하여는 「農地銀行設置規程」 및 「農地銀行業務方法書」를 作成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 다. 農地銀行의 擴充과 展開方向: 任意業務에 대하여

##### (1) 序 言

農用地의 遊休化와 農業專擔者의 減少가 빠르게 진행되는 現在의 상황에 제동을 걸어 扎实的 農業專擔者에 의하여 農用地가 效率的으로 이용되고, 그 經營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貸付希望農家의 農用地利用權을 農地銀行에 「풀(Pool)」로 하여, 그것을 農業專擔者의 規模擴大와 面的集積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再配分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구조정책에 拍車를 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農地流動化의 推進을 통하여 명백해진 것은 賃貸人은 賃借人을 선택(農地市場이 좁아 緣故關係에 制限을 받는다)하는 傾向이 강하게 있어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規模擴大 및 面的集積에의 誘導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農業專擔者가 부족한 地域에서는 利用權設定이 進전되지 못하고 遊休化가 進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打開하기 위하여서라도 利用權을 集積하여 經營規模擴大 指向者 및 歸農 青年, 新規參入者 등에게 再配分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現行制度下에서는 農業委員會·農地銀行이 농지에 관한 權利取得의 주체로는 될 수 없으므로 自己自身이 利用權設定을 받아 集積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능한 방법은 다음 2가지이다.

① 農業委員會의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을 통하여 都道府県段階의 農地保有合理化法人으로 利用權을 設定시켜서 集積하고 再配分한다.

② 農地貸借의 推進過程에서 빌려주는 쪽이 빌리는 쪽을 指定(特定)하지 말고 그 利用權의 處分을 農業委員會에 一任하고 事實行爲로서 集積한다.

## (2) 農地保有合理化法人(縣農業公社)의 活用

利用權을 集積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農業委員會의 推進을 통하여 農地保有合理化法人(縣農業公社)에 權利를 設定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集合的利用權等調整事業」이며, 이때 農地銀行이 가진 流動化의 方向提示機能을 자유롭게 發揮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서는 農用地利用改善團體 또는 地域農業集團의 農用地利用調整活動과 農地保有合理化法人이 갖는 農地保有와 再配分機能을 效果的으로 活用하고, 농지의 面的集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中核農家の 規模擴大와 地域全體의 生産性이 높은 農業의 實現을 目標로 한다.

地域農業集團의 相談 또는 意見調査 등을 통하여 농지를 引繼하는 쪽과 引受하는 쪽의 의견을 종합하여, 貸付 및 交換등을 希望하는 농가의 농용지에 대한 權利를 農業委員會의 「斡旋活動」 등을 통하여 일단 縣農業公社에 모아 가지고 농지를 集團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地圖를 작성하고, 面的利用 및 規模擴大를 위하여 再配分計劃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農業委員會가 實施하는 農地銀行活動(특히 面的利用集積

促進活動)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公社를 활용한 利用權 풀(Pool), 再配分의 推進, 市町村段階 또는 集落段階에 있어서 農業委員會의 推進活動 등에 基盤이 없으면 유효하게 기능할 수가 없다.

### (3) 推進活動 中에서 事實上的 利用權 풀(Pool)

農業委員會 自身이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利用權 풀(Pool)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써 農地貸借의 事業推進過程에서 빌려주는 쪽이 빌리는 쪽을 指定(特定)하지 않고 그 利用權의 處分을 農業委員會에 一任하는 방법이 있다. 말하자면 사업추진과정에서 事實上 利用權을 풀(Pool)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빌려주는 쪽의 一任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빌려주는 쪽에서 상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一朝一夕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事業推進活動에 있어서도 보다 더 증가한 “사실상의 상대관계”의 拂拭 즉 事業推進段階에서 貸借를 연결시켜 利用增進計劃에 맞추는 방법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더욱이 今後は 「斡旋事業」에 있어서 농가로부터 貸借에 대한 事前申請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증가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農地利用調整會議를 活用하여 農地銀行에 의해 利用權集積을 하는 方法도 필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하였다. 農地銀行을 중심으로 이러한 諸施策을 綜合的이고 一體的으로 活用하여 事實상의 利用權 등의 풀(Pool), 再配分 方向을 추진시켜 農業專擔者의 規模擴大와 面的集積을 강력히 실현시켜 가는 것이 가장 重要한 것이다.

## 6. 構造政策推進會議活動의 概要

### 가. 序 言

현재 土地利用型農業을 중심으로 하는 農業의 構造改善을 徹底히 하여 더욱 緊急히 進行시킬려고 하는 運動이 全國各地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運動의 중심이 되는 農業者 및 行政·團體關係者가 一體가 되어 構造政策推進運動을 하고자 하는 것이 昭和 61 年に 發足한 「構造政策推進會議」이다. 當初에는 都道府縣段階과 全國段階에 設立하였지만 今年도 부터는 마침내 市町村段階에도 設置하게 되었다.

市町村推進會議의 主活動은 構造政策을 위하여 活動計劃의 立案 및 着實한 實踐이다. 今年度에는 새롭게 ① 中核農家 등 組織育成活動, ② 土地利用型農業經營指標推進活動, ③ 構造政策指導員促進活動의 3가지가 追加될 것이지만 問題는 이 活動計劃의 作成과 實踐에 있다. 各種事業도 원칙적으로는 이 過程을 거쳐 實施하게 되어있다.

### 나. 推進會議의 體制와 構造政策推進運動의 展開

#### (1) 全國構造政策推進會議

全國構造政策推進會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表 I-5>의 各機關 團體이다. <表 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行政, 地方自治團體, 農業

<表 I-5> 全國 構造政策推進會議 構成員

農林水産省, 全國知事會, 全國市長會, 全國町村會, 全國農業會議所,  
全國農業協同組合中央會, 全國農業協同組合連合會, 全國農地保有合理  
化協會, 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全國土地改良事業團體連合會, 全國農  
業構造改善協會, 農林漁業金融公庫, 農林中央金庫, 農業者年金基金

(14 機關·團體)

團體等 폭넓게 構成되어 있다. 이 會議의 內容은 ①構造政策推進方案의 調査檢討, ② 構造政策推進을 위한 啓蒙·普及, ③ 優秀事例의 調査表彰 등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의 中心은 ②의 構造政策의 啓蒙·普及에 두고 있다. 포스타·리후렛·案内書 등의 作成配布에서부터 심포지움, 全國大會의 開催에 이르기까지 多彩로운 活動을 하고 있다. 또 每年度 運動의 進行方法에 대한 方針 등을 내세워 各都道府縣 推進會議에 提示함은 물론 블럭會議 등을 통하여 各種指導에 힘쓰고 있다.

## (2) 都道府縣構造政策推進會議

都道府縣推進會議를 構成하는 것도 全國推進會議와 같이 行政, 地方自治團體, 農業團體이다. 그러나 機關·團體數는 적으며 이의 活動內容은 ① 構造政策推進指針의 作成, ② 構造政策推進을 위한 各種施策의 啓蒙·普及, ③ 土地關係情報 등의 提供, ④ 農業者인 地域指導者에 대한 研修活動, ⑤ 農地無斷轉用の 防止, 農用地確保·效率的 利用 및 轉用事業者에 대한 相談活動 등 5種類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運動을 全國 水準까지 普及沈投 시킨다는 것이 이 都道府縣推進會議의 存在理由이다.

<表 I - 6 >

都道府縣構造政策推進會議 構成員

都道府縣, 縣市町會, 縣町村會, 縣農業會議, 縣農業協同組合中央會, 縣公社, 縣土地改良事業團體連合會, 農林漁業金融公庫支店 等
---

## (3) 市町村構造政策推進會議

從來의 地域農業整備推進協議會를 改造하여 今年度부터 새로이 設置된 것이 市町村構造政策推進會議이다. 全國 및 都道府縣段階의 推進會議와 같이 事務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역시 “運動의 推進母體”로서의 定着은 全國段階, 都道府縣段階와 다름이 없다. 이 會議의 活動內容은 ① 中核農家 등의 組織化, ② 土地利用型農業經營指標의

作成, ③ 構造政策指導員活動의 支援, ④ 市町村活動計劃의 作成, ⑤ 活動計劃에 根據한 啓蒙普及・推進指導 등이다.

構造政策推進運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市町村段階 및 集落段階 등 農村 現場에서의 推進이다. 地域의 土地利用型農業의 構造改善을 進行시키는데는 農業者의 理解는 물론, 市町村 및 集落段階의 一體的인 運動이 열쇠를 갖는다. 이제까지 市町村의 地域農業整備推進協議會 및 地域農業集團 등이 推進하여 왔지만 推進會議의 運動을 계기로 다시 한번 構造政策推進의 觀點부터 태세를 強化하여, 地域 全體의 積極的인 運動을 展開하여 實踐을 圖謀하는 것이 構造政策推進運動 全體의 成敗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I - 7 >

市町村構造政策推進會議 構成員

<p>市町村, 地域農業集團 등의 代表, 農地流動化推進員, 農業委員會, 都道府縣事務所 등의 關係機關, 農業協同組合, 地方改良區 등의 關係農業團體, 學識經驗者, 構造政策指導員</p>
---

다. 構造政策을 위한 活動計劃의 作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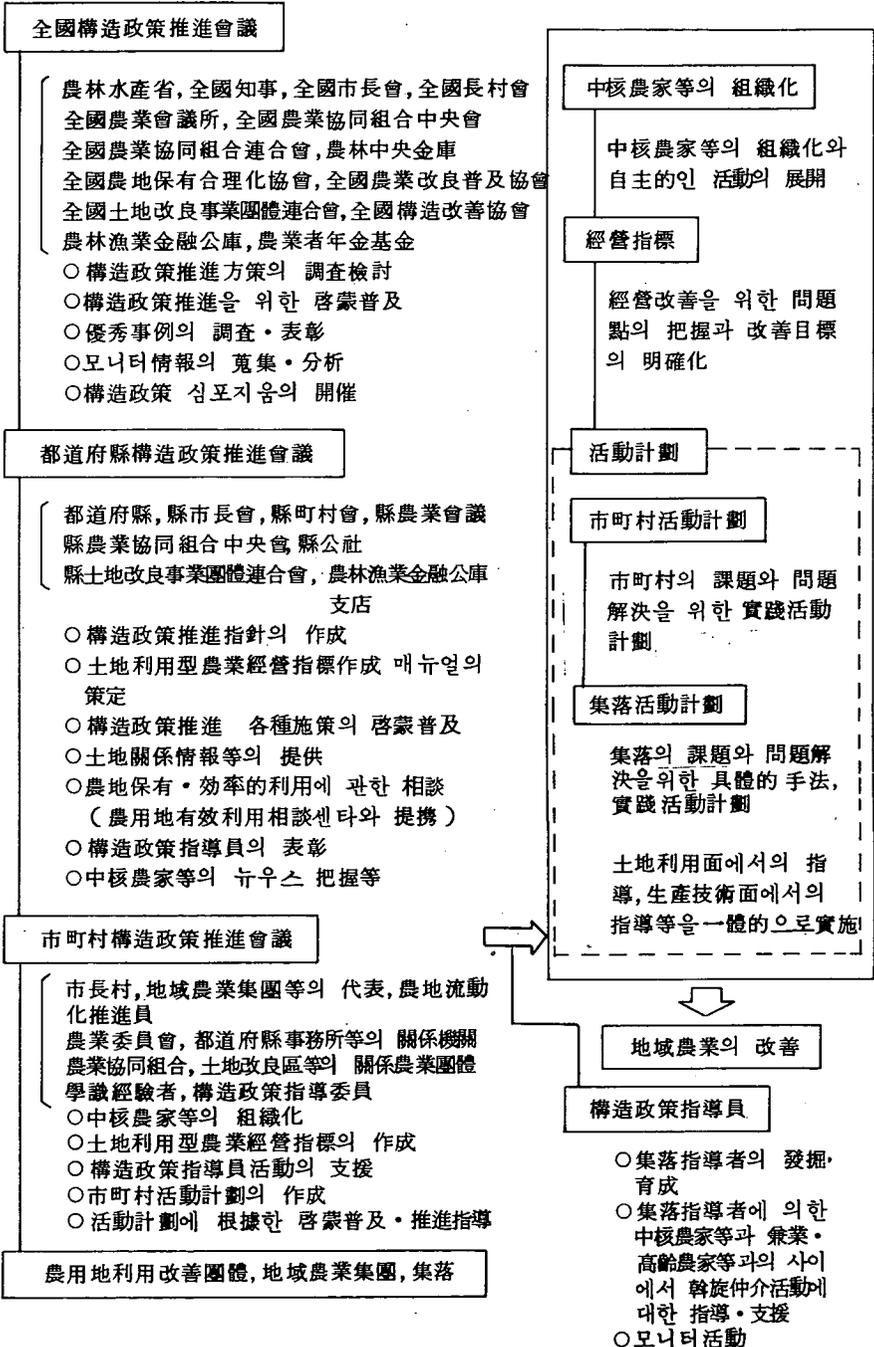
(1) 「活動計劃」의 意義

農業의 構造改善을 進行하는 運動으로서 중요한 것은 各各 地域 農業의 實情에 맞는 具體的인 目標와 計劃을 갖고 進行하는 것이다. 즉 農業을 질머지고 나갈 農業專擔者를 어떻게 育成할 것인가, 農業經營의 規模擴大를 위하여 어떻게 農地의 流通化를 進行할 것인가, 農作業의 效率化 및 地力의 增進, 農用地의 效率的 利用, 基盤整備, 經營改善을 어떻게 推進할 것인가 하는 등에 대해 具體的인 目標와 地域別로 重點的으로 推進하는 方法을 明確하게 하여 運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運動의 관견을 갖고 있는 것이 活動計劃이다. 活動計劃이

〈圖 I - 7〉

構造政策推進會議 體系圖



란 都道府縣構造政策推進會議가 작성한 推進指針에 근거하여 市町村段階에서 稻作을 위시하여 土地利用型農業의 構造改善을 軸으로 하는 農業·農村의 振興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 實踐內容을 명시한 「行動計劃」을 말한다.

活動計劃에는 다음의 事項이 명시되어 있다.

- ① 行動目標(무슨 目的으로)
- ② 行動主體(누가)
- ③ 行動時期(언제)
- ④ 行動方法(무엇을 할 것인가)
- ⑤ 評價와 다음의 課題(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따라서 여기에는 비전과 實行可能性이 조화된 實踐的인 것으로 計劃할 必要가 있다.

中長期綜合計劃이 아니고 1年에서부터 2~3年 앞이라고 하는 가까운 距離에 焦點을 두고 問題解決의 對處方針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2) 活動計劃의 作成主體

活動計劃을 작성하는 주체는 계획의 실행주체 자신이 되어야 하며 市町村段階와 集落段階로 구분된다.

市町村의 경우는 市町村, 農業委員會, 農業協同組合, 土地改良區, 農業共濟組合 등이, 그리고 集落行政區, 農事實行組合, 地域農業集團·地域營農集團·農用地利用改善團體 등이 作成主體가 된다.

그러나 市町村의 活動計劃을 종합하는 데는 農業者 등의 목표와 市町村全體의 목표와의 사이를 相互調整하고, 集落 등의 代表者 및 지도자 등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集落 등의 活動計劃도 市町村, 農委, 農協, 普及所 등이 협력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計劃作成의 手順과 手法

活動計劃作成의 手順과 手法은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가) 地域農業의 現狀把握

市町村, 集落 등 對象地域 단위의 農用地, 農業專擔者, 經營 등의 실태를 把握한다. 실태 파악의 방법은 설문조사 實施, 農用地利用現況圖의 作成 등에 의한다.

#### (나) 分析 및 診斷

(가)항 실태를 분석, 診斷하여 생산성이 높은 農業構造를 확립하는데 있어서의 問題點을 導出한다. 이를 위해 說問調査, 現況圖 分析, 關係者들의 討議 등을 한다.

#### (다) 改善課題의 整理

問題點마다 해결할 課題를 정리하여 우선 순위를 붙인 改善課題案을 작성한다. 그 方法은 관계자들의 討議 등에 의한 것이다.

#### (라) 活動課題의 設定

改善課題案에 관계자의 意見 등을 反映하여 1年間(경우에 따라서는 2~3年間)의 重點課題로 집약한다. 이에 의하여 市町村 構造政策推進會議 및 集落座談會를 開催한다.

#### (마) 課題解決의 구체적 方法

관계기관·단체, 地域農業組織, 地域 指導者 등이 개선과제를 어떻게 分擔하여 실행하는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先進地調査, 先驅的 事例의 蒐集, 關係者의 討議를 한다.

#### (바) 活動의 重點實施時期

月別 行動計劃 등에 의하여 重點推進時期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實行 責任者 등에 의한 上담이 필요하다.

#### (사) 活動計劃의 作成

以上の 順序에 따라 活動計劃을 작성하고 地域農業整備推進協議會를 開催한다.

以上이 計劃作成의 順序와 方法이지만 이때 地域農業의 未來像을 대담하게 그려 現實과의 차이를 찾고, 거기서부터 地域課題를 찾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다.

또한 目標實現을 위하여 活動目標을 運動標語로 하여 표현하는 것도 效果的인 方法이다.

#### (4) 活動計劃의 推進方向

活動計劃을 具體的으로 추진하는데는 우선 推進體制를 분명히 해야 한다.

市町村段階의 活動은 構造政策推進會議를 核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活動課題마다 關係機關의 擔當者에 의한 協議調整을 한다든지, 指導班을 편성하여 推進을 한다.

集落段階에서는 地域 指導者 및 農用地利用改善團體・地域農業集團・地域營農集團 등이 核이 되어, 運動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集落組織 및 지도자를 많이 育成하는 것과 동시에, 自主的인 活動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市町村의 關係機關・團體의 역할도 중요하다. 活動計劃은 지역농업의 構造를 再編成하는 것이지만, 각자의 立場에서 相互・提携를 도모하여 一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活動計劃을 推進하는 擔當者全員の 추진하고자 하는 意慾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점을 들 수 있다. ① 活動計劃에 根據하여 構造改善을 진행하는 것이 地域農業의 發展과 結合되는 것을 認識하게 한다. ② 計劃作成의 段階에서부터 擔當者에게 적극적으로 參加하기를 바란다. ③ 協議會에서 충분히 論議調整하고 各機關 團體의 目標 등과 조화를 도모한다. ④ 活動目標의 설정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여러가지 方法을 생각한다. ⑤ 모든 機會와 手段으로 活動計劃을 PR 한다.

어떻든간에 이미 全國各地에서 구체적으로 推進하고 있는 構造政策推

進의 運動實例가 많이 있다. 이러한 情報과 資料 등도 충분히 參考하여 地域農家의 意向을 把握하여 未來像을 그리며, 現狀의 認識을 깊이 있게 한 다음에 到達目標을 정하여 自己自身の 市町村과 集落의 課題를 해결하여야 한다.

#### 라. 中核農家 등 組織育成 事業

農業經營에 意慾으로 관계하려는 農業者 및 生産組織 등 農業의 中核的 專擔者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자주적인 組織을 만들어 상호연구나 情報交換을 하여 經營改善 및 農業振興 등을 進行하는 것을 支援하는 事業이다.

將來에도 地域農業을 責任질 意慾있는 農業者를 地域全體의 合議에 따라 明確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市町村構造政策推進會議에서는 中核農家 등이 組織化를 위하여 都道府縣推進會議가 행하는 의견조사를 活用하여 組織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農業者의 基準 및 加入 후보자의 名簿 등을 작성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農業者間의 合議가 중요하므로, 地域農業集團 등의 集落組織 또는 市町村 構造政策推進會議가 추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組織化 등을 進行할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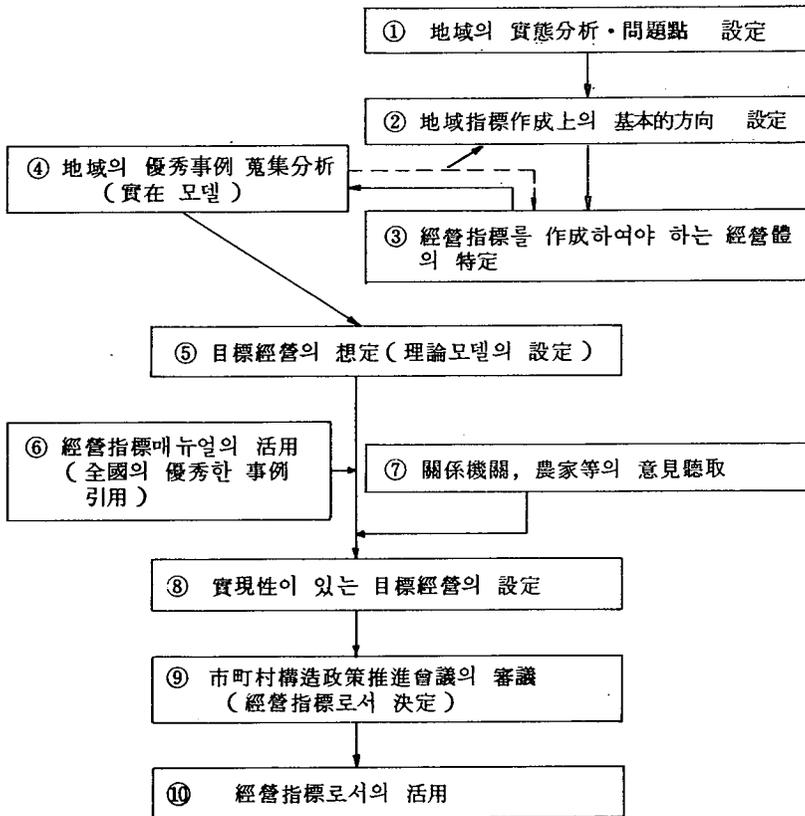
#### 마. 土地利用型 農業經營指標 推進事業

이 事業은 地域의 實情에 따라 土地利用型 農業의 生産性向上을 圖謀하기 위해 실현 可能的한 經營指標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經營指標는 말하자면 地域 農業者의 經營目標가 되는 것으로서 經營形態別로 經營規模擴大的 手段, 機械, 施設裝備, 栽培體系, 生産費, 收益性 등에 대하여 3~5年 앞을 내다본 實現可能的한 目標로 만들어, 活動計劃에 의하여 單年度마다 具體的인 實踐計劃을 策定·實踐하면서 指標의 달성을 목표로 하게 된다. 作成順序는 <圖 I-8>과 같다.

〈圖 I - 8〉

## 經營指標 作成節次例



더욱이 都道府縣構造政策推進會議에서는 市町村推進會議가 이 「經營指標」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案内書를 작성하여 揭示하도록 되어 있다.

#### 바. 構造政策指導員活動 促進事業

中核農家 및 生産組織을 核으로 한 生産性이 높은 農業經營을 實現하기 위하여서는 農家 및 관계자가 構造政策에 대한 이해를 깊이해야 하는 동시에 地域의 合意形成을 충분히 할 必要가 있다.

이 경우 地域에서는 指導者가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뛰

어난 市町村長으로부터 委囑된 構造政策指導員은 市町村構造政策推進會議와 提携를 하면서 이러한 集落 指導者들의 活動을 支援한다든지, 運動적인 推進을 促進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都道府縣推進會議에서는 市町村推進會議가 추천하는 指導員候補者(委囑豫定者)를 대상으로 講習會(이것은 都道府縣主催)를 開催하는 등 優秀指導員을 표창하기도 하였다.

## 7. 農地流動化對策의 概要와 各施策의 要點

### 가.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의 概要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은 農用地利用增進法(昭和55年制定)에 根據를 둔 것이며, 地域 農業者의 合議를 根據로 市町村이 農用地 임차의 促進등을 內容으로 하는 計劃을 세워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地域農業의 生産體系 強化 등을 圖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事業을 實施하는 경우 農地法의 適用을 除外하는 등의 特例措置가 講究되고 있다.

本事業은 다음 3가지 事業으로 成립되어 있다.

#### (1) 利用權設定 등 促進事業

제 1은 利用權設定等 促進事業으로서 제 1호 事業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目標은 農地의 效率의 利用과 經營規模의 擴大에 두고 있으며, 農地利用增進事業의 中心的인 事業으로 되어있다.

우선 市町村이 實施方針을 決定하고 그것을 根據로 하여 市町村(農業委員會)이 農地 등의 權利 設定 移轉에 대하여 關係權利者 全員의 合議를 거쳐 「農地利用增進對策」을 作成한다. 農業委員會가 이 計劃을 決定하고 이를 市町村이 公告하면 計劃에 기재되어 있는 農地 등의 權利의 設定 移轉은 效力을 발생한다. 이 事業에 根據한 임차권의 설정을 利用權設定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이 利用權設定이 계속되고 있는 農地는 全國에서 229,000 ha(昭和63年 6月末 現在)이며, 이는 全農地面積의 43%에 달하고 있다.

農地利用增進事業은 이러한 임차권설정이외에 資金·稅制面 등에서 優待를 하는 所有權 移轉도 행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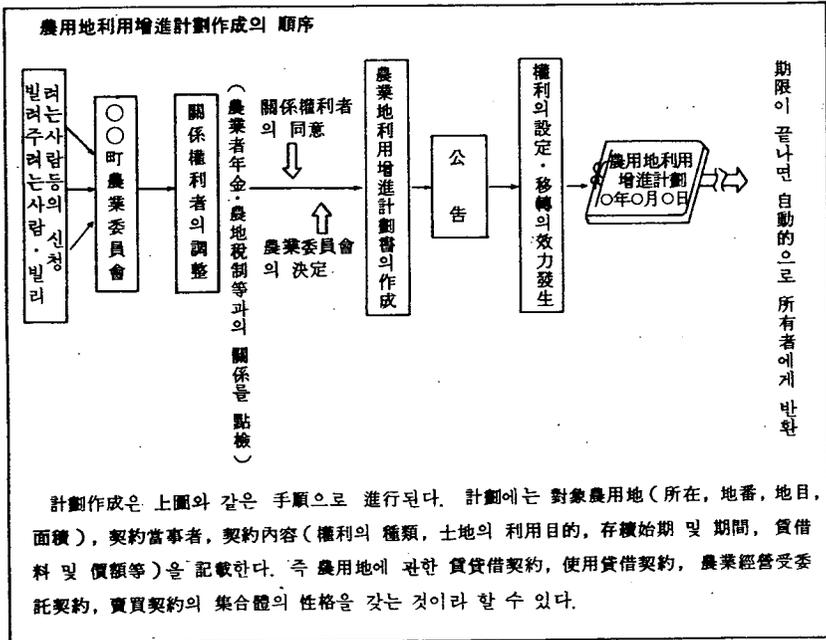
#### (가) 對象이 되는 土地 및 權利

對象地域은 原則적으로 市街化區域을 除外한 市町村 全域이다. 또한 對

象이 되는 土地는 農用地(農地 및 採草放牧地), 混牧林地, 農業用施設用地, 開發한 農用地·農業用施設用地로 하는 것이 適當한 土地이다.

對象으로 하는 權利는 賃借權, 使用賃借에 의한 權利, 經營受委託과 關係되는 使用收益權, 所有權 등이다.

<圖 I - 9> 農用地利用增進計劃



(나) 權利를 받는자의 要件

耕作 또는 養畜을 하는 個人 즉 農業者 이외에 農業生産法人, 受託農業經營을 행하는 農協, 農地保有合理化法人, 農業者年金基金 共同利用施設設置事業을 행하는 農協, 畜産公社 등이 權利의 引受者가 된다.

단, 權利의 設定·移轉後에는 다음의 要件을 전부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農業生産法人의 경우는 ①과 ③).

- ① 農用地的 모든것에 대하여 耕作 또는 養畜事業을 할것.
- ② 農作業에 항시 從事할것.
- ③ 權利를 設定한 土地 전부에 대하여 效率的으로 利用할것.

(나) 事業實施上の 留意點

① 貸借 등이 되는 것은 당연히 農業을 위하여 利用되는 土地에 한정 한다.

② 開發한 農用地, 農業用施設用地로 하는 土地를 取得할 때에는 開發計劃書를 提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計劃은 동시에 農地法の 開發行爲의 許可基準을 모두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③ 소작료는 農業委員會가 정하는 표준소작료를 基準으로하여 決定한다.

④ 農用地를 빌리거나 買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前項의 權利를 받는쪽의 要件을 구비한 中核적 農業專擔者이며 이러한 個人 또는 農業生産法人은 農地銀行(農業委員會)에 登錄하여 두면 좋을 것이다.

⑤ 農地流動化助成金は 農地銀行에 登錄되어 있는 農業專擔農家 등에 農用地를 賃貸하려는 경우에 交付한다.

⑥ 賣買에 의하여 農用地 등을 取得하는 것이 可能한 사람들은 사전에 農業委員會의 「斡旋讓受等候補者名簿」에 登錄하여 두면 편리하다.

(라) 事業實施上の 特典

① 農地를 貸借, 賣買할 경우도 農地法の 許可手續은 필요없다.

② 약속기한이 되면 離作料 없이 반환한다.

③ 農地法の 소작지소유제한 規定에 關係없이 農地를 빌릴수 있다.

④ 農用地利用增進計劃에서 정한 利用目的에 使用할 때에는 農地法の 轉用許可 없이 農業用施設用地로 轉用된다.

⑤ 農用地 區域內的 土地를 農用地 또는 農業用施設用地로 開發할때에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의 利用目的에 提供할 경우는 農振法の 許可가 필요없다.

## (마) 事業實施上의 特典

農用地利用增進事業에 의하여 農用地 區域內의 農用地를 賣買하거나 貸借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제·자금면에서의 特典을 받게 된다.(이러한 特典은 農業委員會의 斡旋, 農地保有合理化 促進등의 각 事業에 의하여 農用地의 賣買, 貸借을 행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賣買의 경우

## ① 讓渡所得稅에서 特別 共濟

통상적인 경우 100 萬圓이 共濟되지만 500 萬圓이 共濟된다.

## ② 登錄免許稅率의 輕減

통상적인 경우 1000 분의 50 이지만 1000 분의 20 으로 輕減된다(但, 農振地域內의 農地가 對象이다).

## ③ 不動產取得稅 輕減

取得한 土地價格의 1/3 에 해당되는 額數를 共濟한다(農進地域內에서 農用地 區域外에 있는 경우는 1/4 을 共濟).

## ④ 農地등 取得資金의 貸付規模擴大

一般의 경우 400 萬圓(個人)인데 대하여, 1,700 萬圓(農業委員會가 斡旋하는 경우는 1,200 萬圓)까지 빌릴수 있다.

더욱이 昭和 63 年度부터는 農業專擔者가 取得하는 경우 최고 5,000 萬圓(個人)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貸借의 경우

## ① 農地流動化造成金 支援

일정의 要件을 구비할 경우 農地流動化造成金이 貸貸人에게 支拂된다(대부기간에 따라 10 ha當 8,000~30,000 圓 정도임).

### ② 小作料의 一括 事前支拂

農地保有合理化法人( 農地公社 )에 貸付하였을 경우는 5 ~ 10 年  
 分の 小作料를 一括하여 事前支給을 받을 수 있다.

### ③ 小作料의 融資

農地를 賃借함에 있어 小作料를 一括하여 先拂( 期間 5 ~ 10 年 )할 경  
 우 經營規模擴大資金을 借用할 수 있다.

### 其 他

經營者는 農用地의 全部( 단 10 a 以內의, 自留地는 남길 수 있다 )를  
 農業者年金 加入者에게 貸付하면 離農給付金( 62 萬円 )이 交付된다.

## (2) 農用地利用改善事業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의 第2의 中心이 되는 내용은 農用地利用改善事  
 業이다.

個人的으로 相對方에 의한 貸借 및 賣買에만 依存하게 되면 零細하  
 게 分散되어 있는 日本의 農地를 規模가 크고 또 집단적인 利用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集落이 갖고 있는 合意形成  
 과 같은 기능을 活用하여 자신의 土地를 管理하고 效率的 利用을 圖謀  
 하여 가는것이 이 事業이다. 集落의 合意하에 作付地의 集團化, 農作  
 業의 效率的인 實施, 農用地. 利用關係의 개선 등을 綜合的으로 실시한  
 다.

### (가) 農用地利用 改善團體

農用地利用改善事業의 實施主體가 되는 것이 農用地利用改善團體이  
 다. 이것은 事業을 실시하려고 하는 地區內의 農用地에 대하여 權利  
 ( 所有權, 地上權, 永小作權, 質權, 賃借權, 使用賃借에 의한 權利 또  
 는 其他의 使用 및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 )를 가진者의 2/3 以上  
 이 構成員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주적으로 組織된 農業者 團體이다.  
 農用地利用改善團體는 新規로 組織하지 않아도 從來부터의 組織( 例

를 들면 地區의 農用地利用組合 등이 다음에서 말하는 「農用地利用規定」을 整備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昭和 58年度부터 認定되고 있는 地域農業集團(昭和 60年度 부터는 「地域農業整備促進事業」중에서 市町村이 지도를 맡고 있다)은 현재 전국에 약 3만 개 集團이 있다. 단, 이것은 漸次的으로 農用地利用改善團體로 移行하도록 되어 있다.

#### (나) 農用地利用規定

농용지이용규정은 마을의 土地利用計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事項을 決定하도록 되어 있다.

- ① 農用地利用改善事業의 實施 區域
- ② 作付地の 集團化, 其他 農作物의 栽培와 改善에 관한 事項
- ③ 農作業의 共同化, 其他 農作業의 效率化에 관한 事項
- ④ ②와③의 事項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利用權 設定 등의 促進, 其他 農用地의 利用改善에 관한 事項
- ⑤ 其他 必要한 事項

#### (다) 事業의 특전과 利得

① 事業을 進行하고 있는 中에 農用地의 貸借 등이 決定되면 市町村(農業委員會)에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의 作成을 申請할 수 있다.

② 農用地利用改善團體의 構成員은 農用地를 전부 빌려 주어도 農協의 正組合員 資格을 잃지 않는다.

③ 農用地利用改善團體가 農事組合法人(1號法人)일 경우는 土地改良事業의 實施 主體가 된다.

④ 新農業構造改善事業 등의 事業이 優先的으로 活用된다.

⑤ 地域農業總合整備資金제도도 活用된다.

#### (3) 農作業受委託促進事業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의 3번째 支柱가 農作業受委託促進事業이다.

農用地的 權利移動 즉 農地流動化的 雰囲気가 形成되지 않은 곳에서는 農協 등이 農業機械銀行 등을 設置하여 農作業을 斡旋하거나 生産組織에 委託하는 方法에 의하여 農作業을 受委託하는 것이 效果的이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 事業이다.

集落內의 勞動力과 機械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마을 全體가 議論하는 가운데 農作業의 受委託이 實施되며 더욱이 農業專擔者 農家를 農作業의 集中을 통하여 利用權을 設定하는 것으로 推進하는 것이 기대된다.

이 事業에서 「農業機械作業廣域調整促進事業(機械銀行 등)」 및 技術者 養成을 위한 「農業機械化對策推進事業(市町村農作業安全推進事業)」등이 活用된다.

#### 나. 土地利用型農業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 및 農地流動化助成金交付事業의 概要와 進行方法

##### (1) 序言

標題의 2個 事業을 昨年度까지 「農用地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으로 함께 推進하여 왔지만 今年度 부터는 農地流動化助成金交付事業이 獨立된 하나의 事業으로 되어, 양자는 兩立된 같은 組의 事業으로서 實施되게 되었다.

##### (2) 事業의 目的과 構造

###### (가) 事業의 目的

最近 農村에서는 兼業化的 進行과 農業專擔者의 高齡化에 의하여 經營을 축소하거나 資產保有的 생각 때문에 農地의 荒廢化 및 不作付地가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面積은 全國的으로 約 30 ha에 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農地의 所有者도 결코 좋아서 農地를 荒廢化시키고 있

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農地를 빌려주어 效率的인 利用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빌려주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農地改革 알레르기과 信用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여 골치를 앓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한편으로 금후에 農業으로 自立하려는 사람의 關心은 이제는 農地를 사는것 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貸借에 의하여 經營規模를 擴大하는 方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安定된 耕作의 保證과 優良農地의 確保이다. 그러나 이 일을 個人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土地利用型 農業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 및 農地流動化助成金交付事業은 이러한 農地를 내는사람, 받는사람의 意中을 알아 農業委員 등이 農地流動化推進員이 되어 兩者와의 相談·仲介를 하여 내는 쪽에게는 流動化助成金を 交付하므로 인하여 農地의 效率的 利用을 圖謀하고 더욱이 農地流動化의 企劃立案, 情報의 일원적 管理, 方向提示 등을 일체적으로 實施하는 農地銀行活動을 綜合적으로 행한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利用權등의 面的인 集積을 圖謀하며,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育成·確保 및 農用地의 效率的 利用을 實現한다.

#### (나) 事業의 構造

첫째로 土地利用型 農業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인데 이 事業은 個人地주로 부터 成立되고 있다. 다음에서 그 概念을 順序에 따라 설명하기로 한다.

##### ① 農地流動化促進活動事業

農地流動化의 PR과 推進을 하는 事業이다. 農業委員을 中心으로 委囑되는 農地流動化推進員이 仲介하여 마을 및 集落에서 相談을 進行하여 農用地 貸借 등을 推進하여 利用權의 設定으로 까지 가지고 간다.

##### ② 農地銀行活動 事業

農地流動化의 企劃·推進·方向提示·管理를 一貫하여 行할 때 「流

動化의 콘트롤 타워」가 되는 事業이다. 昭和 62年度 부터 이제까지 地域農業整備促進事業中에 자리잡고 있는 「農用地利用調整會議」와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 農用地利用增進事業에 의한 所有權 移轉을 할때의 「囑託登記事務」등 3個가 있는데, 昭和 63年度 부터는 새로이 農作業受委託을 臺帳에 登錄하는 機能이 農地銀行活動事業中에 追加되어, 보다 總合的인 活動을 行하게 되었다. 農地流動化에 관한 情報의 一원적인 집약·整理, 이에 根據하여 流動化의 規模 擴大를 위한 方向을 잡아 權利關係의 管理 등을 農業委員會가 中心이 되어 行한다.

한편으로 農地流動化助成金事業은 實施 主體가 市町村부터 道府縣의 農地保有合理化法人( 縣農業公社 )으로 移管됨으로써 조성금의 交付를 除外한 事務가 市町村으로의 業務委託에 의하여 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交付節次등에 약간의 變更이 있기는 하지만 農地를 빌려주는 쪽에 “건널목料”의 명목으로 조성금을 交付한다는 基本的인 事業의 構成 內容과 交付要件 등은 變함이 없다.

따라서 農地의 賃貸에는 무엇이든지 조성금을 交付할 수가 없다는 점도 從來와 아무런 變動이 없다. 中核의 農業專擔者( 個人 또는 農業生産法人 )의 育成 確保, 그리고 農用地의 效率的인 利用등과 結付된 貸出은 認定되는 것( 交付基準에 맞는 것 )만 交付된다.

#### (다) 農地流動化推進員의 役割

##### 【農地相談과 流動化 開發 活動】

農地流動化推進員은 市町村長이 農業委員以外에 農協의 營農指導員, 土地改良區域職員 등 地域의 農地事情에 正通한 사람 또는 信望이 두터운 사람을 農業委員會의 意見을 들은 後 選任하여 委囑한다. 推進員은 「農地流動化推進員」「農地相談員」「農地銀行支店(支所)」 등의 名啣 또는 看板을 揭示하고 農業者에 대한 相談活動 등을 통하여 農用地의 내는쪽과 받는쪽을 연결시키고 그 結果를 農業委員會에 報告한다.

이를 위해 集落 등의 相談에 積極的으로 參加하여 地元農業者의 土

<表 I - 8> 農地流動化助成金交付一覽表

交付要件等 貸付期間	新規貸付助成金額 (10a當)	新規貸付要件	更新(再設定)貸付助成 金額(10a當)	更新(再設定) 의 貸付要件
3年以上~ 6年未滿	農地 8,000円	(1) 中核的責任者에게 貸付 (2) 助成金の 交付對象으로 되 어 본 일이 없는 農用地等, 또 한 面的集積(대략 60a 以 上)을 채울 경우	/	/
	採草放牧地·未懇地 1,600円			
	農地期間借地 4,000円			
6年以上~ 10年未滿	農地 20,000円	(1) 中核的責任者에게 貸付 (2) 造成金の 交付對象으로 되 어 본 일이 없는 農用地等	農地 16,000円	(1) 中核的責任者에게 貸付 (2) 面的集積(대략 60a 以上)을 채울 경우
	採草放牧地·未懇地 4,000円		採草放牧地·未懇地 3,200円	
	農地期間借地 8,000円		農地期間借地 8,000円	
10年以上	農地 30,000円	(1) 中核的責任者에게 貸付 (2) 助成金の 交付對象으로 되어 본 일이 없는 農用地等	農地 24,000円	(1) 中核的責任者에게 貸付 (2) 面的集積(대략 60a 以上)을 채울 경우
	採草放牧地·未懇地 6,000円		採草放牧地·未懇地 4,800円	
	農地期間借地 12,000円		農地期間借地 12,000円	

註. 實施市町村의 平均經營耕地面積이 대략 60a 未滿의 市町村에 있어서는 面的集積要件이 대략 40a 以上이라도 對象이 된다.

地 利用에 대하여 意向을 把握하는 同時에 農地相談에도 負擔없이 응하고 더욱 必要에 따라 戶別訪問을 行하는 등의 活動이 必要하다.

#### 【事業活動의 報告】

事業活動의 結果에서 나온 農用地的 貸借 등은 「事業活動實績報告書」 등의 樣式에 따라 農業委員會事務局에 報告한다.

#### 【利用權의 再設定과 促進】

利用權 設定의 新規 開發과 並行하여 期間滿了를 맞이 하는 利用權에 대하여 農地銀行 등에 確認하여 再設定의 促進에 努力한다.

#### 【流動化助成金の 交付 申請 手續】

빌려주는쪽의 農家가 流動化助成金の 交付를 받으려면 每年 12月末 까지 市町村長을 經유하여 縣農業公社 앞으로 交付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이때 農業委員會는 그것이 적격한 農地의 貸借인가 등을 판단하지만 推進員은 그러한 一連의 申請手續에 協力한다.

#### 【地域農業集團活動에의 協力】

農用地的 確保와 效率的 利用·農業專擔者의 育成과 經營의 確立을 各 集落·地域單位로 進行한다. 地域農業集團活動이 每年 활발하여지고 있다. 地域農業整備促進事業은 그러한 地域農業集團의 活動을 促進하도록 되어 있다. 流動化推進員 및 面的利用集積指導員은 集團中에서 農用地的 利用調整 등을 推進할 경우 그 指導力을 잡는데도 積極的으로 協力한다.

#### (라) 農地流動化助成金交付의 구조와 要件

農地流動化助成金交付의 基本的인 要件은 다음 3가지 이다.

- ① 자주적으로 定하여진 基準을 채우는 中核的 農業專擔者 (個人 또는 農業生産法人)에게 貸付
- ② 圃場의 面的集積과 結付되는 것과 같은 形態로서 貸付
- ③ 可能한 限 長期貸付로 誘導

【交付對象이 되는 土地】

조성금의 交付對象이 되는 土地는 市町村의 農業振興地域內에 있는  
①農地, ②採草放牧地, ③混牧林地를 포함한 未墾地이다.

【交付對象이 되는 賃借權設定】

造成金の 交付對象이 되는 賃借權設定은 다음 7가지 方法 가운데 하나이다.

- ① 農用地利用増進法の 利用權設定 등 促進事業
- ② 農業委員會에 의하여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
- ③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小作料를 一括하여 先拂로 받는 경우 除外)
- ④ 草地利用權
- ⑤ 特定利用權
- ⑥ 農協의 農地 信託事業
- ⑦ 其他 裏作의 期間借地를 3年以上 繼續할 경우 및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에서 農地造成을 하기 위한 未墾地를 대부할 경우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要件과 面的集積要件】

보다 質이 좋은 農地流動化를 遂行하기 위한 助成金の 交付에는 農地를 받는쪽과 賃貸하는 土地에 대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2개의 要件을 정하고 있다.

①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要件

流動化助成金の 交付는 農用地를 中核的 農業專擔者에게 대부한 경우에 한한다.

助成金交付事業을 實施하는 縣農業公社는 地域의 實情에 맞추어 市町村마다 交付 要件이 되는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基準을 정한다.

縣農業公社가 中核의 農業專擔者의 基準을 정할 때에는 市町村에 組織되어 있는 土地利用型 農業經營規模擴大促進協議會(以下「促進協議會」라고 한다)에 意見을 묻게 되어 있지만 國家(政府)에서도 基本的인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가이드 라인을 設置하고 있다.

① 農用地利用增進事業에 根據한 實施 方針에 정하여진 利用權 設定등을 받는 사람의 要件에 맞을 것

② 利用權을 받는 쪽의 農業經營에는 한결같이 주로 農業經營에 從事한다고 認定되는 靑長年의 家族從事者가 있어야 할 것

③ 經營主가 權利取得後에 農業經營에 必要한 農作業에 항시 從事할 것

④ 權利取得後의 經營面積(農業生產法人의 경우는 그 經營面積을 常時 從事者인 構成員에 속하는 세대의 數로 나눈 面積)이 縣農業公社가 市町村의 促進協議會의 意見을 들어 地域의 實情에 相應하게 정하는 中核의 農業擔當者의 經營規模 基準 面積을 超過하는 것

⑤ 가까운 장래에 ①~④의 要件을 充足하게 되는 자와 市町村長 또는 農業委員會가 認定한 農業者 또는 農業生產法人

⑥ 其他 地域 農用地 등의 集團化와 效率의 利用을 圖謀하기 위하여 특히 必要하다면 市町村長 또는 農業委員會가 認定한 農業者 또는 農業生產法人

⑦ 農地保有合理化法人(縣農業公社)에 賃借權 設定을 할 경우

【基準面積, 年齡, 農作業 從事の 취급에 대하여】

前項에서 본 바와 같이 農業專擔者가 具備할 要件으로서는 基準 面積以外에 經營內的 勞動力現況과 이들의 從事 狀況에 관한 事項이 있다. 각기 縣農業公社가 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標準(基準)이 된다고 생각되는 方法에 대하여 몇가지 列擧하여 보기로 한다.

㉞ 面積基準

基本的으로는 面積基準을 높게 잡느냐 아니냐로서 이를 간단히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高面積 水準：農業專擔者의 存在 및 位置가 明確하게 되어 있는 地域

低面積 水準：農業專擔者 不在, 過疎地域, 兼業農家を 포함한 農業專擔者 農家の 經營規模擴大와 基盤整理를 圖謀하는 地域

이의 選擇을 地域實情에 따라서 決定할 必要가 있지만 原則的으로는 作目 및 經營類型別로 地域의 平均規模 以上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農業委員會가 參考意見을 말할 때에는 종래부터 實施하고 있는 農地移動適正化幹旋事業의 「幹旋基準」등을 중시할 必要가 있다.

#### ㊤ 年 齡

農業委員會는 종래부터 實施하고 있는 農地移動適正化幹旋事業의 「幹旋基準」등을 중시할 必要가 있다.

#### ㊤ 農作業에의 常時從事

「항시 從事한다」는 것을 認定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점에 대한 것이다. 權利取得後 年間 150日 以上 農作業에 從事할 경우에는 「항시 從事한다」라고 認定을 받아도 될 것이다. 또한 150日 以下일 경우에는 그 農業經營에 必要한 農作業從事日數에 從事하고 있다고 認定될 때는 「항시 從事한다」라고 認定하여도 될 것이다.

####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登錄】

이제까지 記述한 要件을 充足하는 中核的 農業專擔者라 할 수 있는 農業者 및 農業生産法人은 農業委員會의 農地銀行에 登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縣農業公社와도 잘 연결을 취하여 두어야 한다. 農地銀行에서 登錄臺帳을 作成하여 登錄하지만 農地基本臺帳, 農地銀行管理와의 연대활용에 留意하여 推進하는 것이 必要하다.

### 【 가까운 장래에 農業專擔者 要件을 充足하는 農家 】

政府가 정한 中核的 農業專擔者 要件의 가이드 라인⑤,⑥의 農家란 具體的으로는 다음 4 가지 점을 考慮하여 정의한다.

- ① 經營規模擴大의 意向이 있다는 事實의 認定
- ② 勞動力(後繼者 등)이 確實히 確保되어 있을 것
- ③ 基準面積과 現在의 經營面積과의 隔差가 적을 것
- ④ 農業基盤整備事業의 實施 豫定地區 인지의 與否

### ② 面的集積 要件

#### 【 面的集積 要件의 目標 】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經營規模 擴大와 生産性이 높은 農業經營을 育成하기 위하여는 農用地의 集團化가 必要하다. 그리하여 農用地를 流動化할 때에 되도록이면 面的으로 集積하여 갈 수가 있도록 面的集積要件을 만들었다.

#### 【 面的集積 要件이란 】

政府에서 정하고 있는 面的集積要件은 다음 3 가지이다.

- ① 助成金の 交付申請과 關係되는 農用地 등이 對象農地를 빌려 받는 사람(個人에 있어서는 동일 세대원을 包含)이 종전부터 使用受益權을 가지고 있는 農用地등과 땅이 隣接하여 붙어 있는 農地로서 60 a 이상일 것
- ② 對象 農用地등의 面積規模가 대략 60 a 이상일 것
- ③ 農地保有合理化法人(縣農業公社)이 행하는 集合의利用權等調整事業에 의하여 賃借權 設定이 된 것

따라서 基本的으로는 다음 要件을 充足할 수 있도록 利用權을 設定할 때에 留意하여야 한다. 즉 賃借權의 設定을 받게 되므로 「中核的 農

業專擔者が耕作하는圃場가 대략 60a 以上の圃地」가 되어야 한다.

대략 60a 以上の圃地가 되기 위하여서는 <圖 I -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圖 I - 10> 面的集積要件例

A·B·C = 中核的 責任者의 賃借權設定地  
 D = 自作地 또는 使用收益權 設定에 의한 從來의 耕作地

圖 1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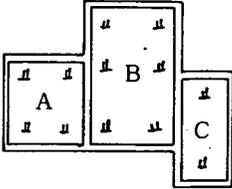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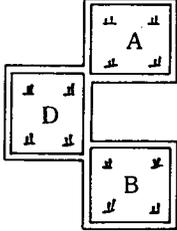


圖 3



<p><math>A \geq 60a</math> ( 1筆 )</p> <p>賃借權設定의 農用地等 1筆의 面積이 대략 60a 以上</p>	<p><math>A + B + C \geq 60a</math></p> <p>(賃借人은 複數라도 可)</p> <p>賃借權設定의 農用地等이 서로 붙어 있어 그 合計 面積이 대략 60a 以上</p>	<p><math>A + B + D \geq 60a</math></p> <p>( 同 左 )</p> <p>中核的 責任者가 從來 부터 耕作하고 있는 農 用地等 (自作地라도 使用 收益하고 있는 農用地와 붙어 있고 그 合計面積 이 대략 60a 以上</p>
--	---	---

【 面的集積要件의 留意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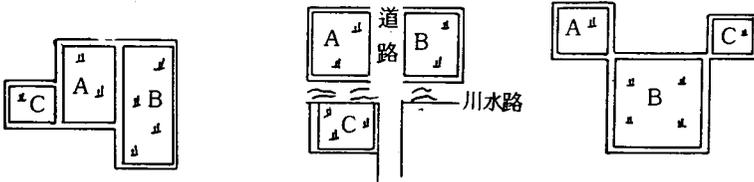
① 땅이 붙어 있는 要件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은 요건중 「땅이 붙어있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시하면 <圖 I -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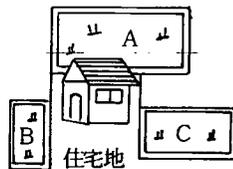
② 「대략 60a」의 面的集積要件은 原則的으로는 60a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市町村의 平均經營面積 規模가 「대략 60a 未滿」인 市町村에 있어서는 대략 40a 以上이면 可能하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략 60a」 또는 「대략 40a」라고 말하는 것은 基盤整備가 되어있

<圖 I - 11 >

붙어있는 要件



- (1) 2個 以上の 土地가 畦畔이 接續하고 있는 경우
- (2) 2個 以上の 土地가 小幅의 農道 또는 水路가 接續되어 있는 경우
- (3) 2個 以上の 土地가 각각 한 귀퉁이가 接續하여 作業을 繼續하는데 크게 支障이 없는 경우



- (4) 段狀을 형성하고 있는 2個 以上 土地의 高低의 差가 作業의 繼續에 支障이 없는 경우
- (5) 2個 以上の 土地가 耕作者の 宅地에 接續 되어 있는 경우

지 않은 地域의 條件을 考慮한 것이다. 生産基盤이 좋지 않은 地域에서 48a 以上, 또는 32a 以上이라도 이 要件을 充足하는 것으로 된다.

더욱 이 경우는 市町村의 平均經營面積은 農林業센서스, 都道府縣의 統計數值 등 公으로 認定받은 最近의 數値를 使用하도록 되어 있다.

③ 再設定時에 面的으로 綜合하여 再交付面的集積要件은 新規로 利用權을 設定할 때에 充足되어 있으면 問題가 없다. 從來부터 僻僻히 홀어져 設定되어 온 利用權에 대하여 再設定을 할 때는 面的集積要件을 活用하여 圃地化하여 가는 것이 必要하다. 그러기 위하여 再設定時에는 땅이 붙어 있는 곳으로서 대략 60a 以上(40a 以上)이 되도록 面積으로 모아, 6年 以上の 長期間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다시 한번 助成金이 交付된다.

### (3) 流動化助成金이 交付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提示하는 경우는 流動化 助成金이 交付되지 않으므로 注意가 필요하다.

① 同一 세대원만으로 組織되는 農業生産法人의 構成員 또는 世代員이 그에 속하는 法人에 賃借權을 設定할 경우

② 農業生産法人의 항시종사자 또는 理事, 業務執行權을 가진 社員 또는 任員이 그가 속하는 法人에 賃借權을 設定할 경우

③ 同一 세대원이 賃借權을 設定할 경우

④ 5年부터 10年까지의 소작료를 一括 선불(公社事業)하는 對象이 되는 農用地的 賃借權 設定

⑤ 賃借權을 設定한 사람이 農業者年金에서 離農給付金を 받고 있을 때, 또는 받는 것이 確實할 때

⑥ 經營規模擴大資金의 貸付對象 農用地的 賃借權 設定

더욱이 契約期間 도중에 解約하였을 경우는 助成金 全額을 返環해야 한다.

#### (4) 昭和63年度の事業實施에 대하여

昭和63年度부터 農地流動化 助成金 交付事業이 轉換됨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助成金の 交付가 行하여 지도록 經過 措置를 취하고 있다.

① 舊農用地經營規模擴大促進事業을 實施하는 市町村에서 昭和63年1月1일부터 同年 3月31日까지의 사이에 農用地 등에 대하여 舊實施基準 第1에 適合한 賃借權의 設定을 하였을 경우로서 昭和63年12月31일까지 助成金の 交付 申請을 하였을 경우

② 舊實施基準 第3의 1에 의하여 都道府縣知事の 承認을 받은 市町村에서 昭和62年1月1일부터 同年 12月31日까지의 사이에 舊實施基準 第1에 適合한 賃借權의 設定을 하였을 경우로서 昭和63年12月31일까지 助成金の 交付 申請을 하였을 경우

③ 實施地域에 있어서 昭和63年4月1일부터 昭和63年7月18일까지 사이에 實施基準 第1에 適合한 賃借權의 設定을 하였을 경우

#### 다.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의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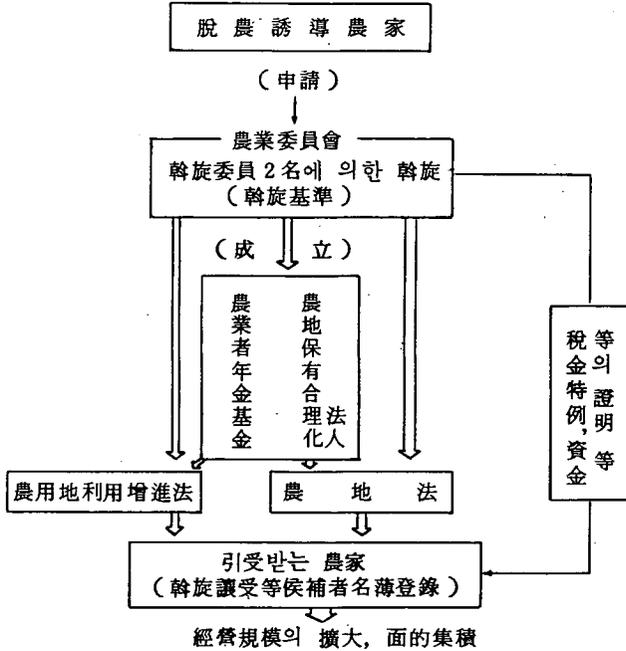
##### (1) 目 標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은 昭和44年の 農振法 制定과 같이 發足한 農業委員會 固有의 農地有動化 施策이며 農業委員會가 農用地 등을 「 팔고 싶다 」 「 사고 싶다 」 「 빌려주고 싶다 」 「 빌리고 싶다 」 「 교환하고 싶다 」 고 하는 農家사이에 서서 이를 斡旋하고 또한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등과 연결되도록 農用地 등의 移動方向을 提示하는 것이다 (〈圖I-12〉參照). 이 事業은 착실한 상대방을 責任지고 찾아주고, 그리고 金融稅制面에서 크게 우대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完全히 農家사이에 정착한 構造政策的의 하나로서 금후에도 더욱 중요한 流動化 手法으로 되어 있다.

특히 今年度부터는 「 農業專擔者에 의한 農地取得의 경우는 農地 等

取得資金의 代付額 上限이 農用地利用增進事業 등 다른 施策과 隔差가 없는 5,000 萬円(個人)으로 引上되어 유리하게 되어 있다.

<圖 I - 12 > 農業委員會 斡旋事業의 構造



(2) 對象이 되는 土地・農業者

斡旋事業의 對象이 되는 土地는 農用地 區域內에 있는 農地, 採草放牧地, 農業用 施設用地, 未墾地 이다.

斡旋에 의하여 農用地 등의 權利를 取得하는 農家(農業生産法人 包含)는 今後에도 農業으로서 自立하려고 하는 意慾과 能力을 가진 것으로서 權利 取得後의 經營面積이 地域의 平均 經營面積을 超過하는것 등이 아니면 안된다. 農業委員會에서는 이러한 要件을 「斡旋基準」으로서 定하고 있으며, 이 基準을 充足시켜 주는 農家は 事전에 農業委員會의

「斡旋讓受等候補者名簿」에 登錄하여 둘 必要가 있다.

### (3) 節 次

農地를 빌려주고 싶거나 팔고 싶을 경우 이의 斡旋을 希望하는 農家는 그 뜻을 農業委員會에 申請한다. 農業委員會에서는 「斡旋 委員」을 指名함과 동시에 引受받을 수 있는 쪽의 사람을 먼저 양수후보자명부에서 찾아 選定하고 斡旋에 들어간다. 斡旋이 成立된 것은 所有權 移轉 및 賃借權 設定 등의 手속을 한다.

#### 【農用地 등을 賣買할 때의 優待措置】

##### ① 農地取得資金

###### ○ 貸付 限度額의 特例

- 통상적으로 個人的 경우: 400 萬円 → 1,200 萬円
- 農業專擔者에 의한 取得의 경우: 個人 5,000 萬円

##### ② 所得稅 (農用地區域內에 限함)

###### ○ 양도소득의 特別 公제

- 통상의 경우: 100 萬円 → 500 萬円

##### ③ 登錄免許稅

###### ○ 稅 率

- 通常의 경우:  $\frac{50}{1,000}$  →  $\frac{20}{1,000}$

##### ④ 不動產 取得稅

###### ○ 過稅標準의 特例

- 土地價格의 1/3 公제

## 라.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의 概要

### (1) 目 標

이 事業은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農地의 集團化, 其他 農地保有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農地 및 採草放牧地, 개발하여 農地로 하는 것이 適當한 토지등을 公的機關이 매입 또는 빌려받아, 이러한 土地(개발하여 農地로 하는 것이 適當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후의 農地)를 賣渡, 交換 또는 賃貸하는 것으로서, 公的인 기관이 농지 등의 權利移動에 직접 개입하여 農業構造 改善을 도모할 수 있도록 方向을 정하여 주고 있다.

### (2) 事業의 內容

이 事業을 실시하는 農地保有合理化法人(縣公社, 현재 43道府縣에 설치)은 ① 農地 등을 賣渡, 交換 또는 대부할 경우 상대방의 選定 基準 ② 農地 등의 買入 및 賣渡價格 ③ 借賃 및 賃貸의 決定方法 ④ 農地 등의 일시 대부 및 管理 方法등 事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規程을 정한다.

이 規程에 의하여 農業構造 改善을 도모하는 觀點에서 일정한 요건을 具備한 中核的 農業專擔者 農家, 農業生産法人, 市町村, 農協 등이 土地의 賣渡, 交換 또는 대부의 상대방으로서 아래의 事業을 行하게 한다.

### (3) 農地保有合理化法人이 行하는 賣買, 賃借

#### (가) 農地 등의 買入

農地保有合理化에 제공되는 것에 한하여 行하여진다. 그 買入價格은 地域의 通常적인 去來價格을 基準으로 하여 그 土地의 生産力 등을 勘案하여 算定한다.

#### (나) 農地 등의 賣渡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중에서 상대방을 결정하여 賣渡하지만 그 매도가격은 取得價格에 法人이 자용한 經費를 포함한 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地域의 통상적인 去來價格을 기초로 그 土地의 생산력 등을 勘案하여 算定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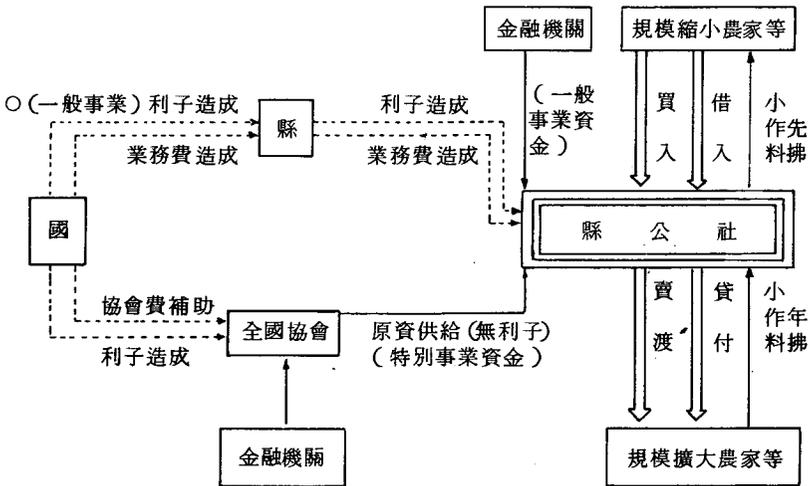
(다) 農地 등의 借入

農地保有合理化에 제공되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지며, 그 借入期間은 農地法 第3條의 경우는 10년이상, 이용권 설정 등 促進事業에 의한 경우는 原則적으로 5년이상으로 한다.

(라) 農地 등의 貸付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중에서 상대방을 결정하여 대부한다.

<圖 I - 13>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의 構造



<參 考>

- ①一般事業의 要件 — 農用地區域內의 全域에서 事業의 實施가 可能, 賣渡等의 相對方은 基準面積(事業實施地域에 있어서 農家の 平均面積)을 超過하는 者
- ②特別事業의 要件 — 農用地區域內에서 農用地開發事業等의 實施地域內에서 指定을 받은 地域에 限定, 賣渡等의 相對方은 目標面積(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에 訂하여져 있는 規模擴大의 目標面積)을 超過하는 者

그 대부기간은 農地法 第3條의 경우 10년이상, 利用權 設定 등 促進事業의 경우는 農地保有合理化를 促進하는데 필요한 期間으로 한다.

(마) 賃借料의 一括 先拂

5년이상으로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賃貸借에 있어서 賃借料를 增額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할 경우, 賃貸人의 請求에 의하여 賃貸期間에 따라 5년분부터 10년분의 小作料를 일괄 선불할 수 있다.

마. 農業專擔者確保 農地保有合理化促進 特別事業

(1) 目 標

農業에 意慾을 가지고 영농하려고 하는 新規 就農 希望者 및 大幅的인 規模擴大를 도모하려는 農業專擔者 등의 農業者에게 道府縣의 農地保有合理化法人(縣農業公社)이 사이에 서서 農用地 등의 買入, 一時貸付, 賣渡를 행하는 것이며, 經營開始期 및 轉換期 당초의 危險負擔을 輕減하고 그 발전을 支援하는 것이 큰 目標이다.

(2) 事業의 內容

縣農業公社가 買入, 一時貸付 및 賣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農地, 採草放牧地, 混木林利用地 및 農業用施設用地 또는 農用地에 부속되어 이용되는 農業用施設 등(이하 「農用地 등」이라 한다)이다. 新規로 農業을 시작하려는 사람과 經營規模擴大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農用地 등의 일시 대부 및 매도를 縣農業公社에 申請한다. 縣農業公社는 해당 農用地 등을 農業委員會의 預先사업 및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을 活用하여 買入한 다음 일정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前述한 希望者에 대해 먼저 대부한 후에 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貸付期間은 原則적으로 5년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農用地등의 一時貸付 및 賣渡를 받은 경우의 要件

(가) 新規經營開始 希望者の 경우

① 農業으로 자립하려고 하는 意慾과 能力을 가졌다고 認定할 수 있을 것

② 年齡이 原則적으로 대략 40세 부터 50세이하 일 것

③ 農用地등의 權利取得後의 經營面積이 基準面積을 超過할 것

(나) 大規模 農業專擔農業者의 경우

① 農業經營主이며 年齡이 原則적으로 40세부터 50세이하일것

② 權利取得後의 農業經營이 개인 農業者에 있어서는 실시 규정 에 있는 目標 經營 面積을 넘을 것, 그리고 農業生産法人에 있어서는 構成員數가 정상적인 機能을 發揮하면서 完全 就業할 수 있는 정도인 가, 또는 가까운 장래에 그 정도가 될 것으로 認定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高能率機械 등이 정상적인 能率로 가동되어야 한다.

#### 바. 農地 등 取得資金制度的 概要

##### (1) 目 標

農地, 採草放牧地 및 未墾地를 取得하는데 필요한 資金을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融資를 받음으로서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改善을 積極적으로 도모하여 農業構造改善에 기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資金이다.

##### (2) 貸付條件

###### (가) 貸付 對象者

農業을 經營하는 個人 또는 農業生産法人(農地法 第2條第2項에 규정한 法人) 및 民法法人(農地法施行令 第1條의 4 第1項第4號의 2 에 규정하는 法人)으로서 農業經營改善計劃에 근거하여 都道府縣知事의 인정을 받은 자 및 同事業에 근거하여 農地등의 取得에 대하여 여러가지 事業實施要綱에 의하여 決定 또는 選定된 자를 大부의 對象으로 한다.

또한 未墾地 取得資金에 대하여는 이상의 대상이외에 農業協同組合 또는 農事組合法人을 貸付의 對象으로 한다.

(나) 資金의 內容

農地 또는 採草放牧地의 取得(농업상의 利用增進에 필요한 防風林, 도로, 水路, 貯水池의 用地 등을 함께 取得하는 것을 포함)에 필요한 資金과 앞으로 開發하여 農地 또는 採草放牧地로 하는 土地(未墾地)의 取得에 필요한 資金이다.

(다) 貸付 條件

① 利率：年 3.5% (主務大臣이 정하는 要件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4.05%)

② 償還期限：25年以內(그중 거치기간 3년 이내)

③ 融資限度額：貸付金의 最低額은 原則적으로 50萬円

여기서 최고한도액을 보면 昭和 63年度부터 「農業專擔者에 의한 取得」의 경우 특정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데, 農業委員會의 斡旋에 의한 取得, 農用地 利用增進事業에 의한 取得, 農地保有合理化法人으로부터 取得, 農業經營綜合改善計劃에 근거한 取得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個人은 5,000萬円, 法人은 15,000萬円으로 대폭 引上되었다.

사. 經營規模擴大資金制度의 概要

(1) 目 標

土地利用型 農業의 經營規模擴大를 促進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規模擴大 意慾이 높은 中核的인 農業者가 農用地에 대하여 5년이상 10년이내의 賃借權을 取得할 경우에 그 設定期間內의 小作料 일괄 先拂에 필요한 경비를 都道府縣이 無利子로 融資하는 資金制度이다.

## (2) 貸付條件

- ① 利子率：無利子
- ② 貸付限度額：借賃權 設定期間×借地面積×標準小作料
- ③ 償還方法：年賦償還
- ④ 償還期限：10年以內(借賃權 期間에 對應)
- ⑤ 貸付를 받을 수 있는 者

㉒ 中核的 農業專擔者로서 또 規模가 큰 農業經營을 運營하기 위하여 필요한 知識과 技術, 그리고 計劃的으로 經營規模를 확대하려고 하는 意慾을 가지고 있을 것

㉓ 賃借權 取得後의 經營面積規模가 높은 生産性과 農業所得을 실현할 수 있는 農業經營을 育成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都道府縣이 定하는 目標經營面積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 아. 農用地利用增進對策事業의 概要

#### (1) 目 標

不作付地와 掠奪農法의 增加, 土地利用 및 지력의 저하, 末端農業用水路 등의 유지관리 粗放化 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農地流動化와 中核的 農業專擔者 농가의 經營規模 확대를 促進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農用地利用改善團體 및 地域農業集團이 中核的 農業專擔者 農家 등에 利用權 集積 등을 행하는데 있어서 農用地利用增進이 전제 조건이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의 土地改良事業 등을 하는데 필요한 資金을 無利子로 融資하는 事業이다.

#### (2) 事業의 內容

農用地利用改善團體 및 地域農業集團이 그 區域內에서 中核農家에게 利用權을 集積시켜 經營規模 擴大를 促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不

作付地, 掠奪農法에 의한 營農의 解消·防止 등을 위한 土地條件의 整備事業을 하는데 필요한 資金을 全國 農地保有合理化協會, 農地保有合理化法人(縣公社)을 통하여 貸付한다.

① 貸付對象：農用地利用改善團體 및 地域農業集團

② 貸付條件

㉞ 利率：無利子

㉟ 償還期限：6年 이내 (거치기간 1年 이내)

㊱ 償還方法：均等年賦償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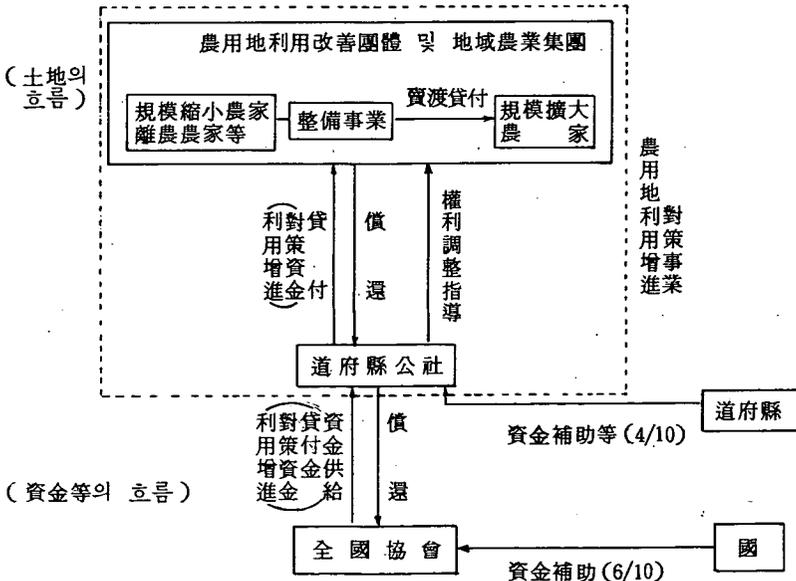
㊲ 保證擔保：連帶保證人(收益者 全員)

③ 貸付 限度額

㉞ 1個農用地利用改善團體當 年間 400萬円 (特認 1,500萬円 단, 北海道는 4,500萬円까지 可能)

㉟ 通算한 大부액이 1,500萬円 (北海道는 4,500萬円)이 되기까지는 매년 이 資金을 借用할 수가 있다.

<圖 I - 14 > 農用地利用增進對策事業의 構造



## 8. 農地流動化推進員의 經驗

○ 滝澤村農地流動化推進員 三上勇次郎의 經驗談

滝澤村은 岩手縣의 縣都인 盛岡市에 인접하여 都市化가 進行되고 있으며 米, 酪農을 중심으로 農家 1戶當 農業所得이 縣에서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都市近郊 農村이다.

<問> 姥屋數 集落은 開拓村이라고 들었는데 紹介해 주십시오.

<答> 종적직후에 國有林을 개방하여 入植하였다. 표고 350 m부터 500 m이며 춥고 토양도 나쁜 곳이다. 당초는 콩과 팥 등을 경작하였지만 昭和 27年부터 酪農에 노력하여 이제는 集落 71戶中에 44戶가 酪農을 하고 있다. 따라서 464 ha의 農用地中 약 400 ha가 牧草地이며 酪農 部落이다.

<問> 農業委員은 오래 하였습니다습니까?

<答> 初代 農地委員부터 오늘까지 農業委員이므로 지금까지 33 ~ 34年이 된다. 農地改革도 經驗하였으며 그 후의 農地行政의 흐름도 알고 있다.

<問> 그 經驗과 實績으로 97.9 ha라고 하는 利用權 設定을 推進했다고 생각합니까?

<答> 저가 가장 최근에 農地의 貸借를 성공시킨 것은 昭和 49年이다. 그 당시 日本列島改造 열기로 酪農을 하는 農家와 兼業化하는 農家로 나누어졌다. 公民館에 전부 모여서 이에 대해 議論을 하였다. 그 결과 昭和 50年에 28.3 ha의 초지가 貸借되었다. 利用增進事業이라는 것을 모르든 시대이므로 이것이 流動化의 元祖라고 생각하고 있다.

좌우간 당시에 제가 酪農組合의 組合長이기도 하였고 또한 農業委員이기도 하였으므로 어떻게 하면 마을의 農業과 마을이 발전할까 하는데 대해 여러가지 제안을 하였다. 「1일당의 產乳量을 縣에서 제일로 하자」, 「年間 100 톤의 우유를 生産하여 8자리수(10,000,000 円) 農業을 實現하자」 등이었다. 그리하여 粗飼料를 확보하기 위하여 草地開發도 하였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農業으로 生活할 수 있는 專業으로서의 經營基盤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農地의 流動化도 經營을 安定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다.

<問> 經營을 安定시키기 위하여 流動化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까?

<答> 마을사람들의 生活安定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農地를 빌려주는 農家の 생활에 대하여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農業委員 農地流動化推進員은 소위 말하는 民生委員 같은 것이다.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의 農業經營 및 生活의 內面까지 포함하여 생각하고 農業經營의 基盤이며 農家生活의 基盤인 農地를 平等이 아니고 公平하게 分배하는 것이 農地流動化 推進의 要領이라 하면 要領이다. 그러므로 農地流動化推進員을 名譽職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빌려주는 쪽의 農家에는 節次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때는 그사람 대신 法務局에 가서 登記簿謄本을 떼어 온다든지 印鑑證明을 請求하여 받아오고 있다.

## II. 農業委員會制度的運用體系

### 農業委員會 7가지 使命

1. 農業委員會는 農業·農業者의 대표로서 恒시 責任있는 行動에 노력한다.
2. 農業委員會는 農用地的 確保와 效率의 利用을 推進하며 法令에 근거하여 적정한 農地行政에 노력한다.
3. 農業委員會는 農地銀行活動을 확립하여 農用地的 流動化와 集團化의 促進에 노력한다.
4. 農業委員會는 産業으로서의 農業을 확립하기 위하여 農業專擔者의 育成과 後繼者의 確保에 노력한다.
5. 農業委員會는 활력있는 農業·農村을 만들기 위하여 構造政策과 地域活性化의 推進에 노력한다.
6. 農業委員會는 農業經營과 生活의 發展을 위하여 情報의 蒐集·提供活動에 노력한다.
7. 農業委員會는 農業者의 期待와 信賴에 副應하여 新時代를 開拓할 農政의 確立에 노력한다.

## 1. 序 論

今年에는 3년에 한번있는 農業委員統一選舉가 7月 15日(沖繩縣은 9月) 실시되었다. 農業委員會制度의 發足以來 14回째 選舉이다. 이번에 任期가 滿了되는 農業委員會는 전국의 7割가량인 2,200個 農業委員會이며 約 42,000人(그중 選舉로 選出되는 委員이 31,000人)의 새로운 農業委員이 誕生하였다.

昭和 26年 「農地改革에서 農業改革으로」라는 슬로간으로 誕生한 農業委員會는 市町村에 執行機關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行政委員會이지만 農業者 自身들이 選舉에 의하여 選출한 代表를 중심으로 構成되어 運營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意義와 特徵이 있다.

農業委員會는 以上과 같이 「농업자의, 농업자에 의한, 농업자를 위하여」를 目標로 組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問題인 地域 農業의 構造改革이나 農業振興에 달라붙어 노력하는 것 이외에 農地法이나 農用地利用增進法에 기초로 한 農地行政을 執行함과 동시에 農業·農業者의 利益代表機關으로서 地方自治體 및 國家의 農政 확립에도 노력하는 중요한 機能과 役割을 가지고 있다.

農業을 둘러싼 內외의 情勢는 오늘의 日本이 戰後最大의 轉換期·變革期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들은 地域農業의 構造改革을 통해 이 變革을 성취하여 21世紀로 향하여 活力있는 農業과 農村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저마다의 地域에서 이러한 課題에 달라붙어 노력하는 農業委員會活動을 만드는 것만이 農業委員會關係者の 오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農業委員會制度의 基本的인 性格과 使命의 중심이 되는 業務등을 紹介하고자 한다.

農業委員과 事務局이 文字 그대로 「수레의 두바퀴」로써, 21世紀로 향한 農業과 農業委員會活動의 確立을 위하여 活躍하여 줄 것이다.

## 2. 21世紀로 向한 農業委員會活動의 推進

現在와 같이 農業委員會活動에 커다란 關心과 期待가 要望되는 時代는 없을 것이다.

日本の 農業과 農政은 現在 커다란 轉換期·變革期에 처하여 있다. 生業的인 自作農에 의한 戰後의 農業生産體制(構造)가 經濟의 高度成長과 더불어 成立할 수 없게 되며, 벌써 이러한 農業生産構造로서는 農業의 再建은 말할 것도 없이 地域農業의 再生産 그 자체가 위태롭게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日本農業의 실태가 아닐까?

이러한 狀況에 대하여 地域의 農業構造 變革을 통하여 오늘의 社會經濟條件下에서 經營的으로 성립되는 農業(産業으로서 自立할 수 있는 農業)의 確立을 促進하여 21世紀로 향한 地域農業의 再建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課題를 重點的으로 추진하는 組織으로서 農業委員會에 대한 期待와 關心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에서 農業委員會가 달라붙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오늘의 課題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 가. 構造政策의 推進

第1은 構造政策의 推進과 地域農業의 構造改革에 대한 노력이다.

「構造政策의 推進」은 農委系統組織이 자신의 社會的 使命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課題이다. 平成元년에 改正農用地利用增進法을 위시하여 農地와 관련된 2個의 法이 立法되고, 構造政策을 加速하기 위하여 推進體制의 整備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農業委員會 組織은 ① 認定農業者에 대한 農用地의 利用關係의 調整, ② 遊休農地에 대한 是正指導 등이 法律上 明確히 되어 構造政策의 重點的인 實施·推進 機關으로서의 位置가 부여되어 있다.

平成2年은 이 農地二法施行의 事實上 初年度이다. 構造政策의 推進에 있어서 農業委員會의 當면 課題는 ① 農地二法の 普及·定着과 ② 二法業務를 圓滑히 推進하기 위한 農地銀行의 活動體制의 整備強化, ③ 市町村의 構造政策推進會議에의 主體的인 參與에 있다.

#### 나. 農地行政의 適法한 執行

第2는 農地法을 中心으로 한 農地行政의 適法한 執行이다.

이제 戰前의 地主體制復活은 생각할 수 없지만, 農地法과 이에 따른 農業委員會의 農地行政이 갖는 意義는 결코 後退하지 않았다.

더욱이 平成元年에는 30年만에 農地轉用許可基準이 改正되어 轉用行政에 있어 農業委員會의 裁量權이 大幅으로 擴大되었다.

優良農地의 確保, 投機的인 農地取得의 排除, 無秩序한 開發의 防止 등을 위하여 文字 그대로 「地域에 있어서 農地의 公的 管理主體」로서, 農業委員會의 役割과 機能이 期待되고 있다.

#### 다. 農業專擔者 育成의 推進

第3은 農業專擔者 및 經營確立對策의 樹立이다.

構造政策의 目的은 오늘의 社會經濟情勢에 對應할 수 있는 「農業經營」을 確立하는데 있다. 이들 農業專擔者가 記帳, 稅務, 經營分析, 더욱이 市場에의 對應力등 우수한 經營感覺과 經營管理能力을 具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農業委員會로서는 意慾이 있는 農業經營者의 自發的인 組織形成을 支援하고 이러한 組織과 一體가 되어, 참으로 農業專擔者가 될 수 있는 사람의 育成과 經營의 確立對策을 樹立하는 것이 重要하다.

#### 라. 農政活動의 活性化

第4는 自治體 및 國家의 農政을 確立하기 위한 農政活動의 推進이다.

農業委員會는 農業·農業者의 公的인 利益代表機關으로써 「行政聽의 諮問에 대한 答申」「建議」「意見의 公表」등의 機能이 부여되고 있다.

平成 2 年은 가트·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最終年이다. 米穀問題를 위시하여 農業保護를 하는 方法이 農政의 最大 課題가 되고 있다. 또 大都市圈을 中心으로 하는 土地稅制의 回復 問題도 切迫하게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農委系統組織은 今年 3 月, 農林水產大臣으로 부터 「農業의 專擔者像 및 그 育成方策은 무엇인가」에 대해 諮問을 받았다.

農政이 커다란 轉換期에 도달하고 있는 시점에 있으므로 本格的인 國民合意의 農政活動에 대한 意義와 役割이 대단히 중요하다.

#### 마. 農業委員會의 體制整備

끝으로 以上の 課題에 노력할 수 있는 農業委員會의 體制整備가 課題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農林水產省도 먼저 「構造政策推進等을 위한 農業委員會等の 體制強化에 대하여」라는 通達을 내어 行政指導가 행하여지고 있다.

더욱이 平成元年이 全國農業委員會會長大會에서도 「農業改革의 先頭에서 行動하는 農業委員會活動을 確立한다」고 하므로 모든 農業委員會에서 「農業委員會憲章」과 「活動計劃」을 정하는 것을 相互協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것을 全國的 組織運動으로서 推進하는 것을 決議하였다.

### 3. 農業委員會制度的 構造

#### 가. 農業委員會의 役割

農業委員會는 法律에 의하여 市町村에 설치되는 機關이며 그 設置에 대한 法的인 根據는 農業委員會法( 農業委員會等에關한法律, 昭和 26年 3月 31日 公布施行)이다.

農業委員會는 크게 나누어 3가지의 役割을 하고 있다.

#### (1) 第1의 役割 : 適正한 農地行政의 執行

##### (가) 合議體의 行政機關

農業委員會는 農地의 權利移動 및 轉用に 있어서 公平한 審査를 하는 市町村의 合議體 行政機關이다. 複雜한 利害關係가 엉키는 農地事務의 處理에 대하여서는 특히 公正한 態度가 必要하다.

그러기 위해서 農業者 代表이며 地域의 實情을 잘 알고 있는 農業委員의 合議體 行政機關으로써 發足한 것이다.

따라서 管掌事務의 執行은 市町村長의 指揮監督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事務所의 設置, 豫算의 編成·執行等の 事務는 市町村長이 管掌한다.

##### (나) 優良農地 守護

農業委員會에 의한 優良農地를 守護하기 위한 適正한 農地行政의 執行은 最近에 農地轉用許可基準의 大幅改正, 「農村活性化 土地利用 構想」의 創設에 의한 農業振興地域制度의 運用改善등 農地를 둘러싼 새로운 情況에 對應하기 위해 더욱 더 重要하게 되었다.

#### (2) 第2의 役割 : 農業·農業者의 利益代表機關

##### (가) 農業委員은 公選으로

公職選舉法에 準하는 選舉에 의하여 農業者가 자신의 利益代表를 選出한다고 하는 農業委員會制度는 다른 곳에는 이와 같은 類例가 없

는 것이다. 農業委員會는 公的으로 인정되는 唯一한 農業·農業者의 利益代表機關이다. 따라서 行政機關인 동시에 農政·指導團體로서의 役割을 가지고 있다.

#### (나) 農委法에 役割을 規定

이러한 役割은 農業委員會法 第6條第2項 및 第3項에 規定되어 있는데, 農地等の 利用關係에 대한 앞선 및 爭議의 防止를 위시하여 農業·農村에 관한 振興計劃을 樹立하고 이것을 實施·推進한다.

또 農業經營의 合理化 등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 農業者에 관한 諸問題에 대하여 意見을 公表한다든지 市町村長 및 기타 行政廳에 建議하고, 또 그 諮問에 따라 答申하는 등 農業 및 農業者에 관한 모든 事項에 걸쳐 폭 넓은 役割을 가지고 있다.

#### (다) 農政의 普及推進

더욱이 農業委員會法에서는 「農業 및 農民에 관한 啓蒙 및 宣傳을 실시하는 일」을 農業委員會組織의 業務로서 규정하고 있고, 系統組織은 農政에 관한 新聞 및 情報, 圖書등의 發行, 普及을 하고 있다.

또 農業委員 및 職員, 中核農家等に 대한 研修 등의 事業을 實施함과 동시에 農業委員會에 있어서도 各種의 事業推進 및 相談活動 등에 의하여 農業者에 대한 農政의 普及推進을 행하고 있다.

### (3) 第3의 役割：地域農業의 構造改革 推進

#### (가) 構造政策의 加速

現在 農業·農村은 農産物의 市場開放, 農業生産 專擔者의 高齡化, 더욱이 젊은 就農者의 不足 등 많은 새로운 課題에 直面하고 있어, 構造政策의 더한층 加速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課題에 對應하기 위하여 農業委員會는 農地銀行 活動, 市町村 構造政策推進會議의 運動, 農業專擔者 育성과 經營確立 對策 등의 業務를 專擔하여 地域農業의 構造改革을 推進하고 있다.



### (나) 農地二法の 推進機關

특히 農業委員會 組織은 改正 農用地利用增進法에서 ① 農用地의 利用關係 調整 ② 遊休 農地에 대한 是正 指導 등이 法律上 明確히 되어 構造政策의 中心的인 實施·推進機關으로서의 자리가 定하여져 있다. 따라서 地域農業의 構造改革에서 發揮하는 農業委員會의 役割은 더욱 더 重要한 것으로 되고 있다.

### 나. 農業委員會의 系統組織

農業委員會의 系統組織으로서는 都道府縣 段階에는 農業會議, 全國 段階에는 全國農業會議所가 있다.

#### (1) 農業會議 등의 團體

그러나 農業會議와 全國農業會議所는 農業委員會法에 基準하여 特殊한 認可法人, 즉 農業團體인데 반하여 農業委員會는 行政機關이라 하는 關係에 있다.

#### (2) 農委會長の 會議員

農業會議는 原則으로서 各 市町村의 農業委員會의 會長이 會議員이 되고 그 會議員과 各種 農業團體의 代表, 學識·經驗者 등의 會議員으로 構成되고 있다. 이와 같이 農業會議 構成員의 大部分은 農業委員會의 會長이므로 實質의으로도 農業會議는 農業委員會의 聯合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全國 農業會議所는 各 都道府縣의 農業會議와 全國 段階의 農業團體 및 學識·經驗者로 構成하고 있다.

#### 4. 農業委員會의 業務와 運用方法

農業委員會가 행하는 業務는, 「農業委員會等에 관한法律」 第6條에 정하여져 있다. 크게 구분하면 行政機關으로서의 農業委員會가 農地法 및 農用地利用增進法 등 기타 法令에 정해진 規定에 근거하여 固有의 權限을 가지고 행하는 業務와 그렇지 않은 業務, 즉 任意業務라고 불리는 業務가 있다.

前者인 固有의 業務는, 「法令에 근거한 必須業務」라고 할 수 있으며 農業委員會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執行機關으로서의 業務와 諮問機關으로서의 業務가 있다.

특히 平成元年부터 施行된 構造政策을 加速하기 위한 改正 農用地利用增進法中에는 「農用地 利用關係의 調整」이 必須法令 業務로서 明確化 되어 農地 流動化를 위시하여 構造政策의 中心的인 實施·推進 機關으로서 農業委員會의 役割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後者の 固有한 權限이 아닌 業務는 農業委員會가 行政機關인 동시에 農業者의 利益代表機關으로서의 役割을 가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付與된 任意의 業務機關이다. 오늘의 農業·農村이 歷史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큰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는 情勢下에서 이러한 固有한 것이 아닌 業務의 積極的인 推進이 크게 期待되고 있다.

또 農業者의 利益代表機關으로서 農業·農業者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意見を 公表한다든지 行政廳에 建議 또는 答申하는 特別役割이 주어져 있다.

以下에서 農業委員會의 業務와 그의 役割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法令에 根據한 必須業務

法令에 근거한 主要必須 固有業務는 ① 農地法 ② 農用地利用增進法 ③ 農振法 ④ 土地改良法 ⑤ 特定農地貸付法 등에 근거한 業務

가 있다.

이러한 것은 어느 것이든 農業委員會法 第 6 條第 1 項의 業務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各己의 業務 業務의 內容에 대하여 紹介하기로 한다.

(1) 農地法에 근거한 業務

(가) 農地의 權利移動

1) 賣買・貸借는 農業委員會가 許可

農地 또는 採草放牧地의 所有權, 賃借權, 기타의 使用收益權(地上權, 永小作權, 使用貸借에 의한 權利등)을 設定하거나 또는 移轉할 때 當事者는 農地法 第 3 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當事者가 그 住所에 記載된 市町村의 區域外에 있는 農地 등의 權利를 取得할 경우이거나 기타 政令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知事의 許可가 필요하다. 農業委員會가 許可의 可否를 決定하는 것은 農業委員會의 區域에 居住하는 農家가 그 市町村內에 있는 農地 등을 耕作 目的으로 賣買하거나 賃借할 경우이다.

農業委員會와 知事와의 許可權限의 區分은 <表II-1>과 같다.

<表II-1> 農業委員會와 知事의 許可權限 區分

區分	個人(在村)	個人(不在村)	農業生產人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의 實施로 인하여 權利를 取得하려고 하는 農地保有合理化法人	農業經營을 委託받음으로써 權利를 取得하려고 하는 農業經營受託農協	其他法人	區分地上權의 取得
			在村	不在村				
許可權者	農業委員會	知事	農業委員會	知事	農業委員會 <sup>1)</sup>	農業委員會 <sup>2)</sup>	知事	知事

1) 農地保有合理化人이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의 實施以外에서 權利取得을 할 경우는 知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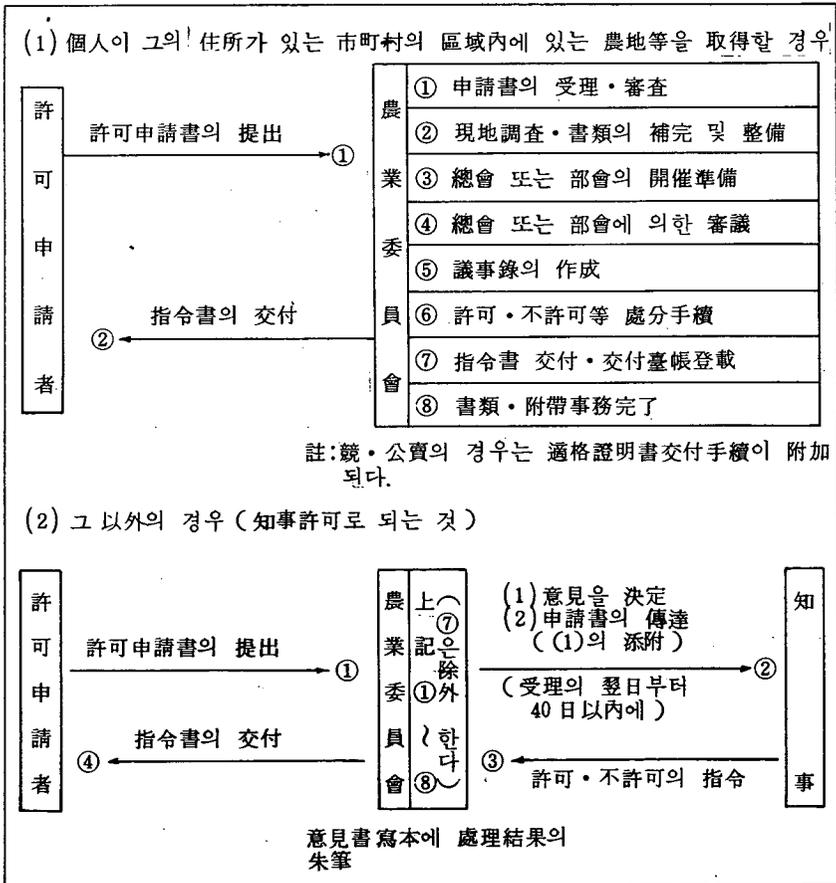
2) 農業協同組合이 農業經營의 受託以外에서 權利를 取得할 경우는 知事

2) 總會・農地部會에서 審議

農業委員會는 이러한 權利移動의 許可申請書가 提出되면 總會 또는 農地部會에서 審議를 行하여 許可에 대한 可否를 決定하고 申請者에 대하여 指令書를 交付한다.

또 知事が 許可權者로 된 것에 대하여는 許可申請書가 提出되면 農業委員會가 受理한 翌日부터 40日 以內에 許可에 該當하는지 또는 該當치 않는지의 意見書를 添附하여 知事에게 上申한다.

<圖Ⅱ-2> 權利移動의 許可 節次(農地法第3條)



이 경우에도 總會 또는 農地部會에서 審議하여 意見書を 綜合하기로 되어 있다.

第3條의 許可 手續, 處理方法 順序는 <圖Ⅱ-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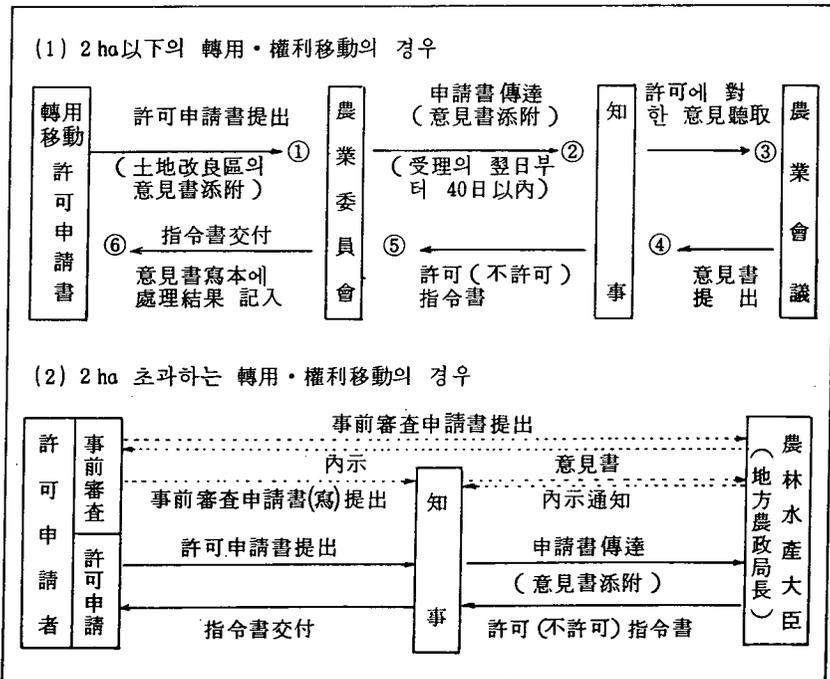
또 市町村에서 作成하는 農用地利用 增進計劃에 근거한 農地등의 權利移動에 대해서는 農業委員會가 決定하고 廣告한다. 農地法の 許可를 받지 않고도 그 效果가 發生하는 것이다.

(나) 農地の 轉用

農地の 轉用에는 農地の 所有者가 자신의 農地를 農地以外에 轉用하는 경우와 所有者 以外の 者가 農地를 買入, 빌려서 또는 耕作權을 移轉·받아서 轉用하는 경우가 있다.

前者는 農地法 第4條, 後者는 第5條에 의하여 知事の 許可(2ha를 초과할 경우는 農林水産大臣의 許可)을 받아야 한다.

<圖Ⅱ-3> 轉用·權利移動의 節次(農地法第4~第5條)



## 1) 2ha 以下는 農委經由로 申請

許可申請者는 轉用하려고 하는 面積이 2ha 以下일 경우에는 그 農地가 所在하는 農業委員會를 經由하여 知事 앞으로 許可 申請하고, 또 2ha를 초과할 때는 知事를 經由하여 農林水產大臣에게 許可申請을 한다.

더욱 大規模 農地轉用(第5條)에 대하여는 事前審査制度가 있다.

農業委員會등이 農地등의 轉用 手續, 處理등을 어떠한 順序로 進行 하는가는 <圖II-3>과 같다.

## 2) 市街化 區域內的 屈出

都市計劃法에 근거하여 市街化 區域內 農地를 轉用할 경우는 農業委員會에 屈出만 하면 되며 農地法の 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農業委員會는 제출된 農地가 市街化 區域內에 있는가, 또 轉用으로 인하여 周邊 農地에 惡影響이 없는가를 確認하고 受理交付書を 交付 하여야 한다.

## 3) 轉用許可基準을 大幅으로 改正

平成 元年 3月, 農地轉用許可 基準이 大幅으로 改正되어 農村의 地域 活性化 등에 必要한 施設 또는 自動化的 進展에 對應하는 沿道施設등을 建設할 경우는 第1種 農地, 甲種農地도 轉用許可의 審査對象 이 되었다.

더욱 農用地利用增進法에 의하여 市町村이 정하는 實施方針에 따라 農地를 農業用 施設 등 農業 目的에 轉用할 경우는 利用增進計劃에 包含하여 農業委員會에서 決定하고 公告하면 農地法の 許可를 받지 않아도 轉用이 認定된다.

## (다) 小作地の 所有制限 등

農地法에서는 小作地の 所有에 대하여 다음의 制限을 하고 있다.

① 不在地主의 小作地 所有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在村地主라 할지라도 都府縣에서는 平均 1ha, 北海道에서는 4

ha에 달하는 都道府縣別로 정하여진 面積을 超過하는 小作地를 所有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 1) 所有制限의 例外規定

그러나 小作地の 所有制限에 있어서 例外規定이 있다.

農用地利用増進法에 의하여 作成되는 市町村의 實施方針에 適合하며 地域農業을 지탱하는 意慾이 있는 農家は 農用地利用増進計劃에 근거하여 借地할 경우 農地法の 許可를 받을 必要가 없으며, 在村, 不在村을 不問하고 小作地를 얼마든지 소유하고 있어도 좋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例外로서 離農한 不在村 地主의 경우 離農하기 전에 10年間 계속하여 所有하고 있던 農地에 대해서는 離農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農地의 所有權을 承繼받은 相續人의 2代에 한하여 小作地の 所有가 認定되고 있다.

이 경우 6個月 以內에 農業委員會에 確認 申請을 하고 農業委員會는 이것을 確認하여 確認書를 交付하도록 되어 있다.

이 以外에도 試驗研究 및 農事指導의 目的에 供與되는 것으로서 知事의 指定을 받은 小作地 중에 例外規定이 適用된다.

### (라) 賃貸借의 解約 등

農地등의 賃貸借에 대하여 解約을 요구할 경우에는 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1) 知事許可가 不必要한 경우

小作地등의 返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知事의 許可가 必要없다.

- ① 農地등의 賃貸借가 民事調整에 의하여 合意解約되는 경우
- ② 合意에 의한 解約이 農地등을 인도하는 날 以前 6個月 以內에 成立된 合意로서 文書에 의하여 合意가 明白할 경우
- ③ 農協이 貸付信託에 제공한 農地등을 信託期間 滿了前 1年 以內에 返還 받을 경우

④ 10年 以上の 期間이 정하여져 있는 賃貸借에 대하여 更新拒絶을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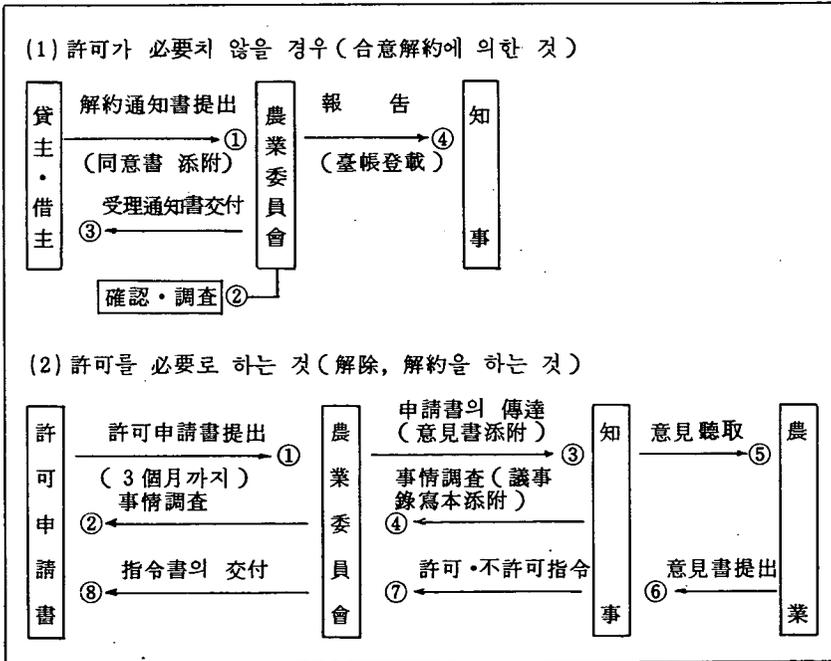
⑤ 農用地利用增進事業에 비하여 一定 期間이 정하여져 있는 賃借에 대하여는 그 期間이 滿了하였을 경우

2) 利用增進事業으로 自動 返還

이와같이 許可가 필요치 않는 경우에 解約의 申請, 合意解約 또는 更新拒絶의 通知를 하였을때는 그 후 30日 以內에 所定の 事項을 記載한 通知書를 農業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農用地利用增進事業에 의한 賃借의 경우는 그 期間이 滿了하면 自動的으로 小作地가 返還된다.

賃貸借解約의 節次는 <圖Ⅱ-4>와 같다.

<圖Ⅱ-4> 賃貸借解約의 節次(農地法第 18 ~第 20 條)



(마) 和解의 仲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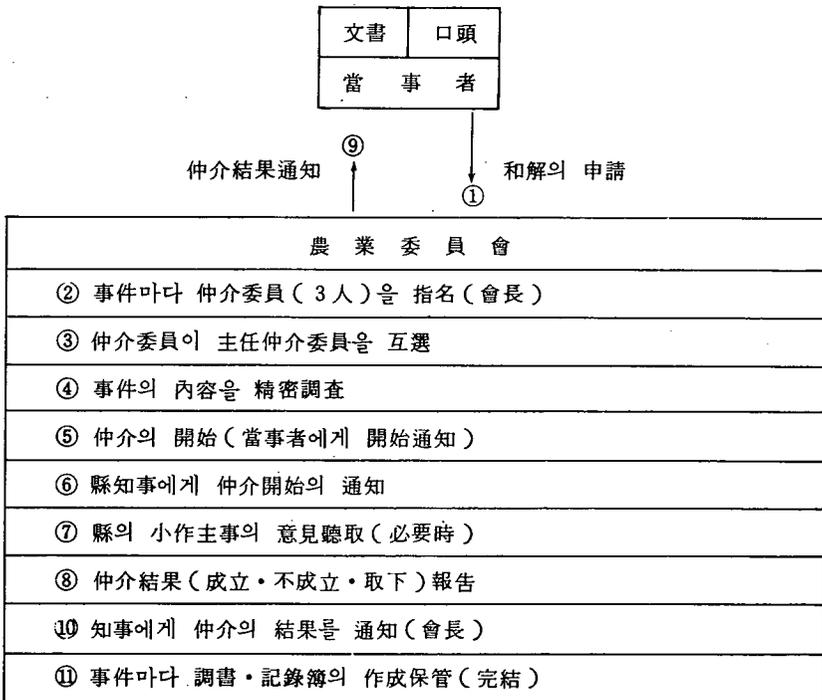
農地 등의 利用關係의 紛爭에 대하여 그 當事者 또는 한쪽에서 和解의 仲介申請이 있었을 때는 農業委員會는 和解의 仲介役을 하여야 한다

1) 3 人의 農業委員이 仲介

農業委員會의 會長은 農業委員中에서 事件마다 3 人의 仲介委員을 指名한다.

指名된 仲介委員은 當事者의 出頭를 요구하여 仲介를 한다. 和解가 成立되었을 때는 當事者 및 仲介에 參加한 利害關係人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에 의한 和解調書를 作成한다. 이 和解調書는 民法의 和解效力이 發生한다.

<圖Ⅱ-5> 和解의 仲介節次(農地法 第 43 條의 2~6)



더욱 仲介委員은 和解의 仲介를 繼續하여도 當事者 사이에 合意가 成立할 希望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仲介를 中止할 수 있다.

또 農業委員會는 그 紛爭에 대하여 자신이 和解하기가 困難하든지 또는 不適當하다고 判斷할 때는 申請人의 同意를 얻어 知事에게 和解가 成立될 수 있도록 申請할 수 있다. 和解의 仲介方法과 手順은 <圖 II-5>와 같다.

#### (배) 標準小作料의 作成 등

農業委員會는 「小作料 標準額」(標準小作料)를 정하며, 이에 의하여 當事者가 小作契約을 할 경우의 基準으로 利用하는 동시에 妥當한 小作料 水準에 惡影響을 미치는 高額小作料에 대하여는 農業委員會가 小作料의 減額을 勸告하는 制度를 취하고 있다.

##### 1) 農業委員會의 承認으로 物納도 可能

標準 小作料는 公示함과 동시에 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더욱 減額勸告를 適正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減額勸告基準을 정하는 등 이의 취급에 있어서는 公正하게 處理하는 것이 必要하다.

또 小作料는 農業委員會가 承認하였을 경우 物納도 認定되고 있다. 小作料 標準額의 作成에 대하여는 <圖 II-6>과 같은 節次로 進行된다.

#### (사) 其他 農地法 業務

以上の 事項以外에 農地法에 根據하여 農業委員會가 행하는 業務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農業生産法人의 常時從事者에 대한 認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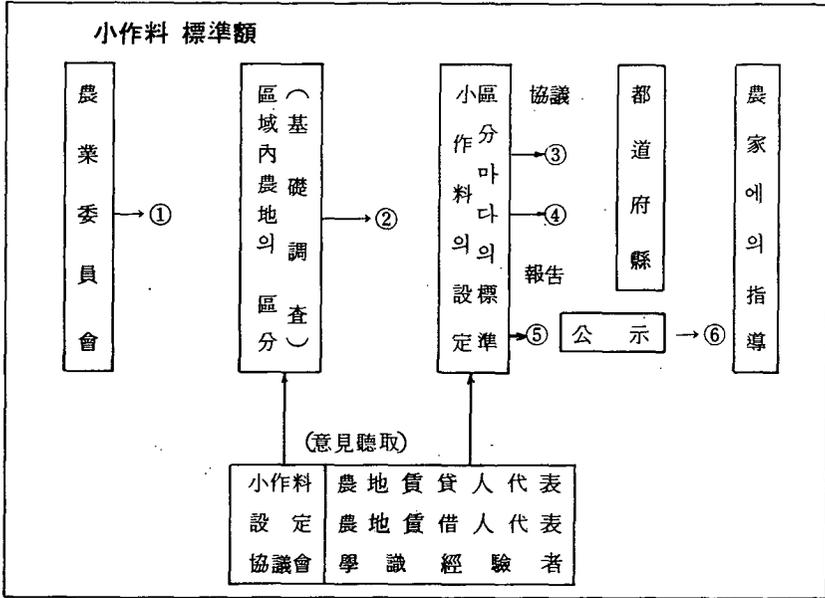
② 土地 또는 立木에 대하여 利用權設定의 協議에 관한 事前承認, 承認申請에 관한 相對方 등의 意見聽取, 承認通知 및 公示

③ 利用權 設定의 協議가 順調롭지 못할 경우에 裁定申請의 公示, 相對方에게 通知

④ 利用權 設定의 協議不調에 대한 裁定

⑤ 未墾地를 國家에서 買收하는데 대한 申請

<圖 II - 6 > 標準小作料作成의 節次(農地法第 21~第 25條)



⑥ 買收適地の 公示 및 縱覽

⑦ 未墾地買收令書 謄本受理의 경우에 公示 및 縱覽

⑧ 未墾地買收申請書의 提出이 있었을 경우 賣渡土地 등의 決定 및 關係書類를 知事に 傳達

⑨ 小作地 및 小作採草地 所有狀況의 縱覽

(2) 農用地利用增進法에 根據한 業務

農用地利用增進法은 「農用地利用增進事業」과 「遊休農地에 관한 措置」로서 構成되어 있다.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은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의 實施에 관한 方針(通常 「實施方針」이라고 말하고 있다)과 그에 根據한 利用權 設定등 促進事業, 農用地利用改善事業, 農作業受委託促進事業의 3가지를 中心으로 成立되어 있다.

또 改正 利用增進法(平成元年 9月 11日 施行)에 의하여 새로운 農業委員會의 法令業務로서 農用地利用關係의 調整과 遊休農地의 指導가 追加되었다.

#### (가) 實施方針作成에 대한 意見

이 事業을 實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市町村마다 實施方針을 作成하고, 實施推進의 基本的인 생각과 方法, 留意하여야 하는 事項 등에 대하여 精할 必要가 있다. 이를 精할 때 市町村長은 農業委員會 및 農業協同組合의 意見을 聽取키로 되어 있다.

#### 1) 構造改善의 目標 追加

더욱 改正 農用地利用增進法(平成元年 9月 11日 施行)에서는 實施方針에 그 實施를 통하여 促進하여야 하는 “農業構造改善에 관한 目標”가 追加되었다.

이것은 地域農業의 바람직한 合意形成을 推進하는 것을 目標로 하였으며 이는 營農類型別로 5年앞 정도를 내다본 것이다. 그 市町村의 構造改善目標로서 精정한 規模와 戶數 등을 關係機關, 團體 등이 協議하여 決定하는 것이다.

#### (나)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의 決定

利用權 設定等 促進事業은 農地의 貸借 및 賣買를 行할 경우 農地法에 따르지 않고 市町村이 農業委員會의 決定을 거쳐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을 작성하고 이것을 公告하므로써 安心하고 農用地를 貸借하는 事業이다.

또 助成金 및 融資, 稅金 등의 特例도 여러가지 많이 인정되고 있다.

市町村은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을 作成할 때는 對象이 되는 土地마다 當該土地의 所有權이나 使用收益權을 가진자 및 利用權의 設定을 받는 者의 同意를 얻는 동시에 農業委員會의 決定도 거쳐야 한다.

#### 1) 計劃內容을 充分히 審議

農業委員會가 決定을 할려고 할 경우 計劃의 內容이

- ① 法에 정하여진 要件에 違反하고 있지 않은가
- ② 實施方針에 適合한가
- ③ 農地轉用許可基準 등에서 볼때 適當하다고 認定되는가
- ④ 農用地的 效率的 利用과 規模擴大에 寄與할 수 있는 것인가
- ⑤ 農業者年金의 受給資格 및 納稅 猶豫의 資格基準에 支障이 없는가

하는 것 등을 充分히 審議하여 決定한다.

#### (대) 利用權 設定등 促進事業의 推進

改正 農用地利用增進法에 의하여 첫째 前述한 農業構造改善에 관한 目標을 정하고, 둘째 市町村에 의한 農業者의 農業經營規模擴大計劃의 認定制度를 設置하고, 셋째 農用地 利用關係의 調整이 農業委員會의 法令業務로서 明確化 되었다.

##### 1) 認定農業者의 利用調整

農業委員會는 上記의 經營規模擴大計劃에 대하여 市町村의 認定을 받은 農業者(認定農家)로부터 規模擴大의 申請이 있었을 경우에는 農用地的 利用關係 調整에 努力한다고 하는 重要한 任務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이러한 認定農家に 農地를 貸與하기 위해 農地保有合理化法人에 協力을 要求한다든지 또, 農地の 貸與에 必要한 所有者 등에 대해 그 農地를 賃貸하것금 勸獎하기도 한다.

##### 2) 調整의 節次規程 整備

이러한 法令業務를 行하기 위하여 먼저 「法 第9條에 根據한 農用地 利用關係의 調整에 관한 節次規程」을 整備하여, 農業委員中에서 調整委員을 任命하여 農地를 빌려주는 쪽에 대해 ①權利關係의 調整, ②關係權利者의 同意를 얻는 등의 調整活動을 한다.

##### 3) 市町村長에게 計劃作成 要請

그 調整의 結果, 認定農家が 希望하는 條件에 맞는 賃貸農家に 있어 그것을 利用增進計劃에 挿入하는 것이 適當할 경우에는 農業委員會의

總會 또는 農地部會의 決定을 거쳐 市町村長에게 利用增進計劃의 作成을 要請한다.

이 要請을 根據로 하여 市町村長은 利用增進計劃을 定한다. 그 內容이 要請과 一致할 경우 農業委員會의 決定은 必要가 없다.

#### (라) 遊休農地の 指導

農業委員會는 그 區域內에서 不可避한 事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耕作을 하지 않고 放置하고 있는 農地가 있어 그것이 農地의 團地的 利用을 妨害하는 등 周圍의 事情을 農業上의 利用을 위해 특별히 改善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할때는 總會 또는 農地部會의 決定을 거쳐 農業委員中에서 2人의 指導委員을 任命하여 그 農地의 所有者 등에 대하여 農業을 再開하거나 認定農家에 빌려 주도록 指導한다.

##### 1) 所有者 등에 利用增進을 勸告

所有者 등이 指導에 따르지 않을때는 農業委員會는 市町村長에게 遊休農地의 所有者 등이 그 農地의 農業上 利用을 增進할 수 있도록 勸告할 것을 申請한다. 農業委員會는 이러한 業務를 圓滑히 推進하기 위하여 사전에 「指導要領」을 定하여 둔다.

#### (마) 囑託登記 事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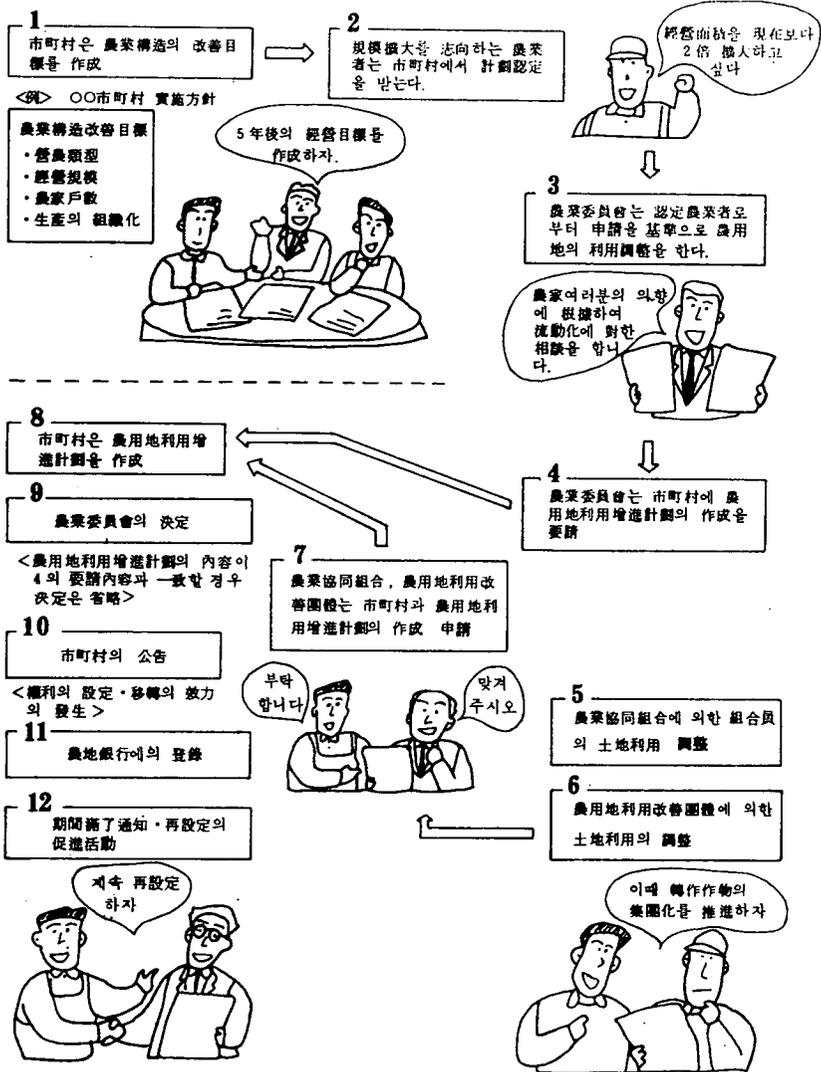
農用地利用增進計劃에 包含된 所有權移轉에 대하여는 不動產登記法의 特例가 認定되고 있으며 市町村에 의한 囑託登記가 可能하다.

##### 1) 事務委任으로 農委가 實施

登記事務에 관하여서는 農業委員會가 處理하는 것이 適當하다는 취지의 指導通達이 전달되어 市町村長과의 事務委任에 의하여 農業委員會가 實施하기로 되어 있다.

農用地利用增進計劃作成의 主要節次는 <圖Ⅱ-7>과 같다. 이것은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의 作成, 公告主體인 市町村이 所有權을 取得한 자로부터 請求가 있었을 경우에는 所有權 移轉의 對象이 되는 土地에 대하여 登記簿上의 表示와 現況이 相違할 경우에는 所有權登記名義人에 대

<圖 II - 7> 農用地利用增進計劃作成의 主要節次



하여 土地의 表示를 變更하는 代位登記와 所有權移轉의 本登記等を 囑託하게 되는 것이다.

### (3) 農振法에 根據한 業務

#### (가) 農振整備計劃 業務

農業振興地域의 指定을 받은 市町村은 知事の 許可를 얻어 農用地利用計劃(農用地 區域의 設定과 그 區域內에 있는 土地의 農業上의 用途區分),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 農業經營規模擴大 및 農用地 등을 農業上으로 效率的이고 綜合的인 利用의 促進 등에 관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을 定한다.

市町村이 이러한 整備計劃을 定한다든지 變更할때는 農業委員會의 意見을 듣도록 되어 있다.

#### 1) 農村活性化 土地利用構想 意見

農振制度의 運用改善措置로서는 「農村活性化 土地利用構想」의 作成이 平成元年 3月부터 새로 追加되었다. 이 構想은 就業機會의 擴大등에 의해 地域活性化를 圖謀하기 위하여 市町村이 地域活性化등에 필요한 住宅이나 工場등의 施設種類 및 그 位置등을 定하므로써 農振農用地區域의 除外手續을 簡素化하는 것이다.

이 構想作成의 段階에서 市町村은 農業委員會 등의 意見을 듣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平成 2年 3月에 運用改善의 一部가 再改正되어 從來의 農用地區域을 이 構想의 한 가운데에 包含시키는 것이 條件이었지만, 農振白地地域만이라도 構想을 作成할 수 있게 되었다.

#### 2) 構想의 變更도 彈力的으로

構想의 有效期間인 5年間に 대하여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構想의 變更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變更의 基準을 표시하고 인터체인지이거나 國·縣道등이 新設된 경우등을 위시하여 豫定事業者 및 地權者 意向등에 의

하여 變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構想에 고려하고 있는 施設등을 위한 轉用에 대하여는 「原則許可」하는 것으로 되었다. 農業委員會로서는 優良農地를 지키는 것을 基本目標로 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地域活性化를 圖謀하는 觀點부터 構想作成段階에서 “意見”을 充分히 反映시킬 必要가 있다.

#### (내) 交換分合 등의 業務

農振整備計劃의 策定·變更에 있어서 農振地域內 또는 農用地地區內에 있는 農用地 등의 一部가 農用地 등 以外의 用途에 公여하는 것이 예상될 경우에 土地利用의 調整을 행하여 交換分合計劃을 定할 수가 있다. 市町村이 이 交換分合을 定하여 知事에게 許可申請을 할 때에는 農業委員會의 同意가 必要하다.

#### 1) 特定利用權의 業務

農用地區域內의 耕作放棄地 및 荒廢地에 대하여 知事が 特定利用權을 設定하는데 대하여 承認할 때는 農業委員會의 意見を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 (4) 土地改良法에 根據한 業務

##### (가) 土地改良事業에 參加하는 資格者 認定 業務

① 小作地의 所有者가 土地改良事業에 參加하려고 할 경우 이 에 대한 申請을 農業委員會에 하며, 農業委員會가 이를 承認할 경우는 事業에 參加할 수 있다.

② 農地以外의 土地를 그 所有者 以外의 사람이 使用收益하고 있을 경우 所有者의 同意를 얻어 參加하는 뜻을 農業委員會에 申請하였을 때는 그사람은 土地改良事業에 參加할 수 있는 것이다.

③ 土地改良區의 構成員이 農業者年金의 經營移讓에 의하여 後繼者에게 農地移讓을 하였을 경우에도 農業委員會의 承認이 있으면 構成員으로서 남아 일할 수 있다.

#### (나) 交換分合 業務

農業者 2人 以上이 一定한 範圍의 農地를 정하여 그 農用地上에 대한 關係權利者 1/2 以上の 同意를 얻어 交換分合을 행하는 것을 農業委員會에 請求할 경우에 農業委員會는 請求가 妥當하다고 認定할 적에 그 農用地上에 대하여 交換分合計劃을 決定한다 (請求가 없을 경우에도 정할 수가 있다).

##### 1) 權利者 2/3 以上の 同意

農業委員會가 交換分合計劃을 정할 적에는 對象農用地上에 대한 關係權利者 2/3 以上の 同意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 土地가 土地改良區內에 있을 때는 土地改良區의 意見を 청취하여야 한다.

農業委員會가 交換分合計劃을 정하였을 때는 公告하여 공람시키는 동시에 關係權利者에게도 通知한다. 權利者는 農業委員會의 決定에 異議가 있어 不服이 있을 때는 知事에게 審査申請을 할 수 있다. 이러한 節次를 거친 農業委員會는 交換分合計劃에 대하여 知事の 認可를 받는다.

##### 2) 計劃認可 등에 農業會議의 意見

不服에 대해 知事が 審査 및 決裁를 하거나 計劃을 認可할 경우에는 農業會議의 意見を 聽取하여야 한다.

土地改良區가 策定된 交換分合計劃을 知事에게 許可申請할 경우는 農業委員會의 意見を 들어 同意書를 添附한다. 農業委員會의 交換分合計劃 策定の 節次는 <圖Ⅱ-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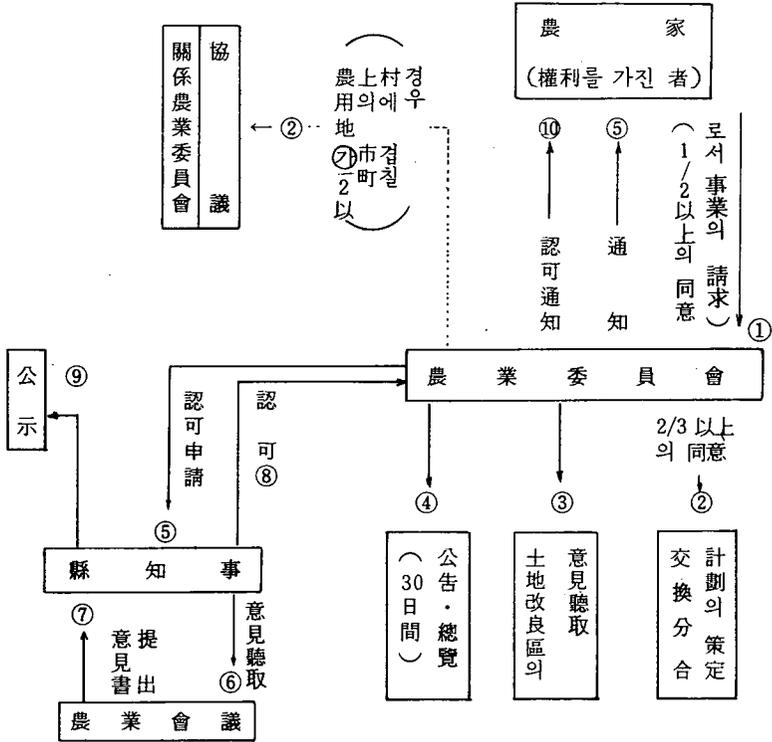
#### (5) 其他 法令에 根據한 業務

##### (가) 農地등 取得資金등의 業務

農林漁業金融公庫는 農地등을 取得하거나 또는 農地등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未墾地를 取得하여 農業經營의 規模擴大를 하려고 하는 農業者 또는 農業生産法人으로서 知事が 認定한 者에 대하여 必要한 資金을 貸付한다.

이 資金을 借用하는자는 農業經營改善計劃을 作成하고 貸付認定申請書

<圖Ⅱ - 8> 農業委員會의 交換分合計劃策定 節次



를 添附하여 農業委員會를 經由하여 知事에게 提出한다.

1) 經營改善計劃作成의 指導 등

農業委員會는 經營改善計劃의 作成을 指導함과 동시에 認定·申請書를 受理하였을 때는 內容을 審査하고 市町村, 普及所, 農協 및 自作農組合 등의 意見を 參考로 하여 貸付가 適當한가 어떤가의 意見書를 作成하고 그것을 添附하여 知事에게 提出한다.

2) 自作農維持資金의 業務

農林漁業金融公庫는 疾病, 災害 또는 負債整理 등에 의하여 資金이 必要하여 自作地等を 賣渡하지 않으면 안되는 農業者 또는 遺産分割에 위한 自作地 등의 細分화를 防止할려고 하는 農業者로서 知事が 認定한 者에 대

하여 이 資金을 貸付한다.

이 경우에도 申請書 提出 및 審査指導 등 모든 農地取得資金의 경우와 같다.

(나) 租稅特別措置法의 業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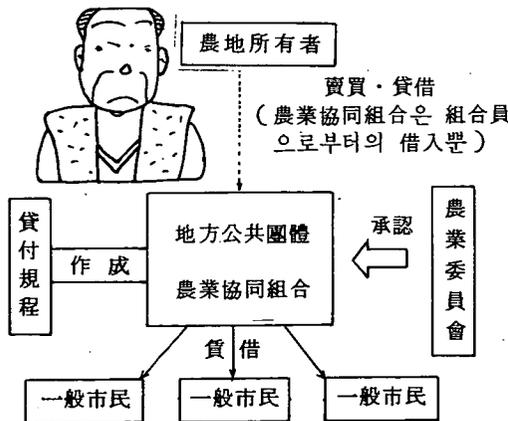
農業 後繼者를 確保하고 또 相續에 의한 農地의 細分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租稅特別措置法에 의한 相續稅 및 贈與稅의 納稅猶豫制度를 爲始하여 登錄免許稅, 不動産 取得稅에 대한 稅의 減免措置에 관한 特例가 있다.

이 特例를 받을 경우는 農業委員會의 證明이 必要하다.

(다) 特定農地貸付法의 業務

平成元年 9月 施行의 「特定農地貸付에 關한 農地法等の 特例에 關한 法律」(特定農地貸付法)은 都市住民 등의 사이에서 高潮되고 있다. “農村에 가서 息만지기 ” 등을 하고 싶다하는 要求에 호응하여 이러한 非農業者에게 地方公共團體 및 農業協同組合이 一定한 制限(貸付期間 5年 未滿, 面積 10a 以下)을 붙여, 農地 貸付의 길을 여는 것이다.

<圖 II - 9> 特定農地貸付法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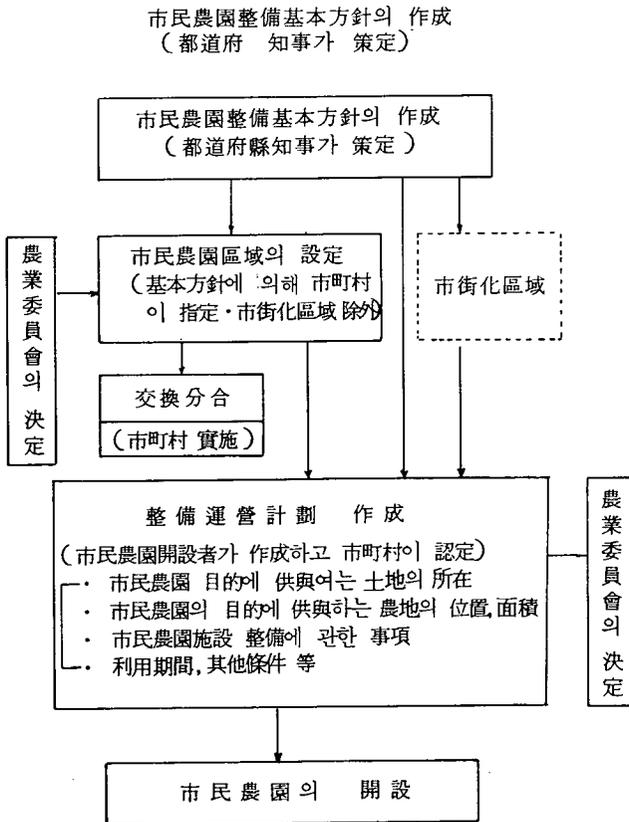
1) 農委會 承認・取消의 權限

農業委員會는 地方公共團體 및 農協이 特定農地貸付를 行하는데 있어서 承認權과 取消權이 부여되어 있으며 農業的 土地利用과의 調整등 重要한 役割을 가지고 있다.

(라) 市民農園整備促進法の 業務

平成 2年 6月에 立法된 市民農園整備促進法은 都市住民의 레크레이션 등에 利用하기 위한 市民農園의 整備를 圓滑히 推進하기 위한 것이다.

<圖Ⅱ - 10> 市民農園整備促進法の 構造



## 1) 農園區域의 指定 등에 決定權

이 法律로서 農業委員會는 市町村이 農園區域의 指定 및 市民農園開設의 認定을 행하는데 있어서 決定權이 부여되어 있으며 農業生産을 위한 農地利用에 限하지 않고 市民農園의 整備를 包含한 地域의 土地利用 調整에 대하여 重要的 役割을 달성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 (마) 기타 業務

그밖에 農業委員會는 土地區劃整理法, 民事調停規則에 의한 業務가 있다.

## 나. 法令에 근거한 任意業務

法令에 정하여져 있는 任意의 業務에 대하여는 農委法 第6條 第2項에 6個의 事項이 정하여져 있다. 이러한 業務는 關係者에 대하여 權利를 制限하거나 義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法的 拘束力은 없지만 地域農業의 構造改革 推進이 要求되고 있는 가운데 이 分野에 있어서 農業委員會의 業務는 더욱 더 重要하게 되고 있다.

(1) 農地 등의 利用關係에 대한 斡旋 및 爭議防止에 관한 業務

(2) 農地 등의 交換分合, 斡旋, 기타 農地事情의 改善에 관한 業務  
이러한 두개의 業務에 있어서 勸獎行政으로서 農業委員會가 행하는

<圖Ⅱ - 11> 法令에 根據한 6가지 任意業務

1	農地等 利用關係에 대하여 斡旋 및 爭議의 防止
2	農地等の 交換分合의 斡旋外 其他 農地 事情의 改善
3	農業 및 農村에 대한 振興計劃의 樹立 및 實施의 推進
4	農業生産의 增進, 農業經營의 合理化 및 農民生活의 改善
5	農業生産, 農業經營 및 農民生活에 관한 調査 및 研究
6	農業 및 農民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啓蒙宣傳

業務는 다음과 같다.

- ① 農地 등에 대하여 權利의 取得 斡旋
- ② 農地 등의 相隣關係의 紛爭 調停
- ③ 小作爭議의 防止 및 斡旋
- ④ 農業者 相互間 또는 기타 團體가 행하는 交換分合의 斡旋
- ⑤ 農地相談 등의 事務가 이것에 해당된다.

#### 1) 農振法에도 農委의 斡旋 規定

農業振興地域整備法 第 18 條에서 農業委員會는 農用地區域內에 있는 農地 등에 대하여 「所有權 移轉 또는 使用 및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의 設定 아니면 移轉의 斡旋에 있어서는 農業振興整備計劃에 근거한 이러한 土地의 取得이 農業經營規模擴大, 農地の 集團化, 기타 農地保有의 合理化에 公여하는 것」이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農地移動適正化 斡旋事業이 잘 구성되어 있어 稅法上的 優待 措置등의 特例가 설치되는 등 農業委員會의 看板이라고 말할 수 있는 事業實績을 올리고 있다.

(3) 農業, 農村에 관한 振興計劃의 樹立 및 實施推進에 관한 業務  
 農業 및 農村의 振興에 관한 地域的인 振興計劃은 農業者의 利益代表 機關으로서의 性格을 가진 農業委員會가 地域農業者의 創意와 希望을 振興計劃에 包含하는데 있어서 가장 適當한 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 1) 計劃實施 主體는 市町村 등

그러나 農業 및 農村의 振興計劃은 단지 計劃을 樹立하는 것으로서는 意味가 없다. 요는 그 計劃을 어디까지 實施하는가 하는데 있다. 農業委員會는 市町村의 機關이므로 計劃의 樹立은 하지만 私法上 權利 義務의 主體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計劃實施의 主體는 市町村, 農業團體 또는 개개의 農業者가 여기에 該當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事情을 考慮하여 法은 振興計劃에 관한 農業委員會의 機能을

「計劃의 樹立 및 實施의 推進」이라고 規定한 것이다. 이 規定을 農業委員會는 自己自身도 計劃의 實施에 參與할 수 있지만, 市町村 農業團體 등이 樹立하는 計劃의 立案에 協力하거나 또한 樹立한 計劃實施의 促進을 圖謀하는 것이 包含되어 있다.

(4) 農業技術의 改良, 農作物의 病害蟲 防除, 기타 農業生産 增進  
農業經營의 合理化 및 農民生活의 改善에 관한 業務

이 事項은 그 範圍가 廣範圍한데 소위 말하는 市町村의 農林行政一般과 같은 意義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事項에 대하여는 市町村의 農林部局, 農業改良普及所, 農協, 農業共濟組合 등 各種 機關과 團體의 實施主體가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農業委員會의 機能도 이러한 機關, 團體와의 調整이 問題가 된다.

1) 補助事業 相談活動으로 定着

農業委員會의 構造政策業務 推進體制整備事業 등 補助事業의 實施에 의하여 農地對策을 軸으로 한 經營改善 相談活動 등이 活發하게 展開되어 農業委員會의 經營改善 對策, 中核의 農業專擔 農家 育成·確保 등의 對策이 定着되어 가고 있다.

2) 農業專擔者 育성과 組織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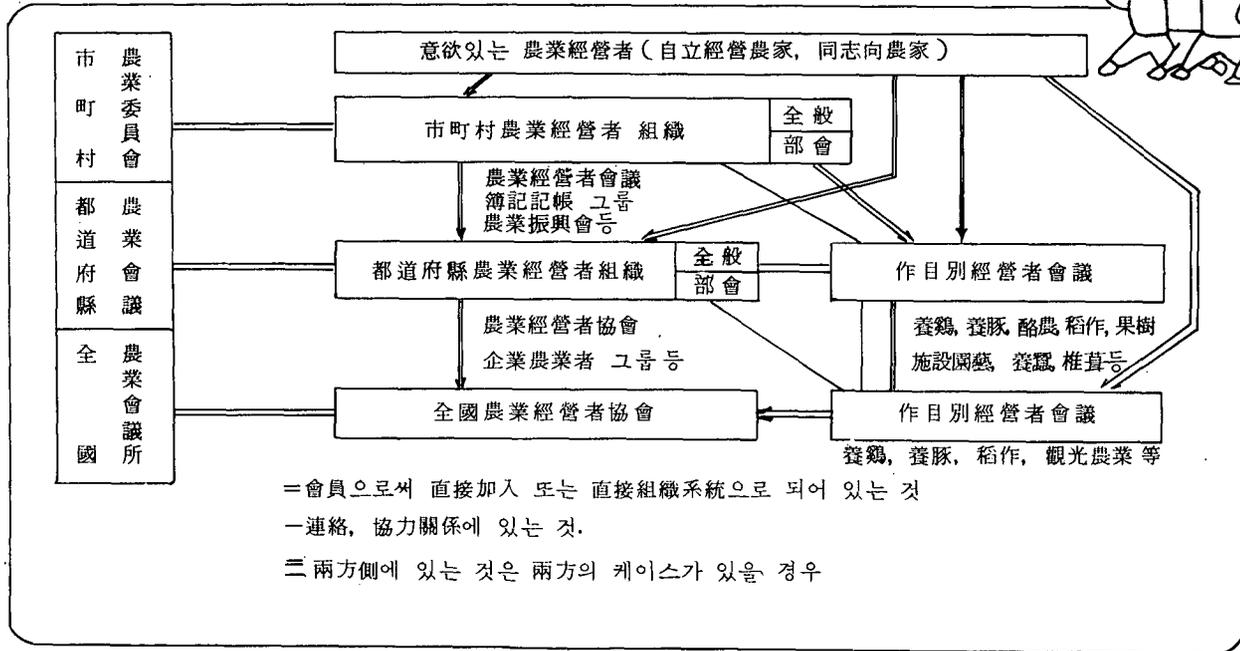
農業委員會 組織은 日本農業의 今後를 責任질 意欲있는 農業經營者의 經營確立과 그 自主的 組織化를 昭和 30年代부터 一貫하여 支援하고 있다.

그 結果 現在 全國 都道府縣, 市町村의 各段階에 여러가지 農業經營者 組織이 結成되고 있으며 그 影響力은 點으로 부터 面으로 急速히 擴大되고 있다.(圖II-12) 參照).

이러한 農業經營者 組織은 다른 農業團體와는 전혀 異質의 것이다.

예를들면 農協에서 이것을 經濟事業으로 組合員과 연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組織은 目的을 같이하는 自主的인 農業經營者의 集合體이

<圖 II - 12> 擴大되는 自主的 農業經營者 組織



며 어려운 農業情勢의 가운데서 「經營者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運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農業委員會가 各種 補助事業 등을 통하여 이러한 農業經營者의 經營指導, 研修場의 提供 등을 행한다든지, 經營者 組織의 事務局을 擔當하는 등의 活動을 積極的으로 행하고 있다.

(5) 農業生産, 農業經營 및 農民의 生活改善에 관한 調查研究 業務  
 農業委員會가 法에 의하여 賦與되어 있는 各種 管掌事項을 遂行하기 위하여 農業 및 農業者의 現況과 動向, 그리고 또 그 問題에 대하여 正確히 把握하고 充分한 認識을 하는 것이 前提가 된다.

#### 1) 田畝賣買價格 調査 등

이로 인하여 農業 및 農業者에 대하여 調查研究를 행하는 것이 必要하다. 農作業受委託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參考가 되는 「農業賃金·作業料金 協定」에 대한 調査 및 「田畝賣買 價格調査」등은 이의 典型的인 事例이다.

#### (6) 農業 및 農民에 관한 事項에 대한 啓蒙宣傳業務

農業者 및 農業團體에 대하여 農業 및 農業者에 관한 正確한 知識을 普及하는 業務이다. 「農委消息」과 「經營改善 案内」 등의 弘報物이나 리후벨 發行, 講演이나 講習會 등을 活發하게 開催하고 있는 農業委員會 組織의 機關紙로서 「全國農業新聞」을 發行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各種 情報資料나 全農圖書 등의 發刊에도 노력하고 있다.

#### 다. 意見의 公表·建議·答申

##### (1) 農家の 利益代表로서 積極的 活動

農業委員會의 또하나의 重要한 役割은 地域의 農業 및 農民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意見을 公表한다든지 다른 行政廳에 建議한다든지 諮問에 따라 答申하는 業務가 있다.

이것은 農業委員會法 第6條 第3項에 規定되어 있다. 農業委員會가 行政機關으로서의 性格보다는 農業者의 代表機關으로서의 性格을 強하게 나타내는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農業者 및 地域 農業이 어려운 環境에 처한 가운데 眞실로 農業者와 地域農業의 立場이 되어 그것이 나아가야 할 方向과 이것을 實現하기 위한 政策의 소재를 明確히 한다는 것은 農業者의 代表로서 選出된 農業委員이 構成하는 農業委員會의 役割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農業委員會法도 그 對象을 「農業 및 農民」에 관한 모든 事項으로 하고 있다. 農業委員會는 이 機能을 積極적으로 活用하고 意見의 公表, 行政廳에 대한 建議, 諮問에 대한 答申을 행하는 것이 期待된다.

昭和 62年度에 意見公表 및 建議·諮問·答申을 행한 農業委員會는 全體의 36%, 이러한 形態로서 意見公表 등을 행한 農業委員會는 7割 以上에 달한다. 農業者의 代表機關으로서 가장 積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役割을 發揮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2) 獨自의 農政運動 推進

이는 農業委員會의 農政運動을 積極적으로 認정한 것이다. 여러 地域의 獨自農政對策 活動外에 全國 共通의 課題에 대하여 農業委員會 系統組織 全體의 農政運動을 推進하여 오고 있다. 昭和 30年代의 新農村建設運動, 農業基本法制定運動, 40年代의 農業者年金設定運動, 國有林野解放運動, 都市農業確立運動, 50年代의 農地三法制定運動, 最近의 農地二法 制定 및 農業者年金制度 改正運動 등 여러가지를 推進하고 있으며 戰後의 農政展開에 커다란 役割을 完수하고 있다.

또 全國農業會議所의 農林水產大臣諮問에 대한 答申은 이제까지 15회에 걸쳐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을 全體적으로 檢討한 후 행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制度와 施策에 反映되고 있다(<表Ⅱ-2> 參照).

21世紀로 向한 日本 農業·農政의 未來를 開拓하기 위하여 農業委員會의 이러한 役割은 一層 重要하게 되고 있다.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p>1. 「現在 町村合併의 進行으로 本때 農政推進을 위해 취해야 할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 30 年 4 月 6 日)</p>	<p>答申(昭和 30 年 11 月 30 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市町村에 強力하고 總合的인 農政團體를 設置하여 行政機能을 補強</li> <li>2. 農業委員會에서 農業振興計劃의 樹立 推進機能 強化</li> <li>3. 技術指導體系 強化를 위하여 農業改良普及事業·普及員의 資質向上, 經費를 全額 國庫負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答申을 契機로 農業團體 再編成</li> <li>2. 農業委員會法의 一部改正(昭和 32 年 4 月 17 日 成立) 市町村農委의 部會制, 農地主事의 身分保障, 市町村農委代表者를 都道府縣 農業會議會議員으로 하는 系統性確保 등</li> </ol>
<p>2. 「農業委員會에 있어 農業 및 農村에 관한 振興計劃의 樹立 및 實施 推進上의 問題點 및 그 對策은 무엇인가」 (昭和 33 年 2 月 27 日)</p>	<p>答申(昭和 33 年 9 月 2 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農家臺帳등 基礎資料 整備</li> <li>2. 土地利用狀況調查, 農地臺帳등의 整備</li> <li>3. 近代的 營農技術 導入, 流通改善施策</li> <li>4. 振興計劃 樹立·實施推進體制的 確立을 위하여 市町村, 農協, 改良普及所, 集落團體, 目的機能集團과의 提携強化</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農地臺帳도 勘案된 農家臺帳制度化(昭和 34 年, 35 年에 全 市町村 農業委員會에서 整備)</li> <li>2. 農業委員會의 農業振興計劃樹立·推進 對策 強化</li> </ol>
<p>3. 「日本の 農業構造 近代化를 促進하는데 있어 農業就業 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方案</p>	<p>中間答申(昭和 35 年 8 月 30 日), 本答申(36 年 9 月 15 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農家勞動力의 完全就業計劃 樹立</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昭和 36 年度 : 農業就業改善對策事業 發足. 「農業勞動力調整協議會」 設置</li> <li>2. 39~41 年度 : 新農家臺帳(勞動力關係</li> </ol>

<表Ⅱ-2> 繼續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p>은 무엇인가」 (昭和 35 年 3 月 1 日)</p>	<p>2. 自立經營農家の 育成과 基幹勞動力 確保 3. 農家勞動力의 圓滑한 流出措置 4. 農地移動의 圓滑化 5. 産業配置計劃 再檢討 6. 農業勞動力調整協議會 設置 7. 農家臺帳의 農家勞動力 補完整備</p>	<p>補完) 3. 36 年 : 農業基本法 制定 4. 37 年 : 農業生產法人의 制度化 (農地法・農協法 一部改正) 5. 37 年 : 農業構造改善事業 發足</p>
<p>4. 「農山村에 있어 農業基幹勞動力의 流出로 수반되는 問題點 및 그의 具體的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 37 年 2 月 28 日)</p>	<p>中間答申(昭和 37 年 9 月 14 日) 1. 農繁期 勞動力不足對策 ①勞動力의 地域間 交流 斡旋調整, ②臨時雇等의 勞動條件 改善 : 農業勞賃協定 등 本答申(昭和 38 年 8 月 30 日) 1. 農業後繼者의 確保育成方案 ①家族關係의 近代化(父子契約等), ②農業者年金制度, ③農業教育體系, ④生活環境整備, ⑤相續制度의 檢討 2. 農業基幹勞動力의 確保養成, 兼業農家・中高年層의 圓滑한 流出助長關聯方案</p>	<p>1. 各 市町村農業委員會에 있어 勞動力의 交流斡旋, 農業勞動・農作業賃金協定 推進 2. 39 年 「農地의 一括生前贈與 特別制度」創設 3. 家族協定・父子契約을 各地에서 實踐 4. 經營傳習農場의 整備, 地域營農研修施設, 農業專修學園等을 40 年度 新設, 中央研修施設을 41 年度 新設 5. 40 年度 農業後繼者資金, 生活改善資金 擴大, 41 年度 生活改善特別事業을 發足</p>

<表Ⅱ-2> 繼續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p>①離農轉職希望者의 就職促進措置, ②職業訓練制度의 改善等, ③農地制度의 合理化, ④農業用固定資産稅 大幅減免, 農地流動化를 위한 稅制特例</p>	
<p>5. 「自立經營의 育성과 協業의 助長을 一層 促進하기 위하여 總合적이고 具體적인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 39 年 2 月 28 日)</p>	<p>中間答申(昭和 39 年 8 月 28 日)</p> <p>①自立經營의 誘導的 育成事業, ②「農業整備開發事業團」構想, ③借地에 의한 農地流動化 促進등 農地制度 改正, ④國公有林野의 活用促進, ⑤後繼者對策과 自立經營志向農家의 把握</p> <p>本答申(昭和 40 年 9 月 3 日)</p> <p>①自立經營育成計劃의 確立과 構造政策의 推進, ②自立經營育成資金制度의 創設, ③自立經營育成 専실단트 設置</p>	<p>1. 40 年度 : 農業勞動對策事業의 發足. 農家就業相談連絡員 設置等</p> <p>2. 「農地管理事業團」構想</p> <p>3. 國有林野活用運動의 本格化</p> <p>4. 40 年 : 「土地改良長期計劃」決定</p> <p>5. 41 年 : 農業近代化資金制度의 擴充</p>
<p>6. 「農業構造 改善을 보다 促進하기 위하여 總合적이고 具體적인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 41 年 2 月 28 日)</p>	<p>第 1 次答申(昭和 41 年 9 月 2 日)</p> <p>1. 構造政策의 前提로서 食料自給度의 向上, 農用地 擴大와 土地基盤整備 促進, 農業振興地域 設定等</p>	<p>1. 42 年 農林省 「構造政策의 基本方針」 策定에 反映</p> <p>2. 42 年 : 「家族協定農業普及推進要綱」 決定, 推進運動</p>

<表Ⅱ-2> 繼續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p>2. 「農業經營近代化促進法」의 制定(基本方針·要綱策定, 資金充實, 家族協定農業의 制度化等) 第2次答申(昭和42年3月24日)</p> <p>農業構造改善事業 次期對策(2次構)의 提案</p> <p>①土地條件 整備, 近代化施設 導入等</p> <p>②市町村을 초월한 廣域事業 '實施</p> <p>本答申(昭和42年9月1日)</p> <p>1. 土地利用區分과 「農業地域」의 設定</p> <p>2. 農地制度 改正(借地에 의한 流動化 促進等)</p> <p>3. 農業者年金制度 創設</p> <p>4. 國公有林野의 活用, 後繼者 確保對策, 生活環境 整備 等</p>	<p>3. 44年부터 第2次 農業構造改善事業 實施(農業經營整備事業, 廣域事業, 中核的 農家育成對策 等)</p> <p>4. 43年 : 總合資金制度의 創設</p> <p>5. 44年 : 農業振興地域整備法</p> <p>6. 45年 農地法改正(農地保有 合理化事業 等)</p> <p>7. 45年 : 農業者 年金制度의 實現</p> <p>8. 46年 : 國有林野活用法의 制定</p>
<p>7. 「最近의 農業生產 動向으로 볼 때 農業生產의 方向 및 이의 達成을 위한 具體的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43年3月4日)</p>	<p>中間答申(昭和44年3月3日)</p> <p>畜産의 生産對策</p> <p>本答申(昭和44年11月11日)</p> <p>1. 農業近代化促進을 하기 위한 基本對策</p> <p>2. 主要農産物의 生産對策</p>	<p>1. 草地基盤整備 擴充, 優良家畜 增殖 育成, 家畜共濟制度 改善 等</p> <p>2. 農業災害補償制度, 中央·地方 都賣市場의 改善, 野菜生産 指定産地의 擴充</p> <p>3. 45年 「總合農政의 基本方針」에 反映</p>

<表Ⅱ-2> 繼續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p>8. 「土地의 農業的 利用과 非 農業的 利用의 調整 觀點에 입각하여 農村地域 土地資 源의 計劃的이고 效率的인 活用과 農家所得의 増大를 圖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 45年 3月 12日)</p>	<p>中間答申(昭和 45年 9月 30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農村地域으로의 工場進出을 圖謀하기 위하여 特別法 制定, 工場用地 造成取得과 農用地整備 의 共同減步方式의 手法 等</li> <li>2. 都市化의 進行과 農業的 土地利用의 調整 ①課稅強化反對. ②生産綠地制度 等</li> </ol> <p>本答申(昭和 46年 9月 10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抜本的 土地政策(總合土地利用計劃, 農地流動 化 等)</li> <li>2. 農村圈 總合開發整備制度</li> <li>3. 工業開發에 따른 土地利用調整과 農業·農村의 再編整備 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46年 : 農村地域工業導入促進法 制定. 農村工業導入센터 發足</li> <li>2. 47年 土地改良法改正(創設換地, 異種 目 換地制度)</li> <li>3. 48年 農林中央金庫法 改正</li> <li>4. 49年 : 生産綠地法의 制定</li> <li>5. 47年度부터 農業團地育成對策事業, 특히 廣域營農團地 構想, 農村基盤 總 合整備 파이롯트事業</li> <li>6. 47年度부터 農地流動化의 農委相談 活動</li> <li>7. 48年 「新土地改良 長期計劃」</li> </ol>
<p>9. 「今後에 地域別, 主要作目 別로 規模가 크고 生産性이 높은 農業經營, 集團的 生 産組織등 近代的인 高能率 經營을 하는데 바람직한 方</p>	<p>答申(昭和 48年 9月 14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大型自立經營의 育成과 集團化에 의한 生産單 位의 擴大, 農業地域의 確保·保全·開發對策</li> <li>2. 農振地域의 擴充整備, 各種 振興計劃의 再評價</li> <li>3. 地域의 特性에 맞는 經營, 生産組織의 育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年 農振法改正(農用地利用增進事業 의 創設等)</li> <li>2. 48年度부터 「土地와 農業을 지키는 運動」</li> <li>3. 49年度부터 農用地確保對策事業</li> </ol>

<表Ⅱ-2> 繼續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p>向과 이를 育成하기 위한 總合的이고 具體的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 47年 3月 6日)</p>	<p>中核的 農家層에게 土地와 生産의 集中 等</p> <p>4. 土地利用計劃, 買占·乱開發防止, 流動化對策</p> <p>5. 登錄農家制度的 創設과 助成, 農家經營者組織의 育成對策, 家族協定農業의 制度化, 稅制 改善</p>	<p>4. 49年: 國土利用計劃法の 制定</p> <p>5. 49年: 森林法 一部改正</p> <p>6. 49年度부터 自立經營育成 特別事業</p> <p>7. 50年: 農地等の 相續稅 納稅猶豫制度 創設</p>
<p>10. 「農畜産物의 自給度를 維持 向上하기 위하여 國內農業의 生産對策 強化 및 農業 生産의 中核的인 農業專擔者의 育成確保에 관한 總合的인 施策의 基本的 方向 및 具體化에 관한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 49年 3月 8日)</p>	<p>中間答申(昭和 49年 9月 10日)· 農業生産의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育成確保對策</p> <p>①國民食料의 自給確保를 基本으로 하는 農政確立, ②中核的 農業專擔者의 育成目標確立과 이의 組織化, 指導體制 整備, ③農用地의 中核的 農業專擔者의 集中化對策, ④生産組織, 農業團地等の 育成強化, ⑤農業金融制度의 改善整備</p> <p>本答申(昭和 50年 9月 22日)</p> <p>農畜産物의 自給度向上을 위한 生産增強對策</p> <p>①農用地確保對策, ②效率的 利用對策(畜總合利用對策, 裏作·輪作體系, 中核的 農業專擔者에게 農用地集中化), ③土地基盤整備, 地力培養 等</p>	<p>1. 50年 「國民食糧會議」(總合食糧政策). 同年 「農産物의 需要와 生産의 長期 展望, 國土利用計劃에 反映」</p> <p>2. 50年度부터 中核的 農業經營者 育成 特別指導事業, 地域農業推進 總合農家 對策事業</p> <p>3. 農業改良資金(後繼者育成資金), 總合資金 (規模擴大에 必要한 經營資金)의 擴充</p> <p>4. 51年度부터 畜 總合利用對策</p> <p>5. 51年: 土地改良法 改正</p> <p>6. 51年度부터 基礎集落圈對象의 農村基盤 總合整備事業, 一般事業</p>

<表Ⅱ-2> 繼續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p>11. 「農業의 體質을 強化하기 위하여 農業構造를 보다 改善하는 것이 必要한데 그 基本的 方向 및 具體的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 51 年 3 月 8 日)</p>	<p>中間答申(昭和 51 年 9 月 16 日) 農用地確保對策과 農業後繼者對策 ①安定經濟成長下의 農政基本理念 確立 ②農用地的 確保, 擴大, 流動化對策 ③後繼者의 育成確保對策</p> <p>本答申(昭和 52 年 8 月 5 日) 農業構造改善의 推進方案 ①農業構造改善對策의 基本視點, ②農業構造改善事業의 次期對策</p>	<p>1. 52 年度부터 地域農政特別對策事業, 地域農業後繼者對策 特別事業 2. 53 年度부터 新農業構造改善事業 3. 53 年度부터 農家總合 콘실탄트事業</p>
<p>12. 「日本の 經濟動向, 農村地域의 混住社會化進展中에서 農業 및 農村의 振興을 圖謀하기 위하여 農村地域에 대한 農業施策을 總合的이고 計劃的으로 推進할 必要가 있지만 이의 總合的인 振興計劃 確立 및 推進에 대한</p>	<p>中間答申(昭和 54 年 8 月 27 日) 基本農政의 確立과 總合振興計劃의 推進 및 農業構造改善 促進에 대하여 ①長期展望에 근거한 基本農政의 確立·展開, ②農村地域의 總合的인 振興計劃 樹立·推進, ③農地法整備 等</p> <p>本答申(昭和 55 年 9 月 16 日) 農業·農村의 總合的振興計劃의 確立·推進에</p>	<p>1. 昭和 55 年 農地關聯 3 法의 制定·改正 (農地法·農業委員會法改正, 農地利用增進法制定) 2. 55 年 : 農政審 「80 年代의 農政 基本方向」等에 反映 3. 56 年度부터 畜利用再編 第 2 期對策 4. 56 年度부터 構造政策 推進體制 整備 事業</p>

<表II-2> 繼續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p>基本的 方案은 무엇인가 (昭和 53 年 3 月 14 日)</p>	<p>대하여 ①農政의 基本路線 確立, ②畜利用再編 第 2 期 對策, ③農村總合振興整備를 위한 計劃制度的 基本方向</p>	
<p>13. 「地域農業의 振興 및 活力 있는 農村地域社會의 形成 을 위하여는 地域別로 農業 生産, 農産物의 流通·消費, 農業構造 및 農村整備에 대 해 그 地域實情에 맞는 方 向으로 推進하는 것이 必要 하지만 이 경우 地域社會에 입자한 이러한 바람직한 姿 勢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는가」 (昭和 56 年 3 月 9 日)</p>	<p>中間答申(昭和 57 年 9 月 27 日) 自立經營農家等の 育성과 國民合意의 農政을 위해 1. 農政의 基本方向(①經濟運營의 基本轉換, ②農 業·農村의 社會的 役割과 産業으로서의 農業 의 確立 等) 2. 農業構造政策의 強化策(①自立經營農家의 育成 과 目標設定, ②農地의 高度利用과 農地管理시 스템, ③新農構後期對策 等) 本答申(昭和 58 年 8 月 23 日) 地域農業生産再編성과 自立經營農家等の 育成 1. 農業生産再編成, 畜利用再編의 高찰 2. 農産物의 地域·地場流通의 促進 3. 自立經營農家等の 育성과 農村의 總合的 整備</p>	<p>1. 財界等の 農政批判에 反論 2. 昭和 58 年度부터 地域農業 集團育成事 業, 地域農業經營 確立推進事業 3. 58 年 「第 3 次 土地改良長期計劃」 4. 59 年度부터 畜利用再編 第 3 期對策 (他用途米, 計劃的 在庫增加 等) 5. 59 年度부터 農用地 高度利用促進事業 後期對策 6. 59 年度부터 構造政策推進農家 데이터 整備事業(農家基本臺帳의 再整備)</p>

<表Ⅱ-2> 繼續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p>①이를 위한 農地流動化推進, ②農地管理體制의 整備 等</p>	
<p>14. 「生産성이 높은 農業을 實現하기 위하여 特히 土地利用型 農業部門에 있어 農地의 流動化와 效率的 利用을 促進하여 中核農家의 規模擴大等を 進行하면서 農業生産을 專擔할 中核農家 等を 育成·確保할 必要가 있지만 兼業農家, 高齡農家 等を 포함한 地域社會가운데서 中核農家를 主體로한 地域農業의 振興을 圖謀하기 위한 總合적이고 具體적인 方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昭和 59年 3月 12日)</p>	<p>第1次答申(昭和 60年 9月 25日)</p> <p>21世紀를 展望한 構造政策推進을 위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農業生産目標의 設定, 食料·貿易政策, 農地 550萬ha確保와 效率的 利用 等</li> <li>2. 自立經營農家等の 育成·確保對策 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育成하여야 할 經營體 「自立經營農家等」의 明確化, ②「自立經營農家等 登錄制度」創設 等</li> </ul> </li> <li>3. 農地와 確保와 農地管理시스템의 整備·充實 (農地銀行活動, 農委斡旋活動의 擴充 等)</li> <li>4. 農山漁村의 活性化와 마을만들기 推進</li> </ol> <p>第2次答申(昭和 61年 9月 25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構造政策基本方針」의 策定(①農業專擔者의 明確化와 育成確保, ②土地改良, 集落整備, ③農地管理시스템의 整備, ④總合적인 構造政策 推進體制)</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昭和 61年, 農政審 「21世紀로 향한 農政의 基本方向」 等に 反映</li> <li>2. 61年度부터 地域農業自立經營化 促進事業, 62年度부터 新規就農相談(센터) 活動事業, 63年度부터 中核農家等 組織化事業, 土地利用型 農業經營指標推進事業, 地域農業專擔者 經營能力向上 推進事業</li> <li>3. 61年度부터 「構造政策推進會議」設置 (市町村은 63年度부터)</li> <li>4. 平成元年, 農地關聯 2法의 制定, 改正 (農用地利用增進法改正: 農地銀行活動 等の 強化, 規模擴大計劃農家認定制度 等 特定農地貸付法의 制定)</li> <li>5. 昭和 62年度: 集落地域整備法</li> </ol>

<表Ⅱ-2> 繼續

諮 問 要 旨	答 申 要 點	施 策 反 映
	2. 農業專擔者確保・農業後繼者對策(新規參入 等) 3. 畜 利用再編 次期對策	6. 62年度부터 畜 農業確立對策
15. 「앞으로 構造政策을 中心으로 各種 施策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日本經濟社會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展開方向에 입각하여 農村을 포함한 地域社會全體의 活性化를 도모하는 것이 重要한 課題로 되어있지만 그 對應方向 및 具體인 方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昭和 62年 3月 16日)	第 1次答申(昭和 63年 9月 26日) 農村地域의 活性化를 위하여 ①內需擴大型・多極分散型經濟社會와 農業・農村의 役割, ②食料・農業政策의 基本確立과 構造政策 強化(土地基盤整備, 新農構 次期對策, 農業者年金制度 改善 等), ③農村地域定住・活性化促進 第 2次答申(平成元年 9月 4日) 農村地域 整備政策의 確立과 山村・過疎地域의 活性化 促進 ①農村地域政策(地域資源의 效率의 活用, 農業・農村의 構造改善), ②山村・過疎地域 活性化(總合振興, 若者定住促進, 高齡者對策, 「新過疎法」制定等 特別助成・支援措置)	1. 平年 2年度부터 農業農村活性化 農業構造改善事業의 發足 2. 平成元年度부터 土地改良 償還 圓滑化 促進事業 3. 平成 2年 : 農業者 年金法 改正 4. 平成 2年 : 市民農園整備促進法 制定 5. 平成 2年度부터 中山間地 總合對策 6. 平成 2年度부터 「過疎地域 活性化 特別措置法」(新過疎法) 制定

## 5. 農業者年金 業務 : 農家와 關聯된 主要業務

農業者의 老後保障과 經營移讓을 통한 構造政策의 推進을 目的으로 發足한 農業者年金制度는 今年으로 20年째를 맞이하여 이제는 農村에 완전히 定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現在 加入者 수는 全國에 62萬人(平成2年5月末現在)이며, 農業者年金을 受給하고 있는 사람은 56萬人에 달하고 있다. 年金의 年間 支給總額도 2,400億圓에 달하여 農村에서 없어서는 안될 存在가 되었다. 人間으로 말하자면 20歲를 맞이한 今年을 急速히 變遷하는 現在의 農業·農村의 實情에 對應하기 위하여 大膽인 制度改正이 되어 더욱 充實해졌다.

農業者年金業務를 行하기 위하여 全國段階에는 農業者年金 基金이 設치되어 있고, 市町村段階에서의 業務는 農業委員會와 農協에 委託되어 있다. 다음에서 農業委員會가 行하는 業務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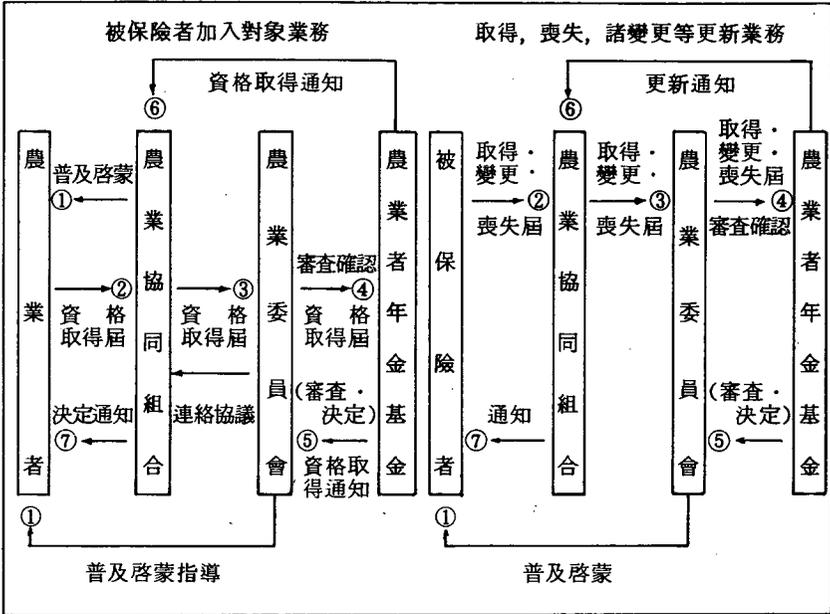
農業者年金 業務는 農業者의 生活·經營과 密着되어 있으므로 農業委員會 業務中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同時에 더욱 더 重要한 것으로 되어왔다(農業委員會法上的 位置로는 第6條 第2項 業務에 該當된다).

### 가. 農業者年金 加入業務와 加入促進

農業者年金은 農業者年金基金法에 근거하여 行하는 公的 年金制度의 하나이며 同制度의 構造·內容에 대하여 農業者들에게 알려줄 必要가 있다. 그래서 農業委員會는 우선 이 制度에 대하여서 啓蒙普及 및 加入促進을 行한다. 특히 今年에는 制度改正이 크게 이루어져 平成3年4월부터 施行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改正內容을 널리 알리는 것이 대단히 重要하다.

農業者年金의 加入節次는 地元の 農業委員會 및 農協을 통하여 行하

<圖 II - 13> 農業者年金業務 흐름



여 진다. 農協에서 接受된 農業者 資格取得届(任意加入에서는 「資格取得申請書」)는 農協에서 必要한 點檢・補正을 거친 후 農業委員會에 送付된다. 農業委員會는 이것을 審査・確認하고 農業者年金基金으로 送付한다 (<圖 II - 13> 參照) .

農業者年金基金은 이것을 審査한 후 資格取得決定 通知를 農業委員會, 農協에 보내고 農協을 통하여 届出農業者에게 決定 通知를 한다. 資格의 喪失, 變更등의 更新業務도 같은 방법으로 農業委員會에 의한 審査・確認을 거쳐서 행하여 진다.

이러한 加入節次와 併行하여 加入 促進이 크게 必要하다. 現在 加入 資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農業者年金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未加入者가 全國에 14 萬人이 있다. 이 수는 加入者總數의 22%에 該當한다. 制度의 安定化를 위하여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加入促進을 권장할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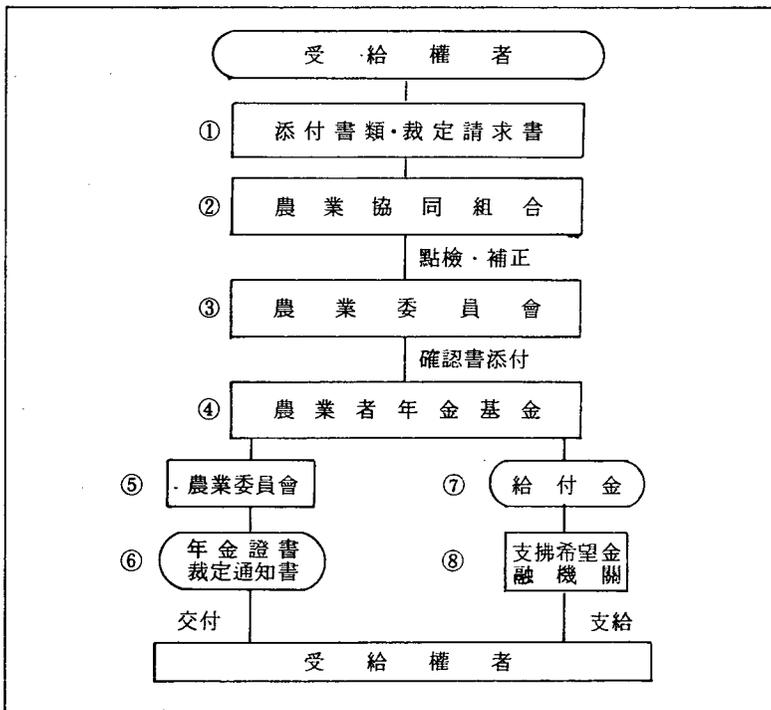
그러기 위해 農業者年金基金에서는 各 市町村마다 目標을 設定하고 그 達成에 努力하고 있다.

나. 農業者年金 支給業務와 適格한 經營移讓 推進

農業者年金에는 「經營移讓年金」과 「農業者老齡年金」의 두 種類가 있다.

受給하는데는 우선 受給權者가 農協에 必要한 書類를 添付하여 「裁定請求書」를 提出하고, 農協은 必要한 點檢·補正을 한 다음에 農業委員會에 送付한다. 農業委員會에서는 農地의 權利移動을 中心으로 經營移讓의 內容 및 諸名義의 變更등을 하여 「確認書」를 作成하고, 이것

<圖II-14> 年金支給節次



을 裁定請求書에 첨부하여 農業者年金基金에 送付한다. 基金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審査裁定을 행하고, 이를 農業委員會를 통하여 請求者에게 「裁定通知書」와 「年金證書」를 交付한다. 두 種類의 年金中 經營移讓年金은 經營移讓이라 하는 行爲에 의하여 처음으로 受給이 可能하여 진다. 따라서 農業者에게 어떻게 適正한 經營移讓을 하여 주는가의 指導도 이러한 受給節次와 함께 併行하는 것이 農業委員會의 重要한 業務로 되어 있다 (〈圖Ⅱ-14〉參照).

#### 다. 離農給付金 支給業務

離農給付金은 農業者年金에 加入하지 못한 사람으로 30 a(道南은 除外, 北海道는 1ha) 以上の 自作地를 포함하는 農地를 耕作하여 온 經營主(20歲以上 70歲未滿에 限함)가 農業者年金 加入者, 道府農業公社 등에 農地 등을 매도하든지 10年 以上の 期間으로 賃貸하고 離農한 경우에 그 面積에 따라 30萬円, 70萬円, 100萬円の 給付金を 支給하는 制度이다.

이번의 制度改正에서 이 離農給付金制度도 改善이 되었는데 上記의 處分面積에 應분한 給付外에 離農計劃書의 廢止 등 一部事務의 簡素化가 이루어졌다.

具體적으로 보면 農業委員會는 離農者로부터 「離農給付金支給申請書」의 提出을 받으면 內容의 點檢·補正 등을 행하고 「意見書」를 첨부하여 農業者年金 基金에 送付하도록 되어 있다.

#### 라. 農地等 買入資金의 融資業務

離農希望者로부터 農地 등을 一括하여 買入코자 하는 農業者年金의 被保險者에 대하여 必要한 資金을 長期低利(年3%, 30年 以內 償還)의 條件으로 融資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農業委員會는 「農地等 買入資金借受申請書」의 受理, 資金貸付의 相對方, 離農希望者要件 등의 審査, 意見書 作成 등의 業務를 행한다.

### 마. 農地等の 買入·賣渡·貸借業務

農業委員會는 農業者年金基金의 委託을 받아 하는 業務이며 農業者年金의 被保險者 등으로부터 離農하는 農地를 매입하여, 이 農地를 規模擴大를 希望하는 被保險者 등에 長期低利의 年賦拂의 條件으로 매도한다. 이번의 制度改正에서 來年度부터는 農地 등의 貸借業務가 추가되었다.

農地 등의 貸借業務를 새로 추가한 것은 最近 中山間地域을 中心으로 經營移讓의 相對方을 找지 못하는 地域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여 經營移讓의 相對方을 찾아 보아도 找지 못할 경우에는 最終으로 農業者年金基金이 農地 등을 받는 쪽 즉 購入하거나 賃貸하는 사람을 年金의 需給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現在 貸借業務의 具體的인 內容 및 推進方法에 대하여는 檢討가 進行되고 있는 段階이지만 여하간 基金을 借入한 農地 등의 管理 및 貸付의 相對方을 找는데는 農業委員會의 役割이 大端히 重要的 것은 틀림없다.

더욱 買入業務는 離農者로부터 「農地等讓渡申請書」를 受理하고 審査調書, 農地評價調書의 作成, 賣買契約의 締結, 移轉登記 등의 事務를 行한다. 또 賣渡業務는 賣渡農地의 公告, 農地等評價調書의 作成, 「農地等買受申請書」의 受理, 相對方의 選定, 調書의 作成, 賣買契約의 締結, 移轉登記 등에 대한 事務를 취급한다.

### 바. 改正된 農業者年金制度 概要

最近에 農村 高齡化의 進展과 兼業化의 深化는 發足 20年을 거친 農業者年金制度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번의 制度改正에서는 ① 年金財政基盤의 長期安定, ② 農村 高齡化의 進行에 對應한 適期의 經營移讓 推進과 老後保障의 安定, ③ 經營移讓을 통한 營農意欲이 높은 農業者의 規模擴大 促進의 3가지 點에 重點을 두었다. 以下에서 改正된 7가지를 살펴보자.

① 年金財政이 安心할 수 있게 되었다.

農業者年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加入者數가 均衡을 이룰 때까지 政府가 새로운 特別追加負擔을 하도록 法律에 規定하였다.

② 經營移讓을 할 수 있는 年齡을 65歲까지 延長하였다.

60歲를 초과하여도 心身이 健壯한 사람이 增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개개 農業者의 選擇에 의하여 65歲前까지의 기간에 適期의 經營移讓을 促進하기로 한다. 給付의 型도 이제까지의 型으로부터 終身同一型(생선목型)으로 變更되어 安定度가 增加되었다.

③ 35歲未滿은 全員 割引保險料로 한다.

① 農業에 常時 從事하고 있을 것, ② 經營主가 아닐 것, ③ 父母의 經營面積이 一定以上일 것 등의 3가지 條件을 廢止함에 따라 35歲未滿 加入者의 保險料는 全員 3割 割引이 된다.

④ 俸給生活 後繼者와 第3者에게 分割移讓하여도 年金을 받을 수 있다.

① 이러한 것은 俸給生活 後繼者와 農業者年金 加入者에게 分割하여 貸付하는 方法을 認定하는 것이다.

② 農業者年金 加入者에게 3/4以上 貸付하면 加算付年金을 받을 수가 있다.

③ 俸給生活 後繼者에게 貸付한 農地를 農業者年金 加入者 등에게 貸付를 更新하여도 支給停止가 되지 않는다.

⑤ 加入期間에 會社勤務期間이 包含된다.

일단 農業者年金에 加入한 후에도 會社에 勤務할 경우 會社勤務期間中에서 5年(農業從事가 必要)까지는 年金受給에 必要한 加入期間(20年)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⑥ 死亡加入者의 妻는 特例加入이 된다.

農業者年金 加入者 등의 死亡으로 인하여 經營主로 된 配偶者가 年

金受給에 必要한 加入期間(20年)을 채울 수 없을 경우 加入의 特例  
를 인정하여 受給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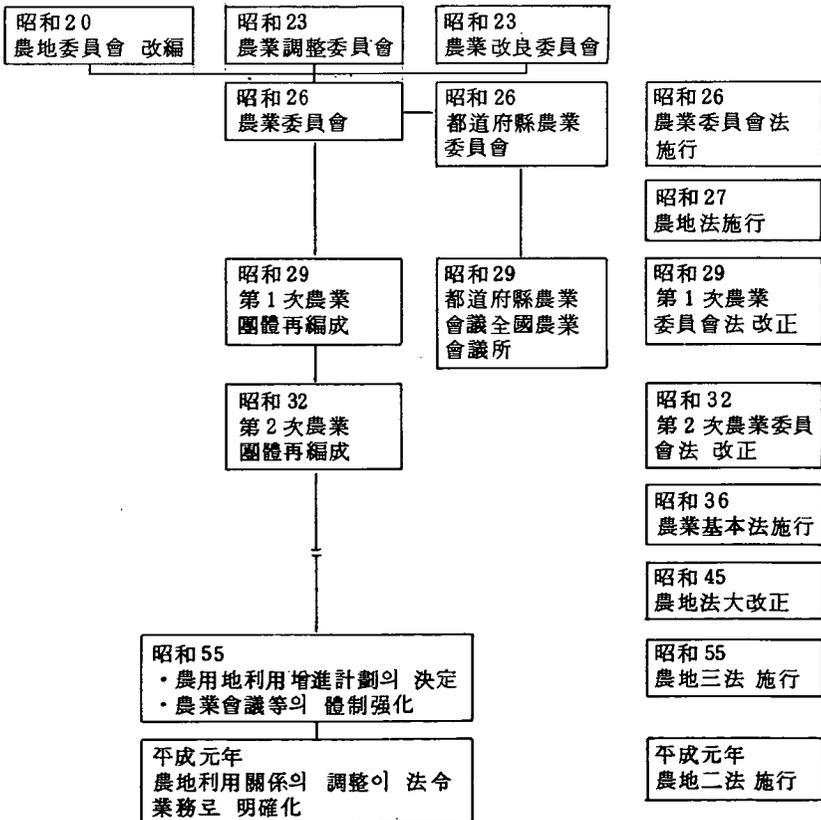
[7] 脫退·死亡一時金額이 引上된다.

## 6. 農業委員會 組織의 발자취

日本の 農業과 農政은 現在 歷史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큰 轉換期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이 「農業委員會는 現在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使命과 役割을 관찰하여 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이 制度가 어떠한 時代背景下에서 어떠한 期待를 질머지고 誕生하였으며 그것이 그 후 어떻게 變遷하여 왔는가를 살펴보자(〈圖Ⅱ-15〉參照).

〈圖Ⅱ-15〉

農業委員會制度 變遷



### 가. 三委員會의 統合으로 農業委員會 發足

農業委員會는 昭和 26 年 市町村에 설치된 行政委員會인 農地委員會, 農業調整委員會, 農業改良委員會의 3 委員會를 統合하여 發足한 것이다.

#### (1) 農地改革에서 農業改革으로

制度發足の 目的은 農地改革의 成果를 維持하는 것과 동시에 農業의 近代化를 推進하는데 적응하는 農業者의 代表機關을 整備하는데 있었다.

當時 「農地改革으로부터 農業改革으로」가 關係者의 슬로간(目標)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며 오늘까지 변함이 없는 農業委員會 組織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昭和 26 年에 第 1 回 農委選舉

農業委員會法은 昭和 26 年 3 月 28 日 第 10 國會에서 可決成立되었고, 同月 31 日에 交付施行되어 同年 7 月 19 日에 第 1 回 農業委員會 委員選舉가 公職選舉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當時의 農業委員會制度로서는 市町村農業委員會 以外, 都道府縣 段階에서도 行政委員會로서 都道府縣農業委員會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全國段階에서는 法的인 組織은 없었다.

### 나. 第 1 次 農業委員會法 改正

農業委員會의 發足後 얼마되지 않은 2 年만에 農業委員會關係者中에서 農業委員會를 行政委員會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農政指導 團體로 하기 위하여 農業生産의 技術指導와 農業者의 利益代表機能을 합쳐 행하는 農業團體로 改編하여야 한다고 강한 意見을 提起하였다.

#### (1) 農業團體再編成으로 發展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生産技術指導의 專擔者를 中心으로 한 系統農協

組織과 對立하게 되어 소위 말하는 第1次 農業團體再編成問題로 發展하였다.

그리하여 政府는 昭和28年3月の 第15國會에 ① 市町村農業委員會에 技術員을 設置하고, ② 農業·農民의 利益代表機關으로서 都道府縣 및 全國에 農業委員會議所를 設置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農業委員會法의 改正案과 農業協同組合의 總合指導組織으로서 都道府縣 및 全國에 農業協同組合 中央會를 設置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農業協同組合法의 改正案을 提出하였다.

이 2개의 法案에 대하여 當時 自由黨과 改進黨 사이에서 調整 進行되어 昭和29年4月の 第19國會에 自由·改進黨共同提案에 의한 農業委員會의 改正案이 다시 提出되었다.

이 改正案에서는 먼저의 政府案에 있었던 ① 農業委員會의 技術員을 두는 規定이 削除되고, ② 農業委員會議所に 있어서도 農業委員會의 系統組織뿐 아니라 廣範한 農業者 및 農業團體의 代表機關으로서 農業會議(所)을 설치한다고 하는 대단히 重大한 變更이 가하여졌다.

## (2) 昭和29년에 農業會議 設立

그리하여 이 改正案은 먼저 農協法改正案과 함께 대략 原案대로 成立시키고 第1次 農業團體再編成 問題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同法の 施行에 의하여 昭和29年8月부터 年末 사이에 都道府縣農業會議가 設立되었고, 同年11月에는 全國農業會議所가 設立되었다.

## 다. 第2次 農業委員會法 改正

그 후 1년도 經過하지 않는 昭和30년에는 다시 農業團體의 再編成 問題가 提起되었다. 直接的인 原因은 同年4월에 河野 農林大臣이 全國 農業會議所에 대하여 실시한 「現在의 町村合併에 따라 農政浸透上 취하여야 할 對策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論議였다.

이 論議의 意圖中에는 農業團體制度의 問題도 包含되어 있었다. 그 후의 曲折이 소위 말하는 第2次 農業團體再編成問題이다.

### (1) 새로운 農業團體再編成問題

農業委員會系統에서는 農業委員會를 解體하고, 農業者의 利益代表活動을 행하는 新團體를 設立하여야 한다는 方向으로 意見이 수렴되었지만 農協系統中에서 이에 反對하는 意見이 강하였다.

昭和30年11月30일에 행한 農林大臣의 論議에 대한 答申에서는 ① 市町村에 新團體를 設立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견과 ② 農委 기타 機關·團體는 그대로 두고 그 기능을 充實히 해야 한다는 意見으로 갈라져 단 일화가 되지 못하였다.

이 答申을 받고 農林省에서는 農業團體制度의 改正에 대하여 各種의 試案이 檢討되었지만 結局, 新團體의 設立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農業委員會法도 必要한 것의 改正만을 하는데 그치고 昭和32年의 第26國會에서 議員提案에 위한 改正案이 成立되었다.

### (2) 農地部會의 設置

主要한 改正點을 보면 農業委員會에 대한 것은 ① 選舉委員의 定數를 10~40人으로 擴大, ② 5人以內였든 選任委員을 總合農協 및 農業共濟組合이 推薦한 理事는 組合마다 한사람씩 選任하고 더욱이 市町村議會가 推薦한 學識經驗者를 5人以內로 選任, ③ 農業委員會에 새로이 部會制를 두어 農地部會를 設置, ④ 農業委員會가 管掌하는 事務를 擴大하고, 農業 및 農民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意見을 公表하여 行政廳에 建議하고 그 諮問에 응하여 答申을 할 수 있게 하고, ⑤ 農業委員會 設置의 職員을 農地主事 기타의 職員으로서 하며, 農地主事의 身分을 保證하는 規定을 整備하며, ⑥ 그리고 農業會議에 대한 것은 그 組織을 改正하고 市町村마다 農業委員會가 指名한 一人을 農業會議의 會議員으로 하고, ⑦ 農地部會를 반드시 設置하는 것 등이다.

## 라. 基本法農政・構造政策 推進

이의 改正以後, 昭和 55 年の 農地三法까지는 이렇다 할 農業委員會 制度의 改正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이에 農業委員會組織은 組織的・財政的인 制約과 부딪치면서 「農業改革」에 努力하여 왔다.

### (1) 「土地와 사람」對策에 努力

自立經營의 育成을 目標로 한 農業基本法의 制定 運動부터 農業生産法人制度의 創設 등 다른 機關・團體에 앞서서 規模擴大를 위하여 公的機關에 의한 農地移動의 方向設定 必要性을 呼訴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昭和 44 년에 成立된 農業振興地域整備法 第 18 條에서 「農業委員會가 행하는 農地 權利移動의 幹旋은 經營規模의 擴大, 農地の 集團化 기타 農地保有 合理化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그 方向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同年부터 農地移動適正化幹旋事業이 實施되었다.

다음으로 系統組織은 昭和 45 年の 農地法改正을 위시하여 農業者 年金 基本法, 農村工業導入法, 國有林活用法 등 一連의 構造政策關連法 制定의 原動力이 되었다. 더욱이 昭和 50 年の 農振法 改正 및 昭和 55 年の 農地三法(農用地利用增進法の 制定, 農地法・農業委員會法)의 改正에 있어서는 스스로 그 선두에 서서 組織 全體가 制定運動에 努力하였다.

### (2) 農地流動化에 全力

實踐面에서도 農地法 등에 의한 「農用地의 確保와 效率的 利用」에 責任을 지는 동시에 農地移動의 幹旋,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 利用權設定 등의 개발과 農地銀行活動(本格的으로는 昭和 55 年 以後) 등에 努力하고, 意欲있는 農業者의 經營確立을 위하여 農地流動化에 全力을 다하여 왔다.

한편 經營・農業專擔者 對策은 自立經營育成特別事業을 中心으로 한

經營確立對策, 後繼者の 確保 및 農業者의 就業對策, 農業者年金 業務를 위시하여 先驅的인 經營者의 自主的인 組織 만들기를 支援하는 등 近代的인 經營의 確立에 努力하여 왔다.

#### 마. 農地三法에서 農委의 機能強化

農地三法 制定의 具體的인 努力은 昭和50年의 農振法 改正에 의해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을 發足한다고 하는 農地制度上의 새로운 事態도 있어 昭和50年度 豫算에서는 全國農業會議所에 「農業委員會等 制度研究會」의 設置가 認定된 것이 原因이다.

研究會는 2年間の 檢討 結果, 昭和52年 4월에 報告書를 完了하였다. 더욱 同年 11月에는 與黨인 自民黨 農林部會中에 「農業委員會等 小委員會」가 設치되어 精力的인 檢討를 한 結果 昭和54年 6월에 中間報告를 綜合하여 農地法制의 整備와 맞는 農業委員會 등의 制度改正의 方向을 指示하였다.

農業委員會 組織에서는 이 사이에 制度改正의 方向에 대하여 全國의 農業委員會로부터 意見を 收斂하는 同時에 組織 全體가 運動을 展開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農林水産省에서는 日本의 農地制度上에서 劃期的이라고 말하는 農用地利用增進法の 制定, 農地法의 一部改正과 함께 農業委員會法의 一部改正을 始作하여 昭和55年 3月の 第91國會에 「農地關連三法案」으로서 提出하여 同年 5월에 政府案을 一部修正하여 成立시켰다.

##### (1) 利用增進法이 法令業務로

이 가운데서 農業委員會制度和 關連되는 주된 內容은 우선 새로운 農地政策의 中心이 되는 農用地利用增進法에서 ① 市町村이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을 作成할 경우는 農業委員會가 決定, ② 農業委員會가 農地事情

의 改善 등 農委法第 6 條第 2 項의 事務를 淸급하게 한 것은 利用權設定等 促進事業에 도움을 주려고 規定한 것이다.

이것은 農地流動化를 위하여 地域의 合意形成에서부터 計劃案의 作成, 더욱이 計劃의 決定에 대하여 積極的으로 責任진다는 農業委員會의 새로운 役割(使命)을 明白히 하는 同時에 農委法第 6 條第 1 項(소위 法令業務)에 農地法과 더불어 農用地利用增進法에 의한 새로운 業務를 더 追加한 것이다.

## (2) 農委會長을 會議員으로

農業委員會法의 改正으로서 ① 選舉委員의 定數를 10~30人(但, 農林水産大臣이 정하는 一定의 基準에 該當하는 市에 대하여는 從來와 같음), ② 政令指定都市에서는 特別한 事情이 있을 경우는 知事의 承認을 얻어 區의 範圍를 넘어 農業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으며, ③ 農業會議의 會議員은 原則으로서 農業委員會長으로 구성되며, ④ 農業會議의 部會制를 廢止하여 常任會議員制度를 설치하는 것 등이 주된 改正內容이었다.

## 바. 農地二法에 의한 새로운 役割

日本の 農業·農村이 당면하고 있는 最大의 課題는 土地利用型 農業을 中心으로 한 地域農業의 構造改革을 加速的으로 推進하는 것과 農山村地域의 活性化이다.

平成元年 9 월에 施行된 農地二法(改正 農用地利用增進法과 特定農地貸付法)은 이러한 課題에 呼應하기 위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한다고 할 수 있다.

農業委員會는 改正農用地利用增進法中에서 ① 認定農業者에 대한 農用地 利用關係의 調整, ② 遊休農地에 대한 是正指導가 第 61 條 第 1 項의 必須 法令業務로서 明確히 규정되어 構造政策의 中心的 實施·推進 機關으로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또 農業會議은 廣域的인 農用地 利用關係의 調整이 必要할 때는 關係 農業委員會에 대하여 資料·情報의 提供 등과 같은 協力을 하도록 하는 것이 第40條第1項의 法令業務로서 처음으로 明確化되었다. 이에 따라 農地利用關係의 調整에 관한 具體的 業務를 통하여 農業委員會와의 연결이 더욱 強化되었다.

### (1) 特定農地貸付의 承認權 等

特定農地貸付法은 地方公共團體 및 農協이 일반 시민의 農地利用 수요가 높아짐에 호응하여 特定農地貸付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農業委員會에는 特定農地貸付에 있어서 그 「承認權」과 「取消權」을 부여하였다.

### (2) 市民農園整備促進法の 制定

特定農地貸付와 入園契約方式에 의한 制度를 根據로 하여 平成2年6월에 成立된 市民農園整備促進法에서는 市民農園區域의 指定 및 關設의 認定을 市町村長이 행할 경우에는 農業委員會의 「決定」을 거치게 하였다.

農業委員會는 이러한 市民農園關係의 法律에 의하여 市民的 農地利用과 본래의 農業的 土地利用과의 調整을 도모한다고 하는 새로운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 (3) 21世紀를 向한 努力

이와 같이 農業·農村을 둘러싼 새로운 狀況下에서 構造政策을 더욱 推進하고 農地의 公的管理를 수행하는 農業委員會의 役割은 더욱 더 重大하게 되었다. 그래서 農林水産省은 平成元年末에 「構造政策推進 等を 위한 農業委員會 等の 體制強化에 대하여」라고 하는 通達을 下達하여 構造政策推進을 위하여 農業委員會의 體制整備를 推進하도록 行政指導를 하고 있다.

또한 農業委員會系統組織으로서도 地域農業의 構造改革에 기여하는 農

業委員會의 責任 增大와 期待의 高潮에 보답하기 위하여 「農業改革의 先頭에서서 行動하는 農業委員會活動」을 確立하는 運動을 全國運動으로서 展開하고 있다.

그러므로 平成元年 12 月の 全國農業委員會會長大會에서는 모든 農業委員會에서 活動의 規範이 되는 「農業委員會憲章」과 具體的인 「活動計劃」을 決定할 것을 상의하여 그 推進에 組織全體가 努力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의 발자취는 農業改革에의 努力과 이것을 實施·推進할 수 있는 系統組織制度의 整備 歷史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意欲있는 農業者의 經營 確立과 그것을 위한 農地의 確保와 流動化의 促進, 더욱이 農業經營者의 自主的 組織形成 등 構造政策의 더한층 推進을 擔當하면서 이 課題를 達成하는 것만이 21世紀로 향하는 產業으로서 農業의 確立을 원하는 여러사람과 農業委員會關係者의 責務라고 말할 수 있다.

### Ⅲ. 農村總合整備事業

#### 1. 農村總合整備事業

##### 가. 沿革

日本の 農業·農村은 高度 經濟成長의 過程에 있어 都市로의 人口流出, 農家와 非農家の 混住化, 農業의 兼業化, 農村의 高齡化가 進行되는 등 여러가지 形態로 變貌하여 왔다. 最近에는 農業·農村이 수행하는 多面的인 機能을 維持하고, 發展시키는 同時에 農村地域의 活性化, 定住化를 促進하고 國民經濟 및 國土의 均衡있는 發展을 도모하여 나가는 重要性이 再認識되어 가고 있다.

특히 都市近郊農村에 있어서는 土地와 水資源 利用秩序의 混亂이 顯著하여 겹으며 이러한 것의 整備가 緊急한 課題이다. 또 米價引下를 위시하여 農産物의 需給均衡, 한편으로는 農産物의 輸入自由化 등 격변하는 農業情勢 아래에서는 中山間地域을 中心으로 立地條件에 立脚한 整備의 必要性이 增大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저마다의 地域에 있어서 自然的, 社會的, 歷史的 諸條件에 立脚하여 農村地域의 住居環境을 包含한 總合的·計劃的인 整備의 必要性이 增大하고 있다.

이러한 諸情勢를 背景으로 하여 農村總合整備事業은 農村과 農業이 生産의 場인 同時에 農村住民의 生活의 場이라고 하는 特質에 立각하여 農業生産基盤의 整備와 합쳐서 이것과 計劃的이고 一體적으로 整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農村總合整備事業은 適切한 事業集落에 있어서 環境基盤 및 生活環境의 整備를 행하여 農村에 부과된 役割의 수행 및 健全한 農村의 建設에 기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實施하고 있는 중이다.

本事業은 다음 4 가지 事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農村基盤總合整備 파이롯트事業

昭和 47 年度에 制度化된 事業에 대체로 市町村程度의 規模를 갖는 구역에 있어 파이롯트의으로 都道府県營事業을 행한다. 더욱 昭和 52 年度以後, 新規事業은 행하지 않았다.

(2) 農村基盤總合整備事業 (小規模 農村基盤總合整備파이롯트事業)

一般型 : 昭和 51 年度에 制度化된 事業이며 農村基盤總合整備 파이롯트 事業을 一般制度化한 것이다. 數個 集落程度의 넓이를 가진 구역에 대해 주로 市町村營事業으로 한다. 더욱 本事業은 昭和 52 年度에 農業集落排水施設整備特例制度 (昭和 58 年度以後, 農業集落排水事業으로 移行) 昭和 55 年度에 生活環境整備特例制度를 각각 創設하였으며, 또 平成元년에는 中山間地의 採擇基準을 緩和하는 制度擴充이 計劃되었다.

集落型 : 昭和 62 年度부터는 農村의 集落에 있어서 土地의 計劃의 利用을 企圖, 良好한 營農條件과 住居環境을 確保하여 農業生産基盤과 生活環境의 一體的 整備를 推進하기 위하여 集落型 (農業集落整備事業) 를 實施하고 있다.

平成 2 年度에는 周邊農地의 土地·水資源 利用의 整備等 良好한 營農條件의 確保를 圖謀하면서 農村과 都市의 交流 등을 促進하는 集落農園 (市民農園) 을 整備하는 「集落農園型」을 創設하였다.

(3) 農業集落排水事業

昭和 58 年度에 새로이 制度化된 事業으로서 現在까지 적은 農村基盤總合整備事業의 農業集落排水施設整備特例制度로서 實施되어 온 事業을 獨立시킨 것이다. 數個의 集落程度의 넓이를 가진 구역에 있어 農業用排水의 水質保全과 併合하여 生活環境의 改善을 目的으로 糞尿, 生活雜排水 등의 汚水등을 處理하는 施設의 整備를 주로 하여 市町村營으로

행한다.

#### (4) 農村總合整備모델事業

昭和 48 年度에 制度化된 事業이며 대략 市町村程度의 넓이를 가진 구역에 있어 모델과 據點을 위주로 市町村營事業으로서 한다. 農村總合整備計劃(國土廳所管) 및 農村總合整備實施計劃에 근거하여 事業을 實施하고 있다. 더욱 農村總合整備計劃은 昭和 63 年度부터 第 4 期 計劃에 들어 갔다.

平成 2 年度에는 從來의 一般型事業에 더하여 「農政의 基本方針」가운데서도 緊急한 課題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生産성이 높은 土地利用型農業등의 實現과 地域의 多様な 要求를 근거로 特色있는 地域造成과 地域의 活性化에 기여하기 위하여 市町村과 提携를 圖謀하면서 事業規模를 擴大하고 重點的, 集中的으로 生活環境基盤등을 整備한다. 「地域振興特別對策推進型」(總事業費는 現行的 約 3 倍(30 億円 程度) 豫定 工期는 1/2 程度(7~8 年))을 創設하고 있다.

이 밖에 昭和 62 年度 補正부터 NTT 資金을 活用하여 生活環境의 整備 促進을 圖謀하고 있다.

#### 나. 農村基盤總合整備事業(擴充): 集落農園型의 創設

##### (1) 趣 旨

市民農園의 開設에 맞추어 周邊農地의 土地·水資源 利用의 秩序化 등 良好한 營農條件을 確保하는 同時에 當該地域의 實情에 맞는 農園을 整備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로 인하여 農村基盤總合整備事業에 集落農園型을 創設하고 當該地域의 土地利用計劃을 基盤으로 한 周邊農地의 整備와 一體적으로 農園의 開設에 必要한 基盤 및 附帶施設의 整備를 行함과 同時에 農村의 活性化, 定住化의 促進등에도 기여한다.

## (2) 事業內容

周邊農地와 一體의인 小區劃 農園, 附帶施設등을 다음과 같이 整備한다.

- 事業主體：市町村, 農協等(從前과 同一)
- 補助率：55%(從前과 同一)
- 採擇基準：集落農園의 整備를 포함한 總合的인 整備計劃이 策定되어 있는 등

## (3) 平成 2 年度 豫算額

- 25,272,712(26,838,910) 千円으로서 但, ( )內는 農村基盤 總合整備事業全體豫算額임.

## (4) 擔當課：農林水産省 構造改善局 整備課

다. 農村總合整備모델事業(擴充)：地域振興特別對策推進型的 創設

## (1) 趣 旨

「農政의 基本方針」中에서도 緊急한 課題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生産性이 높은 土地利用型農業등의 實現과 地域의 多樣한 要求를 근거로, 特色있는 地域造成등 地域의 活性化에 기여하기 위하여 市町村과 提携를 圖謀하면서 事業規模를 擴大하여 重點的, 集中的으로 生活環境 基盤등을 整備하는 「地域振興特別對策推進型」을 創設한다.

## (2) 事業內容

- 事業主體：市町村等(從前과 同一)
- 總事業費：現行的 約 3 倍(30 億円 程度)
- 豫定工期：7~8 年 豫定
- 補助率：50%(從前과 同一)
- 地區要件：農村總合整備計劃을 策定하여 土地利用型農業등의 確立을 위한 施策에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등

(3) 平成 2 年度 豫算額

- 49,126,643 (48,782,850) 千円으로서 但, ( ) 內는 農村  
總合整備모델事業 全體豫算額임.

(4) 擔當課：農林水産省 構造改善局 整備課

## 2. 農村總合整備事業 概要

### 가. 農村基盤總合整備파이롯트事業

#### (1) 事業目的

農村에 대해 長期的 觀點에서 볼때 各種 施設의 適正한 配置를 包含한 土地利用區分을 明確히 하면서 近代的인 農業을 展開하기 위하여서는 必要한 諸條件의 整備와 推進을 위하여 農業生産基盤의 整備를 綜合的으로 實施하는 것을 主體로 하여 이와 關連되는 農村生活環境 基盤의 整備를 파이롯트로 행한다.

#### (2) 事業內容

- 農業生産基盤整備
- 農村環境基盤整備

#### (3) 對象地域

- 대개 舊市町村 程度의 區域

#### (4) 事業主體

- 都道府県

#### (5) 2年度 豫算

- 25,273 百萬円 ( 94.2 % ) 으로서 但, ( ) 內는 對前年比임.

#### (6) 事業創設年度

- 昭和 47 年度

#### (7) 事業項目

##### (가)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

- 圃場整備事業

- 農業用 用排水施設整備
- 農路整備
- 農用地開發
- 農用地 改良, 保全
- (나) 農村環境基盤整備事業
  - 農業集落排水施設整備
  - 用地整備
  - 農村公園綠地整備
- (다) 集落農園基盤整備 事業
- (라) 特認事業

(8) 補助率

- 內地 : 60% ( 50% )

( ) 內는 2年度의 補助率임.

\* 昭和 51 年度로서 新規採擇은 終了

나. 農村基盤總合整備事業

(1) 事業目的

農村에 대해 長期的 觀點에서 各種 施設의 適正한 配置를 包含한 土地利用 區分을 根據로 하여 農業集落을 單位로 한 農業生産基盤 및 이것과 關連을 가진 農業生産環境基盤의 整備를 總合的으로 實施하여 農村地域社會의 發展에 기여한다.

(2) 事業內容

- 農業生産基盤整備
- 農村環境基盤整備
- 集落土地基盤整備

(3) 對象地域

- 數個의 農業集落內의 區域

(4) 事業主體

- 市町村，都道府県，土地改良區，農協等

(5) 2年度 豫算

- 農村基盤總合整備사업 豫算에 包含

(6) 事業創設年度

- 一般型：昭和 51 年度
- 集落型：昭和 62 年度

(7) 事業項目

(가)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

- 一般型
  - 圃場整備事業
  - 農業用 用排水施設整備
  - 農路整備
  - 農用地開發
  - 農用地의 改良，保全
- 集落型
  - 圃場整備事業
  - 農業用 用排水施設整備
  - 農路整備
  - 農用地開發
  - 農用地의 改良，保全

## (나) 農村環境基盤整備事業

## ○ 一般型

- － 農業集落道整備
- － 農業集落排水施設整備
- － 營農飲雜用水施設整備
- － 農業集落防災安全施設整備
- － 用地整備
- － 農村公園綠地整備
- － 資源利活用基盤整備

## ○ 集落型

- － 農業集落道整備
- － 農業集落排水施設整備
- － 農業飲雜用水施設整備
- － 農業集落防災安全施設整備
- － 用地整備
- － 農村公園綠地整備
- － 資源利活用基盤整備

## (다) 集落土地基盤整備事業

- 集落型 事業에만 該當

## (라) 集落農園基盤整備事業

- 一般型과 集落型 兩者에 該當

## (마) 特認事業

- 一般型과 集落型 兩者에 該當

## (8) 補助率

- 內地, 北海道, 離島 : 55% ( 50% )
- 沖繩 : 75% ( 75% )
- 奄美 : 65% ( 55% )

( ) 內는 2年度의 補助率임.

## 다. 農業集落排水事業

### (1) 事業目的

農業用 用排水保全, 農水用 用排水施設の 機能維持 또는 農村生活環境改善을 圖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함과 아울러 公共用水域의 水質保全에도 寄與할 수 있도록 農業集落에 있어 糞尿·生活維持水등의 汚水 또는 雨水를 處理하는 것이다.

### (2) 事業內容

- 農業集落排水(施設整備)

### (3) 對象地域

- 數個의 農業集落內의 區域

### (4) 事業主體

- 市町村, 都道府県, 土地改良區, 農協등

### (5) 2年度 豫算

- 31,098 百萬元 ( 115.6 % )
- ( )內는 對前年比임.

### (6) 事業創設年度

- 昭和 58年度

### (7) 事業項目

- 農業集落排水施設整備

### (8) 補助率

- 內地, 北海道, 離島 : 55% ( 50% )
- ( )內는 2年度의 補助率임.

## 라. 農村總合整備모델事業

### (1) 事業目的

農業生産의 향상을 圖謀함과 同時에 農村生活環境을 整備하고 農業者 등 居住者의 生活 向上을 圖謀하기 위한 모델의 據點의 으로 農業生産 基盤의 整備와 併合하여 農業集落의 生活環境 條件 整備를 圖謀한다.

### (2) 事業內容

- 農業生産基盤整備
- 農村環境基盤整備
- 農村環境施設整備

### (3) 對象地域

- 大개 市町村 程度의 區域

### (4) 事業主體

- 市町村, 都道府県, 土地改良區, 農協等

### (5) 2年度 豫算

- 49,127 百萬円 ( 188.7 % )
- ( ) 內는 對前年比임.

### (6) 事業創設年度

- 昭和 48 年度

### (7) 事業項目

#### (가)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

- 圃場整備事業
- 農業用排水施設整備
- 農路整備

- 農用地開發
- 農用地的 改良, 保全

(나) 農村環境基盤整備事業

- 農業集落道整備
- 農業集落排水施設整備
- 營農飲雜用水施設整備
- 農業集落防災安全施設整備
- 用地整備

(다) 農村環境施設整備事業

- 農業集落環境管理施設
- 農村環境改善센터
- 農村公園施設整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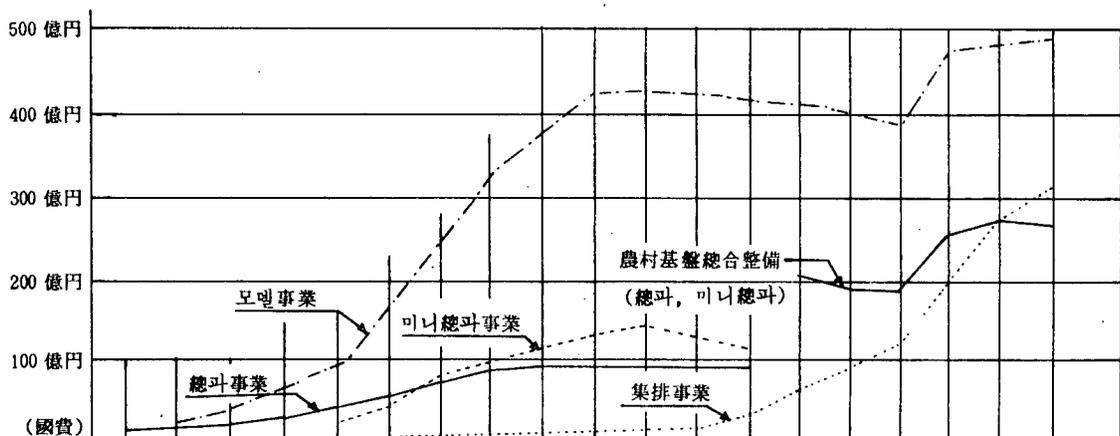
(라) 特認事業

(8) 補助率

- 內地, 北海道, 離島 : 50 % ( 50 % )
- 沖繩 :  $\frac{2}{3}$  (  $\frac{2}{3}$  )
- 奄美 : 60 % ( 52 % )

( ) 內는 2 年度の 補助率임.

### 3. 農村總合整備事業費 推移



年度豫算		昭和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平成	元	2	
豫算	農村基盤總合整備 파이롯트事業	(億円)	4.0	10.8	11.0	14.3	26.4	37.7	51.7	72.6	77.0	81.0	79.7	79.7	79.6	}							
	農村基盤總合 整備事業					8.0	28.2	65.0	97.5	112.6	136.9	148.9	138.4	135.0	}								
	農業集落排水事業						(1.7)	(5.3)	(6.1)	(6.9)	(8.7)	(12.0)	21.7	43.3	65.0	92.6	124.7	208.3	269.1	311.0			
	農村總合整備 모델事業			8.1	15.4	39.2	75.8	137.5	224.9	330.9	352.8	390.8	411.6	420.5	416.6	408.5	397.8	382.8	473.6	487.8	491.3		
	計		4.0	18.9	25.4	53.5	113.2	203.4	341.6	491.0	542.8	608.7	640.2	660.3	674.2	680.7	689.1	702.4	943.4	1,025.3	1,055.0		
	伸張率(%)		-	473.8	139.2	202.8	211.5	179.8	167.9	143.7	110.8	112.2	105.2	103.1	102.1	100.9	101.2	101.9	134.3	108.7	102.9		
	農業基盤整備費에서 占하는比率(%)		0.15	0.55	0.76	1.49	2.59	3.80	4.69	5.47	6.04	6.76	7.12	7.34	7.56	7.74	7.94	8.26	9.41	10.03	10.29		

註) 集落排水事業의 ( )는 農村基盤總合整備事業의 內數.

## 4. 農村總合整備事業 實施 地區數 推移

## (1) 農村基盤總合整備 파이릿트事業

年度 事項	47	48	49	50	51	52	53	54
新規採擇地區數 (累計)	4	6 (10)	5 (15)	5 (20)	4 (24)			
完了地區數 (累計)								
實施地區數	4	10	15	20	24	24	24	24

## (2) 農村基盤總合整備事業

年度 事項	51	52	53	54	55	56	57	58
新規採擇地區數 (累計)	20	105 (155)	116 (271)	112 (383)	115 (498)	91 (589)	52 (641)	51 (692)
完了地區數 (累計)					1	16 (17)	21 (38)	22 (60)
實施地區數	50	155	271	383	498	588	624	654

## (3) 農業集落 排水事業

年度 事項	52	53	54	55	56	57	58	59
新規採擇地區數 (累計)	9	4 (13)	8 (21)	5 (26)	14 (40)	15 (55)	16 (71)	45 (116)
完了地區數 (累計)			1	2 (3)	1 (4)	2 (6)	4 (10)	4 (14)
實施地區數	9	13	21	25	37	51	65	106

## (4) 農村總合整備 모닐事業

年度 事項	48	49	50	51	52	53	54	55
新規採擇地區數 (累計)	10	56 (66)	100 (166)	88 (254)	88 (342)	85 (427)	76 (503)	89 (592)
完了地區數 (累計)								1
實施地區數	10	66	166	254	342	427	503	592

55	56	57	58	59	60	61	62	63	元	2
	1		1 (2)			1 (3)	3 (6)			
24	24	23	23	22	22	22	21	18	18	18

59	60	61	62	63	元	2
33 (725)	27 (752)	24 (776)	26 (802)	34 (836)	34 (870)	58 (928)
27 (87)	27 (114)	38 (152)	66 (218)	72 (290)	105 (395)	
665	665	662	650	618	580	533

60	61	62	63	元	2
47 (163)	49 (212)	61 (273)	87 (360)	142 (502)	149 (648)
9 (23)	24 (47)	37 (84)	54 (138)	48 (186)	
149	189	226	276	364	465

56	57	58	59	60	61	62	63	元	2
84 (676)	85 (761)	86 (847)	70 (917)	70 (987)	63 (1,050)	55 (1,105)	49 (1,154)	36 (1,190)	30 (1,210)
5 (6)	8 (14)	4 (18)	8 (26)	17 (43)	26 (69)	24 (93)	45 (138)	52 (190)	
675	755	833	899	961	1,007	1,036	1,061	1,052	1,030

## 5. 農村總合整備事業 效果

區分	事業의 種類	農業生産面의 效果
生活 基盤	圃場整備 農業用排水 農道 農地開發 農用地的改良·保全	耕地의 汎用化, 營農의 機械化, 農業用 施設用地的 創設等 물 利用의 安定, 耕地의 汎用化等 營農의 機械化, 農產物 流通의 合理化等 經營規模의 擴大等 農地, 農業用 施設의 災害防止等
生活 環境 基盤	農業集落道 農業集落排水施設 營農飲雜用水 用地整備 集落防災安全施設 地域資源利活用基盤	農道の 補完機能 農業用排水의 水質保全, 農業用排水 施設의 機能維持 家畜의 飼育, 農產物 및 營農機械의 洗淨, 育苗用水 農業近代化 施設의 用地整備 農業用排水施設의 破壞防止, 쓰레기 投棄防止等 溫水, 地熱等の 地域資源을 利活用하여 農道等の 機能을 補完하기 위한 消雪施設 等の 整備, 施設에 地域資源의 供給等
生活 環境 施設	農業集落環境管理施設 農村環境改善센터 農村公園	堆肥製造 農事研修, 混住化, 兼業化中에서 地域 振興을 위한 場의 提供
集落 土地 基礎	圃場整備其他 農用地的改良·基盤整備	區劃의 整理等에 의한 營農의 效率化

生活環境面의 效果	總 合 效 果
<p>土地利用의 秩序化, 公共施設用地的 創設等</p> <p>물 利用의 合理化等</p> <p>生活道路로서 兼用等</p> <p>地盤崩壞等の 防止等</p>	<p>食料의 安定的 供給</p> <p>土地·水資源의 有效利用</p> <p>國土의 保全</p> <p>定住條件의 整備</p> <p>同時着工에 의한 經濟性</p> <p>向上</p>
<p>生活道路의 確保</p> <p>環境衛生(汚水處理)의 確保</p> <p>飲用水의 確保</p> <p>集落活性化 施設의 用地整備 및 公園等の 用地確保</p> <p>防火, 農業用 用排水施設에의 轉落防止等</p> <p>農業集落道の 消雪施設 및 地域內 住民의 生活</p> <p>環境 改善을 위한 施設로의 地域資源 供給等</p>	<p>混住化等에 의한 弊害의</p> <p>防止</p> <p style="text-align: center;">↓</p> <p>國土의 均衡있는 發展</p>
<p>環境衛生(農業用 프라스틱, 비닐等の 處理)의 確保</p> <p>地域社會建設을 위한 공동체의 形成</p> <p>交通事故防止, 健康增進</p>	
<p>土地利用의 秩序化, 二·三男 分家用地 및 公共施設</p> <p>用地的 創設等</p>	

## IV. 最近의 農地關係立法

### 1. 特定農地貸付法

特定農地貸付에 관한 農地法等의 特例에 관한 法律

(平成元年 6月 28日)  
法律 第 58 號

第 1 條(趣旨) 이 法律은 地方公共團體 또는 農業協同組合이 行하는 特定農地貸付에 관한 農地法(昭和 27年 法律 第 229 號)等の 特例를 定한다.

第 2 條(定義) ①이 法律에 있어서 “農地”라 함은 耕作의 目的에 供與되는 土地를 말한다.

②이 法律에 있어서 “特定農地貸付”라 함은 地方公共團體 또는 農業協同組合이 農地(農業協同組合에 있어서는 組合의 所有에 關係되는 農地에 限한다)에 대하여 行하는 貸借權, 其他 使用 및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의 設定(以下 “農地의 貸付”라 한다)에 있어 다음에 掲載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1. 政令에 定하는 面積未滿의 農地에 關係되는 農地의 貸付이며 相當 수의 사람을 對象으로 하여 定型의인 條件으로 行하여지고 있는 것
2.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農作物 栽培의 用途에 供與하기 위한 農地의 貸付인 것.
3. 政令에서 定한 期間을 超過하지 않는 農地의 貸付인 것.

第 3 條(特定農地貸付의 承認) ①地方公共團體 또는 農業協同組合이 特定農地를 貸付하려고 할때는 特定農地貸付에 대한 申請書에 農地貸付規程을 添付하여 該當 特定農地貸付와 關係되는 農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農業委員會(農業委員會에 關한 法律(昭和 20 年 法律 第88 號) 第3條 第1項但書 또는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農業委員會를 두지 않은 市町村에 있어서는 市町村長 以下 同一)에 提出하여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要請할 수가 있다.

②前項의 貸付規程에는 다음에 掲載하는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特定農地貸付의 用途에 供與하는 農地의 所在, 地番 및 面積
2. 特定農地貸付를 받을 者들의 募集 및 選拔方法
3. 特定農地貸付에 關係되는 農地의 貸付期間, 其他 條件
4. 特定農地貸付에 關係되는 農地의 適切한 利用을 確保하기 위한 方法
5. 其他 農林水産省令에서 定하는 事項

③農業委員會는 第1項의 承認申請이 있었을 境遇에 있어서 그 申請이 다음에 掲載되는 要件에 該當된다고 認定될 때는 그 趣旨의 承認을 한다.

1. 第1項 第1號에서 規定하는 農地의 周邊地域에 있어서 農用地(耕作의 目的 또는 養畜事業을 위한 採草 및 家畜의 放牧 目的으로 供與되는 土地를 말함)의 農業上 效率적이고 總合적인 利用을 確保하는 見地에서 보아 該當農地가 適切한 位置에 있으며 더욱 妥當한 規模를 넘지 않는 것.
2. 特定農地貸付를 받는 者의 募集 및 選拔의 方法이 公平하고 適切한 것.
3. 第1項 第3號로 부터 第5號까지 掲載한 事項이 特定農地貸付의 適正하고도 圓滑한 實施을 確保하기 위하여 有效하고 더욱 適切한 것.
4. 其他 政令에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한 것.

④第3項에서 規定한 것 以外 第2項의 承認 및 그 取消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政令에서 定한다.

第4條(農地法의 特例) ①前條 第3項의 承認을 받은 者가 該當承認과 關係되는 農地에 대하여 特定農地貸付의 用途에 供與하기 위하여 所有權 또는 使用 및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取得할 境遇 또는 同項의 承認에 關係되는 特定農地貸付로 因하여 該當承認과 關係되는 農地에 대하여 使用 및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가 設定될 境遇에 는 農地法 第3條 第1項 本文의 規定은 適用하지 않는다.

②前條 第3項의 承認에 關係되는 特定農地貸付의 用途에 供與되고 있는 農地 및 該當承認을 받은 者가 特定農地貸付의 用途에 供與하는 것으로서 使用 및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의 設定 또는 移轉을 받고 있는 農地로서 現在 特定農地貸付의 用途에 供與되고 있지 않는것 (以下 “特定承認農地” 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農地法 第6條 第1項의 規定은 適用하지 않는다.

③特定承認農地의 賃貸借에 대하여는 農地法 第18條, 第19條 本文, 第20條 第1項 本文, 第7項 및 第8項과 第25條의 規定은 適用하지 않는다.

④特定承認農地에 대하여는 農地法 第2條 第3項에서 規定하는 小作料에 대하여는 同法 第1條 第1項 本文, 第22條 第1項 本文, 第23條, 第24條 및 第24條의 3의 規定은 適用하지 않는다.

⑤ 特定承認農地 利用關係의 紛爭에 대하여는 農地法 第2章 第6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

第5條(農業協同組合의 特例) 農業協同組合은 第3條 第3項의 承認을 받았을 때는 農業協同組合法(昭和 22年 法律 第132號) 第10條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組合員이 所有한 農地에 대해서는 特定農地貸付를 行할 수 있다.

第6條(土地改良法의 特例) 特定承認農地에 대한 土地改良法(昭和 24年 法律 第195號) 第3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 適用에 대하여는 第3條 第3項의 承認을 받은 者를 當該 特定承認農地에 대하여

權原에 根據하여 耕作 또는 養畜의 業務를 營爲하는 者로 看做한다.

第7條(特別區 等の 特例) 第3條 第1項中 市町村 또는 市町村長에 關한 部分의 規定은 特別區의 어느 地에 있어서는 特別區 또는 特別區의 區長에, 地方自治法(昭和 22年 法律 第67號) 第252條의 19 第1項의 指定都市(農業委員會 等に 關한 法律 第35條 第2項의 承認에 關係되는 것을 除外)에 있어서는 區 또는 區長에 全部事務組合 또는 役場事務組合의 어느 地에 있어서는 組合 또는 組合의 管理者에 適用한다.

## 附 則

이 法律은 公布한 날로부터 起算하여 3個月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 政令으로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註：平成元年 政令 第257號에 의해 平成元年 9月 11日부터 施行

## 2. 市民農園整備促進法

### 市民農園整備促進法

(平成2年6月22日)  
法律 第44號

第1條(目的) 이 法律은 주로 都市 住民의 레크레이션等の 用途에 供與하기 위하여 市民農園의 整備를 適正하고 또 圓滑히 推進하기 위하여 그 措置를 講究하므로서 健康하고 餘裕있는 市民生活의 確保를 圖謀하는 동시에 良好한 都市環境의 形成과 農村地域의 振興에 도움을 주는데 目的이 있다.

第2條(定義) ①이 法律에서 “農地”라 함을 耕作의 目的에 供與되는 土地를 말한다.

②이 法律에서 “市民農園”이라함은 다음 第1號에 記載하는 農地 및 第2號에 記載하는 施設의 總體를 말한다.

1. 주로 都市住民들의 利用에 供與되는 農地中 다음의 ㉠ 또는 ㉡의 어느 것에 該當되는 것을 말한다.

㉠ 特定農地貸付에 關한 農地法等の 特例에 關한 法律(平成元年 法律 第58號) 第2條 第2項에 規定하는 特定農地貸付(第11條 第1項에 있어서 “特定農地貸付”라고 한다)의 用途에 供與되는 農地

㉡ 相當數의 사람을 對象으로 하여 定型의인 條件으로 레크레이션 其他 營利以外의 目的으로 繼續하여 行하여지는 農作業의 用途에 供與되는 農地(貸借權 其他의 使用 및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의 設定 또는 移轉을 隨伴하지 않고 當該農作業의 用途에 供與되는 것에 限함).

2. 前號에 게재하는 農地에 附帶하여 設置되는 農機具 收納施設, 休憩施設, 其他 當該農地의 保全 또는 利用上 必要한 施設(以下 “市民農園 施設”이라 한다).

**第3條(基本方針)** ①都道府県知事は 該當 都道府県の 區域內에 있어서 相當數 市民農園의 整備가 바람직할 경우에 이의 適正하고도 圓滑한 整備를 圖謀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는 市民農園의 整備에 관한 基本方針(以下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定한다.

②基本方針에는 다음의 事項을 決定한다.

1. 市民農園 整備의 基本的인 方向
2. 市民農園으로서 整備하여야 하는 區域의 設定에 관한 事項
3. 市民農園 施設의 設置, 其他 市民農園의 整備에 관한 事項
4. 市民農園의 利用條件, 其他 市民農園의 運營에 관한 事項
5. 其他 必要한 事項

③基本方針은 良好한 都市環境의 形成 및 農村地域의 振興에 資源이 되도록 規定되어야 한다.

④基本方針은 都市計劃 및 農業振興地域 整備計劃과의 調和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都道府県知事は 與件의 變化에 의하여 必要性이 발생한 때에는 基本方針을 變更하는 것으로 한다.

⑥都道府県知事は 基本方針을 設定하거나 또는 이것을 變更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4條(市民農園區域)** ①市町村은 基本方針에 依據하여 農業委員會의 決定을 거쳐 該當市町村 區域內의 一定한 區域에서 다음에 게재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것(市街化區域(都市計劃法(昭和43年 法律第100號)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街化區域을 말한다. 第7條 第1項에 있어서도 같다)안에 있는 區域을 除外)을 市民農園으로서 整備하여야 하는 區域(以下 “市民農園區域”이라 한다)으로서

指定할 수 있다.

1. 該當區域內에 相當規模의 一團의 農地가 存在하거나 또 其他自然的 條件 및 利用의 動向으로 볼 때 市民農園으로서 利用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것
2. 該當區域內的 位置 및 規模에서 볼 때 그 周邊의 地域에 있어서 農用地 (耕作의 目的 또는 養畜事業을 위한 採草 및 家畜의 放牧 目的에 供與되는 土地를 말한다. 다음 條文 第3項에 있어서도 同一하다)의 農業上 效率의이고 總合的인 利用의 確保에 支障을 發生할 念慮가 없어야 한다.
3. 交通施設의 整備狀況, 其他 都市住民의 利用上 必要한 立地條件으로 보아 市民農園의 利用者가 어느 程度 有望하다고 認定하는 區域이라야 한다.

②市町村은 市民農園區域을 指定하려고 할 때에는 事前에 都道府県知事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市町村은 市民農園區域을 指定하였을 때 遲滯없이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④市町村은 基本方針의 變更, 其他 與件의 變化에 依하여 必要性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指定한 市民農園區域을 變更할 수 있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市民農園區域의 變更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5條 (交換分合)** ①市町村은 前條 第1項에 依하여 市民農園區域을 指定하거나 또는 同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한 市民農園區域을 變更하려고 할 境遇에 이를 指定 또는 變更하려고 하는 市民農園內에 있어서 土地의 保有 및 利用現況, 農業經營의 動向 등으로 보아 該當市民農園區域內에 있는 土地의 一部가 市民農園 以外의 用途에 供與되는 것이 看破되므로 인하여 該當 市民農園區域 및 그 周邊의 地域에 있어서 土地를 市民農園으로서의 利用과 農業上의 利

用과의 調整에 留意하여 該當 市民農園區域內에 있는 土地를 市民農園으로 確保하기 위하여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는 該當 市民農園區域內에 있는 土地를 包含한 一定土地에 관한 交換分合을 行할 수가 있다.

②市町村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交換分合을 하려고 할 때는 農林水産省令, 建設省令에 規定된 交換分合計劃을 決定하고, 그 分合計劃에 依하여 交換分合을 할 土地에 대한 所有權, 地上權, 永小作權, 質權, 賃借權, 使用賃借에 依한 權利 또는 其他 使用 및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가진 者 모두의 同意를 얻어 都道府県知事の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交換分合計劃은 第1項에 規定하는 市民農園區域 및 그 周邊의 地域에 있어서 土地를 市民農園으로의 利用과 農業上 利用과의 調整에 留意하여 該當 市民農園區域內에 있는 市民農園으로서의 利用을 確保하는 同時에 該當 市民農園區域 周邊에 있어서 農用地의 集團化, 其他 農業構造의 改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決定되어야 한다.

**第6條 農業振興地域の 整備에 관한 法律(昭和 44年 法律 第58號) 第13條 3의 規定 및 土地改良法(昭和 24年 法律 第195號) 第99條(第1項 및 第2項 除外), 第101條 第2項, 第102條부터 第107條까지, 第108條 第1項 및 第2項, 第109條, 第110條, 第112條, 第113條, 第114條 第1項, 第115條, 第118條(第2項 除外) 및 第121條부터 第123條까지의 規定은 前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交換分合에 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이러한 規定의 準用에 대하여 必要한 技術的인 條文의 語句를 바꾸어 適用하는 것은 政令으로 定한다.**

**第7條(市民農園開發의 認定)** ①市民農園區域內 또는 市街化區域(都市計劃法 第4條 第6項에서 規定하는 都市計劃施設의 區域, 同條 第7項에 規定하는 市街地 開發事業의 施行區域, 其他區域에 있어 政

습으로 決定하는 것을 除外) 內에 있어 市民農園을 開設하려고 하는 者는 農林水産省令, 建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依하여 市民農園의 整備 및 運營에 관한 計劃(以下 “整備運營計劃”이라 한다)을 決定하여 이를 申請書에 添附하여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町村에 提出하여 該當 市民農園의 開發이 適切하다는 趣旨의 認定을 받을 수 있다.

②前項의 整備運用計劃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市民農園의 用途에 供與되는 土地의 所在, 地番 및 面積
2. 市民農園의 用途에 供與되는 農地의 位置 및 面積과 第2條 第2項 第1號에 掲載되는 農地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가의 區別
3. 市民農園施設의 位置 및 規模, 其他 市民農園 施設의 整備에 관한 事項
4. 利用者의 募集 및 選拔 方法
5. 利用期間 및 其他 條件
6. 市民農園의 適切한 利用을 確保하기 위한 方法
7. 資金計劃
8. 其他 農林水産省令, 建設省令中에서 定하는 事項

③市町村은 第1項의 認定申請이 있을 境遇에 그 申請이 다음에 掲載되는 要件에 該當된다고 認定될 때에는 農業委員會의 決定을 거쳐 이를 認定토록 한다.

1. 整備運營計劃의 內容이 基本方針에 適合하여야 한다.
2. 市民農園의 適正하고도 圓滑한 利用을 確保하는 見地에서 볼때, 市民農園의 用途에 供與되는 農地 및 市民農園 施設이 適切한 位置에 있으며 더욱 妥當한 規模라야 한다.
3. 市民農園의 用途에 供與되는 農地 및 市民農園施設의 位置 및 規模에서 볼 때 周邊의 道路, 下水道等の 公共施設이 保有하고 있는 機能에 支障을 招來할 念慮가 없고, 더욱 周邊地域에 있어 營

農條件 및 生活環境의 確保에 支障을 招來할 念慮가 없어야 한다.

4. 利用者의 募集 및 選拔方法이 公平하고도 適切하여야 한다.
5. 前項 第5號부터 第8號까지 揭載한 事項이 市民農園의 確實한 整備 및 適切하고도 圓滑한 利用을 確保하기 위하여 有效하고 適切하여야 한다.
6. 其他 政令에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여야 한다.

④市町村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認定을 하려고 할 때는 事前에 都道府縣知事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⑤第1項의 認定을 받은 者(以下 “認定開設者”라고 한다)가 該當認定에 關係되는 整備運營計劃을 變更하려고 할 때는 市町村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

⑥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整備運營計劃의 變更認定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8條(報告의 要求) 市町村長은 認定開設者에 대하여 市民農園의 整備 또는 運營狀況에 대하여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第9條(勸告) 市町村長은 認定開設者가 認定에 關係되는 整備運營計劃(第7條 第5項의 規定에 依한 變更의 認定이 있었을 때는 그 變更後의 것. 以下 “認定計劃”이라고 한다)에 따라 市民農園의 整備 또는 運營을 行하지 않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該當認定 開設者에 대하여 일정한 期限을 定하여 必要한 改善措置를 取하도록 勸告를 할 수 있다.

第10條(認定의 取消)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勸告를 받은 認定開設者가 該當勸告에 따르지 않을 境遇에는 市町村은 第7條 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依한 認定을 取消할 수 있다.

第11條(農地法等의 特例) ①第7條 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依한 認定이 第2條 第2項 第1號 ㉔에 揭載하는 農地에 關係되는 것일 境遇에는 認定開設者는 該當認定을 받은 市民農園에 關係되는

特定農地貸付에 대하여 特定農地貸付에 관한 農地法等의 特例에 關한 法律 第 3 條 第 3 項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看做한다.

②認定開設者が 認定計劃에 따라 農地를 農地以外の 것으로 할 境遇에는 農地法(昭和 27 年 法律 第 229 號) 第 4 條 第 1 項의 許可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③認定開設者が 認定計劃에 따라 農地를 農地以外の 것으로 하기 위하여 또는 採草放牧地(農地以外の 土地에서 주로 耕作 또는 養畜事業을 하기 위한 採草 또는 家畜放牧의 目的에 供與되는 것을 말한다 以下 이 項에 있어서 同一하다)를 採草放牧地 以外の 것(農地 除外)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한 土地에 대하여 所有權 또는 使用 및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取得할 境遇에는 農地法 第 5 條 第 1 項의 許可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 12 條(都市計劃法の 特例) ①認定開設者が 認定計劃에 따라 整備하는 市民農園施設中 休憩施設인 建築物(建築基準法(昭和 25 年 法律 第 201 號) 第 2 條 第 1 號에 規定하는 建築物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 있어서 同一하다), 其他 市民農園의 適正하고 가장 有效한 利用을 確保하기 위하여 建築物을 政令으로 規定하는 것(次項에 있어 “認定市民農園 建築物”이라고 한다)의 建築(建築基準法 第 2 條 第 3 號에 規定하는 建築을 말한다)의 用途에 供與하기 위한 目的으로 행하는 土地의 區劃形質의 變更, 市街化 整備區域(都市計劃法 第 7 條 第 1 項의 規定에 따른 市街化 調整 區域을 말한다. 다음 項에 있어서도 同一하다)에 關係되는 것(都市計劃法 第 34 條 各號에 掲載되는 開發行爲에 該當되는 것을 除外)은 都市計劃法 第 34 條 規定의 適用에 대하여는 同條 第 10 號에 掲載되는 開發行爲로 看做한다.

②都道府県知事 또는 地方自治法(昭和 22 年 法律 第 67 號) 第 252 條의 19 第 1 項의 指定都市의 長은 市街化調整區域中 都市計劃法 第

2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同法 第4條 第13項에 規定하는 開發區域 以外的 區域內에 있어서 認定市民農園 建築物을 新築하거나 또는 建築物을 改築하거나 아니면 그 用途를 變更하여 認定市民農園 建築物로 하는데 대하여 同法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申請이 있었을 境遇 該當 申請과 關係되는 認定市民農園 建築物의 新築, 改築 또는 用途變更이 同條 第2項의 政令이 定하는 許可의 基準中 同法 第33條에 規定하는 開發許可의 基準 例에 準하여 定하여 진 基準에 適合될 때에는 이의 許可를 하여야 한다.

**第13條** (市民農園의 整備에 대한 配慮) 國家의 行政機關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長은 認定計劃에 따라 土地를 認定과 關係되는 市民農園의 用途에 供與하기 위하여 法律에 規定되어 있는 許可 其他의 處分을 請求받을 때에는 該當 市民農園의 整備促進이 圖謀될 수 있도록 適切한 配慮를 한다.

**第14條** (資金의 確保) 國家 및 地方公共團體는 認定計劃에 따라 행하여 지는 市民農園의 整備에 必要한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의 確保 또는 이의 融通과 斡旋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15條** (援助) 國家 및 地方公共團體는 認定開設者에 대하여 必要한 助言, 指導, 其他의 援助를 행 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16條** (罰則) 第6條에서 準用되는 土地改良法 第109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 以下の 徵役 또는 5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17條**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않거나 또는 虛偽報告를 한 者는 2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18條**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 아니면 委囑을 받은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委囑한 者의 業務 또는 財産에 關하여 前 2個 條文의 違反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處罰함은 勿論 그 法人 또는 그를 委囑한 者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 1 條 ( 施行 期 日 ) 이 法律은 交付한 날로부터 起算하여 3 個月을 넘지 않는 範圍內에서 政令으로 定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 農地法의 一部 改正 ) 農地法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農地法 第 3 條 第 1 項 第 4 號中 “ 或은 集落地域整備法 ( 昭和 62 年 法律 第 63 號 ” 를, “ 集落地域整備法 ( 昭和 62 年 法律 第 63 號 ) 또는 市民農園整備促進法 ( 平成 2 年 法律 第 44 號 ) ” 로 改正한다.

第 3 條 ( 農林水産省設置法의 一部 改正 ) 農林水産省設置法 ( 昭和 24 年 法律 第 153 號 ) 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農林水産省設置法 第 4 條 第 30 號의 다음에 다음의 1 號를 添加한다.  
“ 30 의 2 市民農園整備促進法 ( 平成 2 年 法律 第 44 號 ) 의 施行에 관한 것 ”

第 4 條 ( 建設省設置法의 一部 改正 ) 建設省設置法 ( 昭和 23 年 法律 第 113 號 ) 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建設省設置法 第 3 條 第 11 號中 “ 및 集落地域整備法 ( 昭和 62 年 法律 第 63 號 ) ” 를 “ 및 市民農園整備促進法 ( 平成 2 年 法律 第 44 號 ) ” 로 改正한다.

註：平成 2 年 政令 第 271 號에 의하여 平成 2 年 9 月 20 日부터 施行

부록 1. 農業經營確立을 위한 農地流動化의 飛躍的인 前進을

謹啓

貴農業委員會가 毎日活躍하고 있어 경하드립니다.

그런데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은 昭和 55 年の 農地 3 法制定以來 貸借를 中心으로 하여 農地流動化의 推進에 總力을 기울여 努力하여 왔습니다. 그 結果, 農用地 利用增進事業에 의한 利用權設定面積은 全國에서 21 萬 7 千 ha에 도달하고 農業經營의 規模擴大·構造政策의 推進에 크게 기여하고, 系統의 社會的評價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農業을 둘러싼 內外的 情勢는 「農業構造改善의 加速的인 促進」을 요구하고 있으며 農業委員會의 事業에는 더욱 關心과 期待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이 기대에 대하여 使命을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 말씀대로 이제부터 우리나라 농업은 국민의 요청에 의하여 적절한 價格形成 및 國際化의 進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土地利用型 農業에 대하여는 農業專擔者에 대한 農用地의 利用集積을 促進하여 規模가 큰 自立經營農家等을 育成하여 費用節減을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합니다.

農業專擔者의 育成確保와 農地流動化의 促進에 의한 農業經營의 確立은 農業委員會系統組織에 賦課된 중대한 使命입니다. 특히 今年度는 市町村에도 構造政策推進會議가 設置되는 등 構造政策을 더욱 推進시키기 위하여 農業委員會의 主體的인 추진이 지금까지의 것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農地銀行의 體制를 整備하여 農地流動化의 飛躍的인 推進을 위하여 구체적인 行동을 지금 곧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農地流動化目標의 再確認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活動의 總點檢이 그 第一步라는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금년 1 年間이 農政에 있어서도 農業委員會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기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會長을 위시하여 위원 여러분의 健闘를 마음으로부터 기원하는 바입니다.

昭和 63 年 5 月

全國農業會議所會長

農業委員會會長 貴下

## 부록 2. 農業經營確立을 위한 農地流動化促進에 대한 附託

謹啓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평소 農業委員會에 대하여 指導協力を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깊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農業委員會系統組織은 昭和 55 年の 소위 「農地 3 法」의 制定以來 農用地的 貸借를 中心으로한 農地流動化의 推進에 總力を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農用地利用增進事業에 의한 利用權設定面積이 31 萬 7 千ha에 도달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게 되어 우리 系統의 活動에도 一定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農業을 둘러싼 內外的 情勢는 「農業構造改善의 加速의인 促進」을 강하게 要求하고 있습니다.

案內말씀과 같이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國民의 要請에 대하여 적절한 價格形成 및 國際化의 進展에도 견뎌나가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農業專擔者의 育成·確保와 農用地的 利用集積의 促進에 의하여, 規模가 큰 自立經營農家等을 育成하여 土地利用型農業의 生産費節減을 圖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今年度は 市町村段階에도 構造政策推進會議가 設置되어 構造政策의 關係機關·團體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體制가 整備되었습니다. 따라서 會議所에서는 農業專擔者의 育成·確保와 이로 인한 農地流動化의 새로운 推進을 위하여 全國의 農業委員會에 特別한 奮起를 促求하는 바입니다. 市町村에 설치된 行政委員會로서 實職을 中心으로 하는 自治體農政의 一翼을 담당하여 農業構造의 改善을 促進하는 것이 農業委員會에 賦課된 중대한 使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農業委員會의 事業推進에는 貴職의 큰 理解와 協力이 꼭 필요합니다. 더욱더 理解와 協力·鞭撻을 마음으로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昭和 63 年 5 月

全國農業會議所會長

市町村長 貴下

D55  
일본의 농업구조정책과  
농지제도 운용실태

---

1990년 11월

發行人 許 信 行

發行情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